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CGMP)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제4개정)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등록번호 안내서-0087-04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지침서 · 안내서 제 · 개정 점검표

명칭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 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 □ 예■ 아니오 |
|------------|--|-------------------------------------|
| |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 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 (사유: | 서・안내서의 제정 |
| |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 ·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 예 ■ 아니오 |
| 등록대상 여부 |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 예 ■ 아니오 |
| | □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 하는 내용입니까? | □ 예 ■ 아니오 |
| | □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 예■ 아니오 |
| |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 예 ■ 아니오 |
| |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 | |
| 자침서·인내서 | □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 예(☞ <mark>지침서</mark>) ■ 아니오 |
| 걘 | □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 예(☞ <mark>안내서</mark>) □ 아니오 |
| 기타 확인사 |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 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 예■ 아니오 |
| 항 |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하시고 지침서 |
| |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 |
| | 2024년 12월 30일 | |
| | 담당자 확 인(부서장) | 이용준 고지훈 |

이 안내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해설서(민원인 안내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 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4년 12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민원인 안내서"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3405, 3413, 3416, 3418

팩스번호 : 043-719-3400

| 제1장 총 칙 | |
|-------------|---------|
| 제1조 목적 | 1 |
| 제2조 용어의 정의 | ····· 4 |
| 제2장 인적자원 | |
| 제3조 조직의 구성 | 9 |
| 제4조 직원의 책임 | ···· 12 |
| 제5조 교육훈련 | ···· 14 |
| 제6조 직원의 위생 | ···· 19 |
| 제3장 제 조 | |
| 제7조 건물 | ···· 23 |
| 제8조 시설 | ···· 27 |
| 제9조 작업소의 위생 | 44 |
| 제10조 유지관리 | 50 |
| 제11조 입고관리 | ···· 63 |
| 제12조 출고관리 | ···· 71 |
| 제13조 보관관리 | ···· 72 |

목 차

| 물의 품질 | 3 |
|----------------|----------|
| 기준서 등8 | 1 |
| 칭량 ······ 8½ | 3 |
| 공정관리90 | Э |
| 포장작업95 | 3 |
| 보관 및 출고9 | 7 |
| 질관리 | |
| 시험관리102 | 2 |
| 검체의 채취 및 보관110 | Э |
| 폐기처리 등114 | 4 |
| 위탁계약11 | 7 |
| 일탈관리122 | 2 |
| 불만처리125 | 5 |
| 제품회수 127 | 7 |
| 변경관리132 | 2 |
| 내부감사135 | 5 |
| 문서관리140 | Э |
| | 기준서 등 88 |

목 차

| 제5장 판정 및 감독 |
|--|
| 제30조 평가 및 판정150 |
| 제31조 우대조치152 |
| 제32조 사후관리153 |
| |
| [부록1]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6호)155 |
| [부록2] 기준서 예시198 |
| [부록3] 자주 묻는 질문273 |
| [부록4]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 시 보완 사례집 … 283 |
| [부록5] 전자민원 신청방법 및 평가 절차336 |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화장품제조업 자의 준수사항 등)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CGMP"라 한다)을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

CGMP는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으로서 직원, 시설·장비 및 원자재, 벌크제품, 완제품 등의 취급과 실시 방법을 정한 것이다.

CGMP 3대 요소

- ①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 ② 미생물오염 및 교차오염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
- ③ 고도의 품질관리체계 확립

화장품 제조업체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시 CGMP 이행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잠재적인 문제를 상당히 감소시켜 유통화장품 품질확보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1항】

①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시설·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지도・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 2.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 한다)를 작성·보관할 것
- 3.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유지할 것
- 5.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6. 제2호의 사항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 나. 화장품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품질· 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7.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 8.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관리할 것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 2.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 3.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등 개수·보수

제2조(용어의 정의)

- 1. <삭 제>
- 2. "제조"란 원료 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1차포장) 등의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 3. <삭 제>
- 4. "품질보증"이란 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에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계획되고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 5. "일탈"이란 제조 또는 품질관리 활동 등의 미리 정하여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를 말한다.
- 6. "기준일탈 (out-of-specification)" 이란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검사, 측정 또는 시험결과를 말한다.
- 7. "원료"란 벌크 제품의 제조에 투입하거나 포함되는 물질을 말한다.
- 8. "원자재"란 화장품 원료 및 자재를 말한다.
- 9. "불만"이란 제품이 규정된 적합판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외부 정보를 말한다.
- 10. "회수"란 판매한 제품 가운데 품질 결함이나 안전성 문제 등으로 나타난 제조번호의 제품(필요시 여타 제조번호 포함)을 제조소로 거두어들이는 활동을 말한다.
- 11. "오염"이란 제품에서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 또는 이들이 조합되어 나타내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의 발생을 말한다.
- 12. "청소"란 화학적인 방법, 기계적인 방법, 온도, 적용시간과 이러한 복합된 요인에 의해 청정도를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눈에 보이는 먼지를 분리, 제거하여 외관을 유지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 13. "유지관리"란 적절한 작업 환경에서 건물과 설비가 유지되도록 이루어지는 정기적·비정기적인 지원 및 검증 작업을 말한다.
- 14. "주요 설비"란 제조 및 품질 관련 문서에 명기된 설비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설비를 말한다.

- 15. "검교정"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기기나 측정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는 값과 표준기기의 참값을 비교하여 이들의 오차가 허용범위 내에 있음을 확 인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 한다.
- 16. "제조번호" 또는 "뱃치번호"란 일정한 제조단위분에 대하여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로서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특정적인 조합을 말한다.
- 17. "반제품"이란 제조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필요한 제조공정을 더 거쳐야 벌크 제품이 되는 것을 말한다.
- 18. "벌크 제품"이란 충전(1차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을 말한다.
- 19. "제조단위" 또는 "뱃치"란 하나의 공정이나 일련의 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 성을 갖는 화장품의 일정한 분량을 말한다.
- 20. "완제품"이란 출하를 위해 제품의 포장 및 첨부문서에 표시공정 등을 포함 한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된 화장품을 말한다.
- 21. "재작업"이란 적합 판정기준을 벗어난 완제품, 벌크제품 또는 반제품을 재처리하여 품질이 적합한 범위에 들어오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 22. "수탁자"는 직원, 회사 또는 조직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회사 또는 외부 조직을 말한다.
- 23. "공정관리"란 제조공정 중 적합판정기준의 충족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조정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 24. "감사"란 제조 및 품질과 관련한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와 제조 및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 25. "변경관리"란 모든 제조, 관리 및 보관된 제품이 규정된 적합판정기준에 일 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활동을 내부 조직의 책임하에 계획하여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26. "내부감사"란 제조 및 품질과 관련한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제조 및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사 내 자격이 있는 직원에 의해 행해지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 27. "포장재"란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말하며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외부 포장재는 제외한 것이다. 제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지 여부에 따라 1차 또는 2차 포장재라고 말한다.
- 28. "적합 판정 기준"이란 시험 결과의 적합 판정을 위한 수적인 제한, 범위 또는 기타 적절한 측정법을 말한다.
- 29. "소모품"이란 청소, 위생 처리 또는 유지 작업 동안에 사용되는 물품(세척제, 윤활제 등)을 말한다.
- 30. "관리"란 적합 판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검증을 말한다.
- 31. "제조소"라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 32. "건물"이란 제품, 원료 및 포장재의 수령, 보관, 제조, 관리 및 출하를 위해 사용되는 물리적 장소, 건축물 및 보조 건축물을 말한다.
- 33. "위생관리"란 대상물의 표면에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미생물 등 오염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작업을 말한다.
- 34. "출하"란 주문 준비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과 운송 수단에 적재하는 활동으로 제조소 외로 제품을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해 설

2. 제조

이 규정에서 제조는 원료 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1차포장) 등의 일련의 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서 화장품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를 위탁 받아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2차 포장 및 표시를 하는 것은 제조업 등록대상에

제외를 하고 있다. 즉, 2차 포장 및 표시는 제조업 등록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5. 일탈, 6. 기준일탈 (out of specification)

일탈(Deviations)은 규정된 제조 또는 품질관리활동 등의 기준(예시: 기준서, 표준 작업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등)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이다.

기준일탈 (Out of specification)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시험결과가 정한 기준값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다. 기준일탈은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조사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즉, 일탈(Deviations)과 기준일탈 (out of specification)은 정해진 기준이나 규정된 제조 또는 품질관리활동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며, 업체의 상황에 따라 혼용 또는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화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 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원자재

화장품 제조 시 사용된 원료, 용기, 포장재, 표시재료, 첨부문서 등을 말한다.

16. 제조번호

품질의 균질성을 가진 집단을 일정한 제조단위분에 대하여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로서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특정적인 조합을 말한다. 이 번호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에는 일정한 체계가 있어야 하며 그 체계는 사내규정으로 정한다.

17. 반제품, 18. 벌크제품

"반제품"이란 제조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필요한 제조공정을 더 거쳐야 벌크제품이 되는 것을 말하며, "벌크제품"이란 충전(1차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을 말한다.

19. 제조단위 또는 뱃치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되어 균질성을 갖는 제조 그룹을 같은 제조단위, 뱃치 (Batch) 또는 로트(Lot)라고 한다. 이 동일 제조 그룹이 균질성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과학적 근거란 몇 개의 소(小) 제조단위를 합하여 같은 제조단위로 할 경우에는 동일한 원료와 자재를 사용하고 제조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를 말하며, 또 동일한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가 복수일 때에는 그 기계의 성능과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수탁자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하여 공정 또는 시험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직원, 회사 또는 조직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회사 또는 외부조직을 수탁자라고 한다. 단, 공정의 경우에는 수탁 업체의 주기적이고 적절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에 대하여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

- 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나. 제1항제3호(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에 따른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 라.「약사법」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27. 포장재

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6호, 제7호에 따른 정의에 의하면,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1. 제조소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시험실, 보관소 등을 포함한다.

2. 제2장 인적자원

제3조(조직의 구성)

- ①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를 두어야 한다.
- ② 조직구조는 조직과 직원의 업무가 원활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회사의 규모와 제품의 다양성에 맞추어 적절하여야 한다.
- ③ 제조소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해설

- ① 제조관리와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호 종속관계가 아닌 독립된 권한을 가진 제조부서와 품질부서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조직을 구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제조부문과 품질부문을 각각 독립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 책임자는 1인이 겸직하지 못함은 물론 두 책임자는 업무상 상호 상하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 ② 화장품 품질은 원료의 품질, 적절한 설비 설계, 직원에 의한 일관된 업무 수행과 같은 주요 사항들과 관련이 있다. 화장품이 설정된 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 포장, 시험, 보관, 출하, 관리에 관계된 직원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CGMP를 실행하려면 CGMP 운영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제조소의 각 조직 구조는 CGMP 규정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조직구조는 회사의 조직과 직능을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문서화되어야 한다. 조직구조

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제조하는 제품과 회사의 규모에 대해 조직구조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 조직구조에 기재된 직원의 역량은 각각의 명시된 직능에 적합해야 한다.
- (3) 품질 단위의 독립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 (4) 조직내의 주요 인사의 직능과 보고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문서화되어야 한다.

조직을 구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제조부문과 품질부문을 각각 독립시키는 일이다. 품질부문 내의 품질보증 단위(unit), 품질관리 단위와 같은 각 품질 단위는 독립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품질보증과 품질관리 책임은 품질보증 단위와 품질관리 단위를 분리하여 책임을 맡거나 이 둘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책임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부문과 품질부문의 책임자는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직 구조는 회사 규모와 제품 종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회사의 규모가 큰경우 보관관리를 제조부문 내에 독립된 부서가 담당할 수 있으나 보관 시 원료, 포장재 및 완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부문 및 품질부문의 책임자가보관 조건 등에 관여한다. 품질부문의 권한과 독립성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될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나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보관관리 또는 시험책임자 밑의 담당자 일부는 겸직할 수 있다. 문서나 직원이 많은 경우 품질부문에 문서관리 및 교육책임자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제조소의 직원의 수는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필요하며, 업무에 따라 적절한 인원수와 자격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당직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음을 기록한다.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은 사내규정으로 미리 정한다.

《CGMP 조직도 예시》



※ 이 조직도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직원의 책임)

- ① 모든 작업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 1. 조직 내에서 맡은 지위 및 역할을 인지해야 할 의무
 - 2. 문서접근 제한 및 개인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
 - 3.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 기준을 벗어난 행위나 부적합 발생 등에 대해 보고 해야 할 의무
 - 4. 정해진 책임과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의무
- ② 품질책임자는 화장품의 품질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품질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절차의 검토 및 승인
 - 2. 품질 검사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의 확인
 - 3. 일탈이 있는 경우 이의 조사 및 기록
 - 4. 적합 판정한 원자재 및 제품의 출고 여부 결정
 - 5. 부적합 품이 규정된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는지의 확인
 - 6. 불만처리와 제품회수에 관한 사항의 주관

해 설

① CGMP를 실행한다는 것은 조직, 업무 절차, 제조공정, 제조를 위한 자원을 준비하고 확립하여 그 내용을 문서화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항상 동일한 품질의 화장품을 제조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유지관리가 된 건물, 설비 등을 운영하고 최신의 절차를 정한 절차서를 준비, 이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이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직원은 자신의 위치, 업무 및 책임을 자각하고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해야 하며 작업은 절차서와 지시서 등의 문서에 따라 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일탈과 기준일탈 등은 적극적으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조직 구조 내에 있는 그들의 지위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규정된 그들의 역할 과 책임 및 의무를 인지하여야 한다.
- (2) 그들의 책임 범위와 관련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야한다.
- (3) 개인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4) 일탈과 기준일탈 등은 적극적으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정해진 책임과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직원의 책임】

- CGMP 실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자신의 위치, 업무, 책임을 자각한다.
- 업무에 필요한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 절차서와 지시서에 따라 작업하고 기록한다.
- 필요한 교육훈련을 자진해서 받아 자신의 능력을 배양한다.
- 위생관리규칙을 지킨다.
- 일탈과 기준일탈 등을 적극적으로 보고한다.
- ② 품질 책임자는 화장품의 품질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품질관리와 관련된 문서를 검토·승인·주관 하여야 한다. 사내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완제품의 출하 승인 등에 대하여는 위임할 수 없다. 또한 사내규정에 따라 제품회수,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 또는 승인한다. 특히, 부적합품이 부적절하게 처리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부적합품 처리 규정을 정하고 관리한다.

제5조(교육훈련)

- ①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각자의 직무와 책임에 적합한 교육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의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의 내용 및 평가가 포함된 교육훈련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교육 종료 후에는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새로 채용된 직원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훈련 외에 추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 설

- ① 교육훈련은 제조 및 품질 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책임자 등을 포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화장품의 특성, 제조, 품질,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직종별, 경력별로 체계적인 연간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신입사원은 철저히 교육 훈련 시킨 후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며, 계약직사원에 대해서도 작업내용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② 교육훈련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대상자 : 직종별, 경력별 등 직원의 지식, 업무 경험에 따라 직원을 분류하여 실시한다. (예: 책임자, 담당자, 신입사원, 계약직 사원 등)
 - (2) 교육의 종류 및 내용: 사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종류는 정기교육과 기타 (수시)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정기교육은 교육훈련계획서에 따라 정기적 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전체교육과 부서별 교육이 있다. 신입사원 교육과

계약직 사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기타의 교육은 CGMP 문서 제개정에 따른 교육, 문제 발생에 대한 교육, 소속 부서의 변경에 따른 부서별 교육, 참고자료나 정보의 회람 등이 있다.

- (3) 교육실시방법: 교육은 강의식, 회람식, 외부교육 참석, 주제 토론, 과제물부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전체교육의 경우 강의식 교육이 효과적이며, CGMP문서 개정 등과 같은 경우는 회람식 교육방법이 적당하다. 신입사원 교육 시 별도의 과제물을 부여하거나 일지를 작성하도록 할수 있다.
- (4) 교육의 평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회람식 교육이나 외부교육 참석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교육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시험평가, 구두평가, 실습평가 및 개인별 소감문 작성 등이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재교육을 실시한다.
- (5) 기록의 보관: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 실시·평가기록, 교육훈련 개인별 교육훈련이력서 등을 작성, 보관한다.

직원의 교육을 위해 교육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직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알맞은 교육일정, 내용, 대상 등을 정하여 교육훈련계획(예: 연간교육, 정기교육, 수시교육, 신입 사원교육 등)을 세울 것 [서식1: 교육훈련계획서]
- (2) 교육계획, 교육대상, 교육의 종류, 교육내용, 실시방법, 평가방법, 기록 및 보관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규정을 작성할 것
- (3) 교육훈련의 실시기록을 작성할 것
- (4) 교육훈련평가의 결과를 문서로 보고할 것
- ③ 업체는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했을 때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교육훈련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실시·평가 기록서를 작성,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각 개인별로 기록서에 기록을 남긴다.

[※] 다음의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업체 특성에 맞도록 양식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식1]

20ㅇㅇ년 교육훈련계획서

| 구분 | 교육과정명 | 교육일정 | 강사 또는 담당자 | 교육대상 | 교육형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일: |
|------|
| 삭성일: |

| [서식2] | | | | | | | | |
|----------|---------|----------|-------|---------|-----|---|----|-----|
| | | 20 0 0 | 년 교육훈 | 련 실시·평기 | 가기록 | | | |
| | 목적 | | | | | | | |
| 교육개요 | 대상 | | | | | | | |
| | 일시 | | | | | | | |
| | 장소 | | | | | | | |
| 교육니 | 내용 | | | | | | | |
| 교육훈련 | 실시자 | | | | | | | |
| 실시 연 | | | | | | | | |
| 교육훈련 참석 | 석자 및 평기 | <u> </u> | | | | | | |
| 소속 | 성 | l명 | 평가 | 성명 | 소속 | |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일 | | 년 | 월 | 뎰 |
| | | | | 담당자 | | | ٨) | 서명) |
| | | | | 책임자 | | | (٨ | 너명) |

| 서식3] | | | |
|-------|--------|-------------|--------|
| | | 개인별 교육훈련이력서 | |
| 성명: _ | | | |
| 사원번호 | : | | |
| No. | 교육 연월일 | 교육내용 | 소속과 직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직원의 위생)

- ①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② 작업소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등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화장품의 품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화장품과 직접적으 로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 ④ 제조구역별 접근권한이 있는 작업원 및 방문객은 가급적 제조, 관리 및 보관 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직원 위생에 대한 교육 및 복장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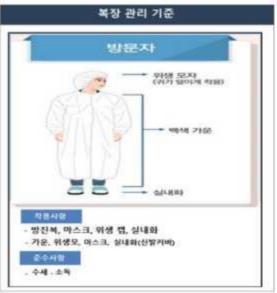
해 설

- ①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이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해야 한다. 신규 직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며,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에는 직원의 작업 시 복장, 직원 건강상태 확인, 직원에 의한 제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직원의 손 씻는 방법, 직원의 작업 중 주의사항, 방문객 및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의 위생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직원은 작업 중의 위생관리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청정도에 맞는 적절한 작업복, 모자와 신발을 착용하고 필요할 경우는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다.
 - (1) 작업복 등은 목적과 오염도에 따라 세탁을 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한다.
 - (2) 작업 전에 복장점검을 하고 적절하지 않을 경우는 시정한다.

직원은 별도의 지역에 의약품을 포함한 개인적인 물품을 보관해야 하며, 음식, 음료수, 껌씹기 및 흡연 등은 제조 및 보관 지역과 분리된 지역에서만 섭취하 거나 흡연하여야 한다.

〈복장관리 예시〉







③ 제품 품질과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건강 조건을 가진 직원은 원료, 포장, 제품 또는 제품 표면에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명백한 질병 또는 노출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직원은 증상이 회복되거나 의사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할 때까지 제품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방문객 또는 안전 위생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이 화장품 제조, 관리, 보관을 실시하고 있는 구역으로 출입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상의 이유, 신입 사원 교육 등을 위하여 안전 위생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제조, 관리, 보관구역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안전 위생의 교육훈련 자료를 미리 작성해 두고 출입 전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교육훈련의 내용은 직원용 안전 대책, 작업 위생 규칙, 작업복 등의 착용, 손 씻는 절차 등이다.

아울러 방문객과 훈련받지 않은 직원이 제조, 관리 보관구역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동행한다. 방문객과 훈련받지 않은 직원은 제조, 관리 및 보관구역에 안내자 없이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방문객은 적절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필요한 보호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들이 혼자서 돌아다니거나 설비 등을 만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제조, 관리, 보관구역으로 들어간 것을 반드시 기록서에 기록한다. 그들의 소속, 성명, 방문목적과 입퇴장시간 및 자사 동행자의 기록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Guidance for Industry

-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U.S. FDA]

Personnel

You should determine whether personnel supervising or performing cosmetics manufacturing or control have the education, training, and/or experience to perform their assigned functions.

In addition:

- Personnel coming in direct contact with cosmetic raw materials, in-process materials, finished products, or contact surfaces should wear clean clothing appropriate for the duties they perform and necessary protective apparel (for example, uniforms, gloves, safety glasses, and hair restraints).
- Personnel should also maintain adequate personnel cleanliness, and be free from abnormal sources of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for example, sores and infected wounds)
- Eating food, drinking beverages, or using tobacco should be restricted to appropriate designated areas away from storage and processing areas
- All personnel and visitors should be properly supervised while in the manufacturing facility; and
- Only authorized personnel should be allowed access into production, storage, and product control areas.

3. 제3장 제조

제7조(건물)

- ① 건물은 다음과 같이 위치, 설계, 건축 및 이용되어야 한다.
 - 1. 제품이 보호되도록 할 것
 - 2.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 하도록 할 것
 - 3. 제품, 원료 및 포장재 등의 혼동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
- ② 건물은 제품의 제형, 현재 상황 및 청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해설

화장품 제조 시설(facilities, premises, buildings)이란 화장품을 제조하는 설비와 기기가 들어있는 건물, 작업실, 건물 내의 통로, 갱의실, 손을 씻는 시설 등을 포함 하여 원료, 포장재, 완제품, 설비, 기기를 외부와 주위 환경 변화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화장품 제조에 적합하며, 직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화장품 제조 시설은 화장품의 종류, 양, 품질 등에 따라 변화하므로 각 제조업자는 화장품 관련 법령, 본 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업체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제조시설을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시설기준 등)】

- 1.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 가. 쥐ㆍ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나.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 3.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제조소에 필요한 시설 등】







<원료보관소>

<제조실>







<품질 시험실> <기기분석 시험실>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후에 필요한 것은 시설 및 기구를 운영·관리하는 규정(SOP) 제정과 그것에 대한 작업자들의 교육훈련이다.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후에 필요한 것은 시설 및 기구를 운영·관리하는 규정(SOP) 제정과 그것에 대한 작업자들의 교육훈련이다. 배치(layout) 결정은 반드시 제조되는 화장품의 유형과 현재 상황, 청소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시설은 이물, 미생물 또는 다른 외부 문제로부터 원료·자재, 벌크제품 및 완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치. 설계.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음에 의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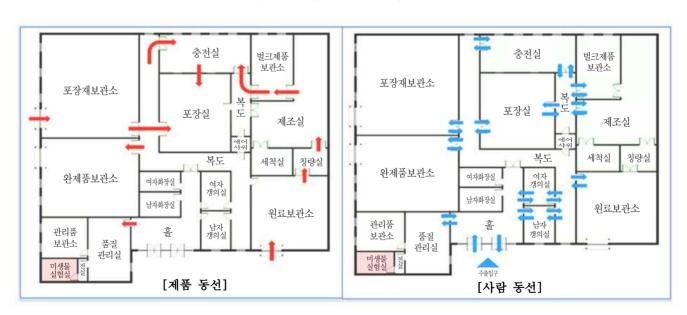
- 수령, 저장, 혼합과 충전, 포장과 출하, 관리, 실험실 작업 및 설비와 기구들의 청소·위생처리와 같은 작업들의 분리(위치, 벽, 칸막이 설치, 공기 흐름 등으로 분리)
- 혼입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비와 물품을 순서대로 배치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
- 청소 및 위생 처리를 위한 물의 저장과 배송을 위한 시설·설비 시스템들의 설계와 배치
- 해충 방지와 관리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들의 규정
- 효과적인 유지 관리 규정

○ 일반 건물(General Building)

- 제조 공장의 출입구는 해충, 곤충의 침입에 대비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필요한 경우에 방충 전문 회사에 의뢰하여 진단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배수관은 냄새의 제거와 적절한 배수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 바닥은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흘린 물질의 고임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청소가 용이 하도록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한다.
- 화장품 제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공정서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적합한 물이 사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강제적 기계 상의 환기시설은 제품 또는 사람의 안전에 해로운 오염물질의 이동을 최소화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필터들은 점검 기준에 따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교체 기준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고 점검 및 교체에 대해서는 기록 되어야 한다.
- 관리와 안전을 위해 모든 공정, 포장 및 보관지역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한다.
- 심한 온도 변화 또는 큰 상대 습도의 변화에 대한 제품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원료, 자재, 반제품, 완제품을 깨끗하고 정돈된 곳에서 보관한다. 보관지역의 온도와 습기는 물질과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해야 한다.
- 물질과 기구는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깨끗하고 정돈된 방법으로 설계된 영역에 보관하여야 한다.
- 건물 또는 시설 내에 작업자(인동선)와 지게차(물동선)의 이동 흐름은 제품의 혼입 또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조소 평면도의 예시>



제8조(시설)

- ① 작업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제형에 따라 적절히 구획·구분되어 있어 교차 오염 우려가 없을 것
 - 2.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청소 또는 위생관리를 하기 쉽게 매끄러운 표면을 지니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을 것
 - 3.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할 것
 - 4.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할 것. 창문이 외부 환경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할 것
- 5. 작업소 내의 외관 표면은 가능한 매끄럽게 설계하고, 청소, 소독제의 부식성 에 저항력이 있을 것
- 6. 적절하고 깨끗한 수세실과 화장실을 마련하고, 수세실과 화장실은 접근이 쉬어야 하나 생산구역과 분리되어 있을 것
- 7. 작업소 전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처리절차를 마련할 것
- 8.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환 기시설을 갖출 것
- 9. 각 제조구역별 청소 및 위생관리 절차에 따라 효능이 입증된 세척제 및 소독제를 사용할 것
- 10.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모품을 사용할 것
- ②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유지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도 또한 같다.
 - 2. 사용하지 않는 연결 호스와 부속품은 청소 등 위생관리를 하며,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것
 - 3. 설비 등은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설치하며,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 4. 설비 등의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5. 벌크 제품의 용기는 먼지나 수분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을 것
- 6. 제품과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 및 배수관을 설치하며, 배수관은 역류되지 않아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것
- 7. 천정 주위의 대들보, 파이프, 덕트 등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노출된 파이프는 받침대 등으로 고정하고 벽에 닿지 않게 하여 청소가 용 이하도록 설계할 것
- 8.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해 설

- 보관 구역
- 통로는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반품 등을 포함한 보관지역에서는 물품의 입·출고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 통로는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는 구역으로서 사람과 물건의 이동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교차오염의 위험이 없어야 된다.
- 정해진 보관관리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 가능하다.
- 손상된 팔레트는 수거하여 수선 또는 폐기 한다.
- 매일 바닥의 폐기물을 치워야 한다.
- 동물이나 해충이 침입하기 쉬운 환경은 개선하여야 한다.
- 용기(저장조 등)들은 닫아서 깨끗하고 정돈된 방법으로 보관한다.
- 적절한 환경 조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 원료 취급 구역

- 원료보관소와 칭량실은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 엎지르거나 흘리는 것을 방지하고 즉각적으로 치우는 시스템과 절차들이 시 행되어야 한다.
- 모든 드럼의 윗부분은 필요한 경우 이송 전에 또는 칭량 구역에서 개봉 전에 검사하고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바닥은 깨끗하고 부스러기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원료 용기들은 실제로 칭량하는 원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합하게 뚜껑을 덮어 놓아야 한다.
- 원료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봉인하거나 즉시 별도 저장조에 보관한 후에 품질상의 처분 결정을 위해 격리해 둔다.
- 선입 선출이 용이하도록 구분하여 적재하고, 상부의 물품으로 인하여 하부 물품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 제조 구역

- 모든 호스는 필요 시 청소 또는 위생 처리를 한다. 청소 후에 호스는 완전히 비워져야 하고 건조되어야 한다. 호스는 정해진 지역에 바닥에 닿지 않도록 정리하여 보관한다.
- 모든 도구와 이동 가능한 기구는 청소 및 위생 처리 후 정해진 지역에 정돈 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 제조구역에서 흘린 것은 신속히 청소한다.
- 탱크의 바깥 면들은 정기적으로 청소되어야 한다.
- 모든 배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우수한 정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표면은 청소 또는 위생관리하기 용이한 재질로 설계되어야 한다.
- 페인트를 칠한 지역은 우수한 정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벗겨진 칠은 보수 되어야 한다.
- 폐기물(예, 여과지, 개스킷, 폐기 가능한 도구들, 플라스틱 봉지)은 주기적으로

버려야 하며 장기간 모아놓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깨끗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고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포장 구역

- 포장 구역은 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포장 구역은 설비의 팔레트, 포장 작업의 다른 재료들의 폐기물, 사용되지 않는 장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다른 재료가 있어서는 안 된다.
- 구역 설계는 사용하지 않는 부품, 제품 또는 폐기물의 제거를 쉽게 할 수 있 어야 한다.
- 폐기물 저장통은 필요하다면 청소 및 위생 처리 되어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깨끗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 기타구역 직원 서비스와 준수사항

- 화장실, 갱의실 및 손 세척 설비가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작업구역과 분리 되어야 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환기되어야 한다.
- 편리한 손 세척 설비는 온수, 냉수, 세척제와 1회용 종이 또는 접촉하지 않는 손 건조기들을 포함한다.
-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정수기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위생적이고 잘 정비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구내식당과 쉼터(휴게실)는 위생적이고 잘 정비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음식물은 생산구역과 분리된 지정된 구역에서만 보관, 취급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부로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한다.
- 개인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알맞은 복장을 갖춰야 한다.
- 개인은 개인위생 처리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손은 모든 제품 작업 전 또는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기 전에 청결히 하여야 한다.
- 제품, 원료 또는 포장재와 직접 접촉하는 사람은 제품 안전에 영향을 확실히 미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흐름은 사람과 물건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이 움직임의 설계는 혼동 방지와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건물의 설계 시와 구 건물의 증, 개축 시 뿐만 아니라 현 건물에 있어서의 흐름의 재검토를 실시하여 제조 작업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그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동선과 물동선의 흐름경로를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히 설정한다.
- 교차가 불가피할 경우 작업에 "시간차"를 만든다.
- 사람과 대차가 교차하는 경우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한다.
- 공기의 흐름을 고려한다.

제조 구역 내에 있는 바닥, 벽, 천장 및 창문은 청소와 필요하다면 위생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축되어야 하고 청결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생산 구역 내에 건축 또는 보수 공사 시에는 적당한 청소와 유지 관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청소용제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는 매끄러운 표면을 설치한다.



○ 천장, 벽, 바닥이 접하는 부분은 틈이 없어야 하고 먼지 등 이물 질이 쌓이지 않도록 둥글게 처리되어야 함

○ 환기시설

CGMP에서는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공기 조절 없이 밀폐된 실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동일한 품질의 화장품을 연중생산하기 위해서는 환기 설비와 함께 온·습도관리 설비를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기 조절에는 많은 투자가 따르고 그 관리에도 비용이 소요되므로 제조소 내 실내 환경에 맞추어 적절한 환기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 공기 조절의 정의 및 목적

공기 조절이란 "공기의 온도, 습도, 공중미립자, 풍량, 풍향, 기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공기 조절의 목적은 제품과 직원에 대한 오염 방지이나 한편으로는 오염의 원인이되기도 한다. 공기 조절은 기류를 발생시킨다. 기류는 먼지, 미립자, 미생물을 공중에 날아 올라가게 만들어서 제품에 부착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기 조절시설을 설치한다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로 해야 한다.

CGMP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정도 기준에 제시된 청정도 등급 이상으로 설정 하여야 하며 청정등급을 설정한 구역(작업소, 실험실, 보관소 등)은 설정 등급의 유지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설정 등급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공기 조절의 방식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크고, 외부 환경이 제품과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온 ·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에어컨 기능을 갖춘 공기 조절기를 설치한다. 공기의 온 · 습도, 공중미립자, 풍량, 풍향, 기류를 일련의 덕트를 사용해서 제어하는 "센트럴 방식"이 가장 화장품에 적합한 공기 조절이다. 흡기구와 배기구를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고 굵은 덕트로 온 · 습도를 관리한 공기를 순환 또는 외기를 흐르게 한다. 이 방법은 많은 설비 투자와 유지비용을 수반한다. 한편 환기만 하는 방식과 센트럴 방식을 겹친 "팬 코일+에어컨 방식"은 비용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이다. 온 · 습도 제어를 실내에서 급배기 순환하는 패키지에어컨에게 맡기고 공중미립자와 풍향 관리를 팬 코일로 하는 방식이다. 패키지에어컨의 기류를 제어하

는 것은 어려우므로 센트럴 방식보다 공기류의 관리 성능은 떨어지지만, 화장품 제조에는 적합한 공기 조절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청정도 기준】

| 청정도등급 | 대상시설 | 해당 작업실 | 청정공기 순환 | 구조 조건 | 관리 기준 | 작업 복장 |
|-------|----------------------|---|-----------------------------|--|--|---------------------|
| 1 | 청정도 엄격 관리 | Clean bench | 20회/hr 이상 또는 차압 관리 | Pre-filter, Med-filter, HEPA-filter, Clean bench booth, 온도조절 | 낙하균: 10개/hr 또는 부유균: 20개/m²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
| 2 |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 | 제조실, 성형실, 충전실, 내용물 보관소, 원료 칭량실, 미생물 실험실 갱의실 | 10회/hr 이상 또는 차압 관리 | Pre-filter, Med-filter, (필요시 HEPA-filter), 분진발생실 주변 양압, 제진시설 | 낙하균: 30개/hr 또는 부유균: 200개/m ²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
| 3 |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 안되는 곳 | 포장실, 갱의실 | 차압 관리 | Pre-filter 온도조절 | 갱의, 포장재의 외부 청소 후 반입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
| 4 | 일반 작업실 (내용물 완전폐색) | 포장재 보관소, 완제품 보관소, 관리품 보관소, 원료 보관소, 일반 시험실 | 환기장치 | 환기 (온도 조절) | - | - |

- 이미 포장(1차포장)된 완제품을 업체의 필요에 따라 세트포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완제품 보관소의 등급 이상으로 관리하면 무방하다.
- 갱의실의 경우 해당 작업실과 같은 등급으로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에어샤워 등 시설을 사용한 업체가 많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업체의 개별 특성에 맞게 적절한 관리 방식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환기시설의 사례
 - ·공기 조화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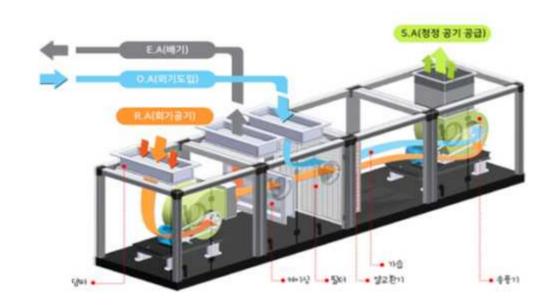
공기 조화 장치는 청정 등급 유지에 필수적이고 중요하므로 그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기록한다.

<공기 조절의 4대 요소>

| 번호 | 4대요소 | 대응설비 | | |
|----|------|-------|--|--|
| 1 | 청정도 | 공기정화기 | | |
| 2 | 실내온도 | 열교환기 | | |
| 3 | 습 도 | 가습기 | | |
| 4 | 기 류 | 송풍기 | | |

<공기 조화기>

(AHU)





(FFU)



AHU Air Handling Unit 특징

표준 공기조화장치

건축시부터 설계에 반영

기능

가습, 냉·난방, 공기여과 급·배기

장단점

관리가 용이함.(중앙제어) 실내 소음이 없음 설비비가 높음



FFU Fan Filter Unit

ACCU Air Cooling Control Unit 특징

간이 공기조화장치 설비비가 비교적 저렴함 기존 건물에 시공 용이

기능

공기여과, 급·배기

장·단점

실별 조건에 맞게 제작가능 실내 소음이 발생함.





• 전열교환기

제조소에 급배기가 가능한 전열교환기(실내 및 외부 공기 간 열에너지를 교환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양방향 열교환 방식의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제조소 내적절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예>



어느 공기 조절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에어 필터를 통하여 외기를 도입하거나, 순 환시킬 필요가 있다. 가정용 방충망 정도의 필터를 설치한 흡기 팬만의 작업장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에어 필터의 종류, 설치 장소의 예, 취급 방법, 조립 예를 아래에 제시했다.

공기를 순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생산구역의 먼지가 함께 순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조 중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장소에는 적절한 배기장치나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장품 제조라면 적어도 중성능 필터의 설치를 권장한다. 고도의 환경 관리가 필요하면 고성능 필터(HEPA필터)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필터는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관리 및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관리 및 보수를 게을리 하면 필터의 성능이 유지될 수 없고, 기대하는 환경을 얻을 수 없다.

고성능 필터를 설치할수록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초고성능 필터를 설치하는 기업이 있으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초고성능 필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정기적인 포집 효율 시험이나 필터의 완전성 시험 등이 필요하게 되고 고액의 비용이 든다. 이들 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면 본래의 성능이 보증되지 않는다. 또한 초고성능 필터를 설치한 작업장에서 일반적인 작업을 실시하면 바로 필터가 막혀버려서 오히려 작업 장소의 환경이 나빠진다. 목적에 맞는 필터를 선택해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HEPA Filter의 완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한다.

<필터>

PRE Filter (세척 후 3~4회 재사용) · Medium Filter 전처리용 P/F · Media : Glass Fiber, 부직포

• 필터입자 : 5ﷺ · 압력손실 : 9mmAq 이하

MEDIUM Filter · Media: Glass Fiber M/F

H/F

· HEPA Filer 전처리용 · B/D 공기정화, 산업공장등에 사용

· 압력손실 : 16mmAq 이하 · 필터입자 : 0.5//m

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Filter

· 0.3㎞의 분진 99.97% 제거 · Media : Glass Fiber

· 반도체공장, 병원, 의약품, 식품산업에 사용

· 압력손실 : 24mmAq 이하 · 필터입자 : 0.3μm

| 구분 | PRE FILTER | PRE BAG FILTER | MEDIUM FILTER | MEDIUM BAG FILTER | HEPA | FILTER |
|----|--|-------------------|--|----------------------|--|--------|
| 사진 | | | | | | |
| | 1. HEPA, MEDIUM등의 전처리용 | | 1. 포집효율 95%를 보증하는 중고성능 Fliter이다 | | 1. 사용온도 최고 250℃에서 0.3⊭ 입자들 99.97%이상 | |
| | 2. 대기중 먼지등 인체에 해를 미치는 미림자(10~30㎞)를 제거 | | 2. Clean Room 정밀기계공업 등에 있어 Hepa Filter 전처리용 | | 2. 포집성능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HEPA Filter이다 | |
| 특 | 3. 압력손실이 낮고 고효율로 Dust 포집량이 크다 | | 3. 공기정화, 산업공장 등에 있어 최종 Filter로 사용한다 | | 3. 필름, 의약품 등의 제조 Line에 사용 | |
| | 4. 틀 또는 세제로 세척하여 사용가능 경제적임 (재사용 2~3흿) | | 4. Frame은 P/Board or G/Steel 등으로 제작되어 견고함 | | 4. 반도체, 의약품 Cleam Oven에 사용 | |
| 징 | 5. 두께 조정과 재단이 용이하여 교환 또는 취급이 쉽다 | | 5. Bag type은 먼지 보유용량이 크다. 수명이 길다 | | | |
| | 6. Bag type은 처리용량을 4배이상 높일 수 있다 | | 6. Bag type은 포집효율이 높고 압력 손실이 적다 | | | |

○ 차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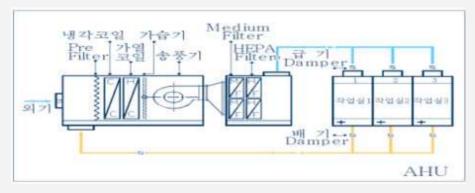
환기시설을 설치하면 작업장 실압을 관리하고 외부와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청정등급의 경우 각 등급 간의 공기의 품질이 다르므로 등급이 낮은 작업실의 공기가 높은 등급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의 공기압 차가 있어야 한다.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작업구역 및 주변구역에서 양압(수치기준 필요)을 유지해야 하며, 주변의 낮은 청정도 등급 쪽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공급되어야 한다.(예: 충전실 (2급)→포장실(3급)) 즉 높은 청정 등급의 공기압은 낮은 청정 등급의 공기압 보다 높아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4급지 < 3급지 < 2급지 순으로 실압을 높이고 외부의 먼지가 작업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다만, 작업실이 분진 발생, 악취 등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예: 파우더 충진실 등)에는 해당 작업실을 음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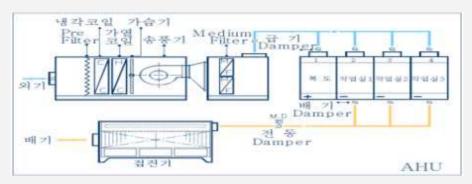
실압 차이가 있는 방 사이에는 차압 댐퍼나 풍량 가변 장치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차압을 조정한다. 이들 기구는 옆방과의 사이에 있는 문을 개폐했을 때의 차압 조정 역할도 하고 있다.

【차압】

1. AHU - 공기 흐름도(양압의 예 : 급기 > 배기)



2. AHU - 공기 흐름도(음압의 예 : 급기 < 배기)



3. 공기흐름 확인 방법



○ 온·습도 관리: 온도는 1 ~ 30°C, 습도는 80%이하로 관리한다. 제품 특성상 온습도에 민감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일부 제조 구역 및 보관소(자재, 완제품)에 대해 서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온·습도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온습도의 설정을 정할 때에는 "결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결로 현상은 곰팡이 발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관리기준을 설정한다. 온습도계는 가급적 최저, 최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하도록 한다.

○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등

화장품 생산 시에는 많은 설비가 사용된다. 분체혼합기, 유화기, 혼합기, 충전기, 포장기 등의 제조 설비뿐만 아니라, 냉각장치, 가열장치, 분쇄기, 에어로졸 제조장치 등의 부대설비와 저울, 온도계, 압력계 등의 계측기기가 사용된다. 이들을 통합하여 "화장품 생산 설비"라고 한다.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 양, 품질에 따라 사용하는 생산 설비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동 해설서에서는 화장품 생산에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 하였다.

화장품 생산 설비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설계. 설치
- 검정

- 세척, 소독
- 유지관리
- 소모품
- 사용기한
- 대체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한 제조 등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와 용구는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도록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계획적이어야 하고 적절하게 유지 되고 검정되어야 한다.

최종 시스템 설계는 각 원료와 완제품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정시스템(Processing System)은 아래사항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 제품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화학적으로 반응이 있어서는 안 되고, 흡수성이 있지 않아야 한다.
- 원료와 자재 등은 공급과 출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선입 선출)
- 정돈과 효율 및 안전한 조작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표면이나 벌크제품과 닿는 부분은 제품의 위생처리와 청소가 용이해야 한다.
- 제품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 설비의 아래와 위에 먼지의 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 확실하게 라벨로 표시하고 적절한 문서 기록을 한다.
- 측정, 칭량, 기록, 관리 설비를 일정 주기로 적절한 방법에 의해 검교정하고 점검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제품 용기들(벌크제품 보관 용기 등)은 환경의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이동 호스와 액세서리는 깨끗해야 하며 건조하게 유지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청소되고 위생 처리된 휴대용 설비와 도구는 적절한 위치를 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포장설비의 선택은 제품의 공정, 점도, 제품의 안정성, pH, 밀도, 용기 재질 및

부품 설계 등과 같은 제품과 용기의 특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포장설비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 제품 오염을 최소화한다.
- 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 제품에 첨가되거나, 흡수되지 않아야 한다.
- 제품과 접촉되는 부위의 청소 및 위생관리가 용이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 효율적이며 안전한 조작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제품과 최종 포장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 부품 및 받침대의 위와 바닥에 오물이 고이는 것을 최소화한다.
- 물리적인 오염물질 축적의 육안식별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 제품과 포장의 변경이 용이하여야 한다.
- 보수와 유지관리 작업에 의해 제품 품질에 어떤 위해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

포장설비는 설계되고 의도된 바에 따라 지속적인 성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충분히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제품의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 배수관 및 덕트는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물방울과 응축수의 발생을 방지한다.
- 역류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하여 노출한 배관은 벽에서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설비 사용 시에는 많은 소모품이 사용된다. 소모품은 화장품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필터, 개스킷, 보관용기와 봉지의 성분이 화장품에 녹아흡수되거나 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 부착해서는 안 된다. 소모품을 선택할 때는 그 재질과 표면과 제품과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고른다.

참고자료

Guidance for Industry

-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U.S. FDA]

O Building and Facilities

You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buildings and facilities used for manufacturing are of suitable size, design, and construction, and maintained in a clean and orderly manner. Buildings should provide:

- Space of sufficient size and adequate organization to prevent selection errors (i.e., mix-ups) or cross contamination between consumables, raw materials, intermediate formulations (i.e., in-process materials), and finished products (This applies to containers, closures, labels and labeling materials as well.)
- Adequate filth and pest controls (Examples of filth may include any objectionable matter, contributed by animal contamination such as rodent, insect, or bird matter; or any other objectionable matter contributed by insanitary conditions.)
- Floors, walls, and ceilings constructed of smooth, easily cleanable surfaces
- Adequate lighting and ventilation, and, if necessary for control purposes, screening, filtering, dust, humidity, temperature, and bacteriological controls
- Adequate washing, cleaning, plumbing, toilet, and locker facilities to allow for sanitary operation; cleaning of facilities, equipment, and utensils; and personal cleanliness; and
- Fixtures, ducts, pipes, and drainages installed to prevent condensate or drip contamination.

Equipment

You should determine whether equipment and utensils used in processing, holding, transferring and packaging are of appropriate design, size, material and workmanship for the intended purpose to prevent corrosion, accumulation of static material and/or adulteration with lubricants, coolants, dirt, and sanitizing agents. The equipment (for example, utensils, pipework, cosmetic contact surfaces, and balances) should be:

- Maintained in a clean and orderly condition, sanitized at appropriate times, and stored in a manner that protects against splash, dust, and other contaminants

- Constructed to facilitate adjustment, cleaning, and maintenance
- Of suitable size and accuracy for measuring, mixing, and weighing operations
- Calibrated regularly or checked according to an SOP with results documented, where appropriate
- Removed from use if it is defective, does not meet recommended tolerances, or cannot be repaired and calibrated immediat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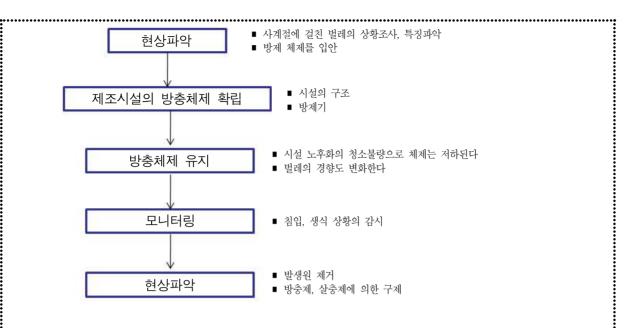
제9조(작업소의 위생)

- ①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 ② 제조, 관리 및 보관 구역 내의 바닥, 벽, 천장 및 창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③ 제조시설이나 설비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 또는 소독제는 효능이 입증된 것을 사용하고 잔류하거나 적용하는 표면에 이상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제조시설이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관 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해 설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을 수 있는 대책】

- 원칙
- 벌레가 좋아하는 것을 제거한다.
-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
-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 방충 대책의 구체적인 예
- 벽, 천장, 창문, 파이프 구멍에 틈이 없도록 한다.
- 개방할 수 있는 창문을 만들지 않는다.
- 창문은 차광하고 야간에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
- 배기구. 흡기구에 필터를 단다.
- 폐수구에 트랩을 단다.
- 문 하부에는 스커트를 설치한다.
- 골판지, 나무 부스러기를 방치하지 않는다.(벌레의 집이 된다)
- 실내압을 외부(실외)보다 높게 관리한다.
- 청소와 정리정돈
- 해충, 곤충의 조사와 구제를 실시한다.



【외부업체 운영 시 관리】

- 1) 업체 선정 시 적합한 업체인지 조사 및 평가한다.
- 2) 방충방서 모니터링 보고서를 수령하여 검토하고 이상발생시 대책수립을 논의·요청한다.
- 3) 사용 약제(사용 시) 정보 등을 수령하여 유해성 여부를 평가한다.
- 4) 업체에서 관리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점검할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방충・방서 장치】

위생 프로그램이 건물 안의 모든 공간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청소 방법과 위생 처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조시스템에 사용된 필터는 규정에 의해 청소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
- 물질 또는 제품 필터들은 규정에 의해 청소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
- 물 또는 제품의 모든 유출과 고인 곳 그리고 파손된 용기는 지체 없이 청소 또는 제거되어야 한다.

- 제조 공정 또는 포장과 관련되는 지역에서의 청소와 관련된 활동이 기류에 의한 오염을 유발해 제품 품질에 위해를 끼칠 것 같은 경우에는 작업 동안에 해서는 안 된다.
- 청소에 사용되는 용구(진공청소기 등)는 정돈된 방법으로 깨끗하고, 건조된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 오물이 묻은 걸레는 사용 후에 버리거나 세탁해야 한다.
- 오물이 묻은 유니폼은 세탁될 때까지 적당한 컨테이너에 보관되어야 한다.
- 제조 공정과 포장에 사용한 설비 그리고 도구들은 세척해야 한다. 적절한 때에 도구들은 계획과 절차에 따라 위생 처리되어야 하고 기록되어야 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되어야 하고, 청결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 전 검사되어야 한다. (예: 청소완료 표시서 등)
- 제조 공정과 포장 지역에서 재료의 운송을 위해 사용된 기구는 필요할 때 청소되고 위생 처리되어야 하며, 작업은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제조 공장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청소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적절하게 교육되어야 한다. 천장, 머리 위의 파이프, 기타 작업 지역은 필요할 때 모니터링 하여 청소되어야 한다.
- 제품 또는 원료가 노출되는 제조 공정, 포장 또는 보관 구역에서의 공사 또는 유지관리 보수 활동은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제조 공장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먼지, 이물 등을 묻혀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하여야 한다.

적절한 청소와 위생처리 프로그램이 모든 설비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청소와 세제와 소독제는 확인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모든 세제와 소독제는 아래와 같이 해야 된다.

- 적절한 라벨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 원료, 포장재 또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히 선정, 보관,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한다.

같은 제품의 연속적인 뱃치의 생산 또는 지속적인 생산에 할당받은 설비가 있는 곳의 생산 작동을 위해, 설비는 적절한 간격을 두고 세척되어야 한다.

설비는 적절히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한다. 설비의 세척은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 양, 품질에 따라 변화한다. 세척의 종류를 잘 이해하고 자사의 설비 세척의 원칙에 따라 세척하고, 판정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조하는 제품의 전환 시 뿐만 아니라 연속해서 제조하고 있을 때에도 적절한 주기로 제조 설비를 세척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설비를 세척하는지의 판단은 제조책임자의 중요한 책무다. 설비, 도구는 세척, 소독 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예: 세척대기, 세척중, 세척완료 등)설비의 세척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세척대상물질 및 세척대상 설비에 따라 "적절한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세척에는 "확인"이 따르게 마련이다. 제조 작업자뿐만 아니라 화장품 제조에 관련된 전원이 세척을 잘 이해해야 한다. 세척이 완료되면 적절한 절차로서 소독을 실시한다. 보통 70~80% 에탄올, 70~80% 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열수(뜨거운 정제수)등으로 설비, 도구 소독을 하며 소독방법, 주기, 소독액 조제 관리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세척대상 및 확인방법】

- 세척대상 물질
- 화학물질(원료, 혼합물), 미립자, 미생물
- 동일제품, 이종제품
- 쉽게 분해되는 물질, 안정된 물질
- 세척이 쉬운 물질, 세척이 곤란한 물질
- 불용물질, 가용물질
- 검출이 곤란한 물질, 쉽게 검출할 수 있는 물질
- 세척대상 설비
- 설비, 배관, 용기, 호스, 부속품
- 단단한 표면(용기내부), 부드러운 표면(호스)
- 큰 설비, 작은 설비
- 세척이 곤란한 설비, 용이한 설비
- 세척확인 방법
- 육안 확인
- 천으로 문질러 부착물로 확인
- 린스액의 화학분석

물 또는 증기만으로 세척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브러시 등의 세척 기구를 적절히 사용해서 세척하는 것도 좋다. 세제(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설비 세척은 권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세제는 설비 내벽에 남기 쉽다.
- ② 잔존한 세척제는 제품에 악영향을 미친다.
- ③ 세제가 잔존하고 있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고도의 화학 분석이 필요하다. 쉽게 물로 제거하도록 설계된 세제라도 세제 사용 후에는 문질러서 지우거나 세차게 흐르는 물로 행구지 않으면 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세제로 손을 씻었을 때, 손을 충분히 행구지 않으면 세제의 미끈미끈한 느낌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세제로 제조 설비를 세척했을 때, 설비 구석에 남은 세제를 간단히 제거하기어려울 수 있어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지만 화장품제형특성상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제 사용 시에는 세척 후 잔류 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부품을 분해할 수 있는 설비는 분해해서 세척한다. 그리고 세척 후는 반드시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세척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 후의설비는 건조시키고, 밀폐해서 보존한다. 이상과 같은 "설비세척의 원칙"을 반드시마련해 놓는다. 작업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기는 화장품 설비 세척을 해서는 안된다.

【설비 세척의 원칙】

- 위험성이 없는 용제(물이 최적)로 세척한다.
- 가능한 한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증기 세척은 좋은 방법
- 브러시 등으로 문질러 지우는 것을 고려한다.
- 분해할 수 있는 설비는 분해해서 세척한다.
- 세척 후는 "판정"한다.
- 판정 후의 설비는 건조·밀폐해서 보존한다.
- 사용 전 육안으로 재확인하여 적합한 것만을 제조에 사용한다.

화장품 제조 설비의 종류와 세척방법을 정리해 두면 편리하다. 세척방법에 제1선택지, 제2선택지, 심한 더러움 시의 대안을 마련하고 세척대책이 되는 설비의 상태에 맞게 세척방법을 선택한다. 유화기 등의 일반적인 제조설비에는 "물+브러시"세척이 제1선택지일 것이다. 지워지기 어려운 잔류물에는 에탄올 등의 유기용제의 사용이 필요하게 된다.

분해할 수 있는 부분은 분해해서 세척한다. 특히 제조 품목이 바뀔 때는 반드시 분해할 부분을 설비마다 정해 놓으면 좋다. 호스와 여과천 등은 서로 상이한 제품 간에서 공용해서는 안 된다. 제품마다 전용품을 준비한다.

세척 후에는 반드시 "판정"을 실시한다. 판정방법에는 육안판정, 닦아내기 판정, 린스 정량이 있다. 우선순위도 이 순서다. 각각의 판정방법의 절차를 정해 놓고 제1선택지를 육안판정으로 한다. 육안판정을 할 수 없을 부분의 판정에는 닦아내기 판정을 실시하고, 닦아내기 판정을 실시할 수 없으면 린스정량을 실시하면 된다. 육안판정의 장소는 미리 정해 놓고 판정결과를 기록서에 기재한다. 판정 장소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제시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닦아내기 판정에서는 흰 천이나 검은 천으로 설비 내부의 표면을 닦아내고 천 표면의 잔류물 유무로 세척 결과를 판정한다. 흰 천을 사용할지 검은 천을 사용할지는 전회 제조물 종류로 정하면 된다. 천은 무진포(無塵布)가 바람직하다. 천의 크기나 닦아내기 판정의 방법은 대상 설비에 따라 다르므로 각 회사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린스 정량법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방법이지만, 수치로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잔존하는 불용물을 정량할 수 없으므로 신뢰도는 떨어진다. 호스나 틈새기의 세척판정에는 적합하므로 반드시 절차를 준비해 두고 필요할 때에 실시한다. 린스 액의 최적정량방법은 HPLC법이나 잔존물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이면 박층 크로마토그래피(TLC)에 의한 간편 정량으로 될 것이다. 최근, TOC(총유기탄소) 측정법이 발달해서 많은 기종이 발매되어 있다. TOC측정기로 린스액 중의 총유기탄소를 측정해서 세척 판정하는 것도 좋다. UV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세척 후에는 세척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

방, 벽, 구역 등의 청정화 작업(청소와 정리 정돈 등)을 "청소"라고 한다. 청소는 설비세척과 구별한다. 청소와 세척의 차이 및 청소에 관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소 및 세척】

- ※ 청소 : 주위의 청소와 정리정돈을 포함한 시설·설비의 청정화 작업 (세척 : 설비의 내부 세척화 작업)
- 절차서를 작성한다.
-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 사용기구를 정해 놓는다.
- 구체적인 절차를 정해 놓는다.(먼저 쓰레기를 제거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천으로 닦는 일은 3번 닦으면 교환 등)
- 심한 오염에 대한 대처 방법을 기재해 놓는다.
- 판정기준 : 구체적인 육안판정기준을 제시한다.
- 세제를 사용한다면
- 사용하는 세제명을 정해 놓는다.
- 사용하는 세제명을 기록한다.
- 기록을 남긴다.
- 사용한 기구, 세제, 날짜, 시간, 담당자명 등
- "청소결과"를 표시한다.

제10조(유지관리)

- ① 건물, 시설 및 주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 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기록하여야 한다.
- ② 결함 발생 및 정비 중인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고장 등 사용이 불가할 경우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세척한 설비는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제조 관련 설비는 승인된 자만이 접근 ·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측정·시험장비 및 자동화장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검교정 및 성능점검을 하고 기록해야 한다.
- ⑥ 유지관리 작업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해설

화장품 생산 시설(facilities, premises, buildings)이란 화장품을 생산하는 설비와 기기가 들어있는 건물, 작업실, 건물 내의 통로, 갱의실, 손을 씻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유지관리란 이러한 화장품 생산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이다.

유지관리는 예방적 활동(Preventive activity), 유지보수(maintenance), 정기 검교 정(Calibr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예방적 활동(Preventive activity)은 주요 설비 (제조탱크, 충전 설비, 타정기 등) 및 시험장비에 대하여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속품들에 대하여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시정 실시(망가지고 나서 수리하는 일)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유지보수(maintenance)는 고장 발생 시의 긴급점검이나 수리를 말하며, 작업을 실시할 때, 설비의 갱신, 변경으로 기능이 변화해도 좋으나, 기능의 변화와 점검 작업 그 자체가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또한 설비가 불량해져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설비를 제거하거나 확실하게 사용불능 표시를 해야 한다. 정기 검교정(Calibration)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측기(생산설비 및 시험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전 검교정(Calibration)여부를 확인하여 제조 및 시험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설비의 개선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보다 좋은 설비로 제조를 행하도록 한다. 이때, 그 개선이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개선이 변경이 되는 일도 있다. 설비점검은 체크시트를 작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설비의 유지관리 주요사항】

- 예방적 실시(Preventive Maintenance)가 원칙
- 설비마다 절차서를 작성한다.
- 계획을 가지고 실행한다. (연간계획이 일반적)
- 책임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 유지하는 "기준"은 절차서에 포함
- 점검체크시트를 사용하면 편리
- 점검항목: 외관검사(더러움, 녹, 이상소음, 이취 등)

작동점검(스위치, 연동성 등)

기능측정(회전수, 전압, 투과율, 감도 등)

청소(외부표면, 내부)

부품 교환

개선(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설비는 제조책임자가 허가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가동시켜서는 안 된다. 담당자이외의 사람이나 외부자가 접근하거나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을 피한다. 입장제한, 가동열쇠 설치, 철저한 사용제한 등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사용한 자동시스템이 많아졌다. 이들 자동시스템에는 적어도액세스 제한 및 고쳐 쓰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제조조건이나 제조기록이 마음대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설비의 가동조건을 변경했을 때는 충분한 변경 기록을 남긴다.

【설비별 관리 방안】

- 제조 설비
- 가. 탱크(TANKS)

탱크는 공정 단계 및 완성된 포뮬레이션 과정에서 공정 중인 또는 보관용 원료를 저장하기를 위해 사용되는 용기이다. 탱크는 가열과 냉각을 하도록 또는 압력과 진공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고정시키거나 움직일 수 있게 설계 될 수도 있다. 탱크는 적절한 커버를 갖춰야 하며 청소와 유지관리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구성 재질(Materials of Construction)
- 온도/압력 범위가 조작 전반과 제조 공정 단계의 제품에 적합해야 한다.

-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제품(포뮬레이션 또는 원료 또는 생산공정 중간생산물)과의 반응으로 부식되거나 분해를 초래하는 반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제품, 또는 제품제조과정, 설비 세척, 또는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다른 물질이 스며 들어서는 안 된다.
- 세제 및 소독제와 반응해서는 안 된다.

용접, 나사, 나사못, 용구 등을 포함하는 설비 부품들 사이에 전기화학 반응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원료와 포뮬레이션에 대해 스테인리스스틸은 탱크의 제품에 접촉하는 표면물질로 일반적으로 선호된다. 구체적인 등급으로는 유형번호 304와 더 부식에 강한 번호 316 스테인리스스틸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어떤 경우에, 미생물학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물질 또는 제품에는 유리로 안을 댄 강화유리섬유 폴리에스터와 플라스틱으로 안을 댄 탱크를 사용할 수 있다. 퍼옥사이드 같은 어떠한 민감한 물질/제품은 탱크 제작전문가들 또는 물질 공급자와 함께 탱크의 구성 물질과 생산하고자 하는 내용물이 서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상의하여야한다.

기계로 만들고 광을 낸 표면이 바람직하다. 주형 물질(Cast material) 또는 거친 표면은 제품이 뭉치게 되어 깨끗하게 청소하기가 어려워 미생물 또는 교차오염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주형 물질(Cast material)은 화장품에 추천되지 않는다. 용접, 결합은 가능한 한 매끄럽고 평면이어야 한다. 외부표면의 코팅은 제품에 대해저항력(Product - resistant)이 있어야 한다. 원료 공급업체는 그들이 판매한 화학제품들의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세척과 위생처리(Cleaning and Sanitization)

탱크는 세척하기 쉽게 고안되어야 한다. 제품에 접촉하는 표면은 검사와 기계적인 세척을 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척을 위해 부속품 해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최초 사용 전에 설비는 세척되어야 하고 사용목적에 따라소독 되어야 한다. 반응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표면을 비활성으로 만들기 위해사용하기 전에 표면 패시베이션(Passivation)을 하는 것이 추천된다. 설비의 일부분이 변경 시 어떤 경우에는 다시 패시베이션이 필요할 수 있다.

Clean-in-place 시스템(스프레이 볼/스팀세척기 같은)은 제품과 접촉되는 표면에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설비의 악화 또는 손상이 확인되고 처리되는 동안에는 장비의 해체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는 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물리적/미생물 또는 교차오염 문제를 일으킬수 있으며 청소하기가 어렵다. 탱크는 완전히 내용물이 빠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위생(Sanitary) 밸브와 연결부위는 비위생적인 틈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되며

세척/위생처리를 용이하게 하며 여러 가지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 밸브들은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정체부위(dead leg)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위치(Location)

탱크는 작업, 관찰, 유지관리가 쉽고 탱크와 주변 청소가 용이하고 위생적 조건들을 보증하고 제품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적부품(다리, 받침대, 장식용 쇠붙이 등)은 물리적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청소가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안전(Safety)

모든 탱크 시스템들과 주변 지역은 산업 안전 등에 관련된 법규와 요건들을 따라야만 한다.

나. 펌프(PUMPS)

펌프는 다양한 점도의 액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된다. 종종 펌프는 제품을 혼합(재순환 또는 균질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펌프는 뚜렷한 용도를 위해 다양한 설계를 갖는다.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형태는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과 Positive displacement(양극적인 이동)이다. 이들 두 유형들 안에 다음을 포함하는 많은 하위 그룹이 있다.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 : 열린 날개차(Impeller), 닫힌 날개차(Impeller) 낮은 점도의 액체에 사용한다(예: 물, 청소용제) Positive displacement(양극적인 이동) : Duo Lobe(2중 돌출부), 기어, 피스톤 점성이 있는 액체에 사용한다. 예. 미네랄오일, 에멀젼(크림 또는 로션) 펌핑(작업)의 기계적인 동작은 에너지를 펌핑된 물질에 가하게 된다. 이 에너지는

펌핑(작업)의 기계적인 동작은 에너지를 펌핑된 물질에 가하게 된다. 이 에너지는 펌프 된 물질에 따라 그 물질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종종 이들 변화는 즉각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물질의 보관 및 스트레스 시험 후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펌프 종류의 최종 선택은 펌핑 테스트를 통해 물성에 끼치는 영향을 완전히 해석하여 확증한 후에 해야 한다. 이러한 테스팅의 수치는 특히 매우 민감한 에멀젼에서 중요하다. 펌프의 기계적인 작동은 에멀젼의 분해를 가속화시켜서 불안전한 제품을 만들어낸다. 펌핑 테스트 이외에도, 제조업자는 전공정에서의 공정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펌핑 테스트 결과 이외에도, 펌프 종류는 미생물학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하는 속도, 펌프될 물질의 점성, 수송단계 필요조건, 그리고 청소/위생관리(세척/위생관리)의 용이성에 따라 선택한다. 펌프는 각 작업에 맞게 선택되어야 한다. 내용물의 자유로운 배수를 위해 전형적인 PD Lobe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즉 Lobe 입구와 배출구는 서로 180도로 되어야 하며 바닥과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평적인 설치 시에는 축적지역이 생기

므로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의 분해와 일상적인 청소/위생(세척/위

생처리)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① 구성재질(Materials of Construction)

펌프는 많이 움직이는 젖은 부품들로 구성되고 종종 하우징(Housing)과 날개차 (impeller)는 닳는 특성 때문에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거기에는 보통 펌핑된 제품으로 젖게 되는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 그리고 윤활제가 있다. 젖은 부품들은 적정 온도 범위에서 제품과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되어야한다.

② 청소와 위생처리(세척과 위생처리)(Cleaning & Sanitization)

펌프는 일상적인 예정된 청소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용된 작업 범위에 대해 라벨을 확인해야 한다. 효과적인 청소와(세척과) 위생을 위해 각각의 펌프 디자인을 검증해야 하고 철저한 예방적인 유지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③ 안전(Safety)

펌프 설계는 펌핑 시 생성되는 압력을 고려해야 하고 적합한 위생적인 압력 해소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혼합과 교반 장치(MIXING AND AGITATION EQUIPMENT)

혼합 또는 교반 장치는 제품의 균일성을 얻기 위해 또 희망하는 물리적 성상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장치 설계는 기계적으로 회전된 날의 간단한 형태로부터 정교한 제분기(mill)와 균질화기(Homogenizer)까지 있다. 혼합기는 제품에 영향을 미치며 많은 경우에 제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의도된결과를 생산하는 믹서를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믹서를 고르는 방법 중 일반적인 접근은 실제 생산 크기의 뱃치 생산 전에 시험적인 정률증가(scale - up)기준을 사용하는, 뱃치들을 제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산된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에 따라 믹서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배플(baffles)과 호모게나이저로 이루어진 조합믹서(combination mixer)는 희망하는 최종 제품 및 공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속도의 모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① 구성재질(Materials of Construction)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믹서의 재질이 믹서를 설치할 젖은 부분 및 탱크와의 공존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믹서는 봉인(seal)과 개스 킷에 의해서 제품과의 접촉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내부 패킹과 윤활제를 사용 한다. 봉인(seal)과 개스킷과 제품과의 공존시의 적용 가능성은 확인되어야 하고, 또 과도한 악화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온도, pH 그리고 압력과 같은 작동 조건 의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계획된 유지관리와 점검은 봉함 (씰링), 개스킷 그리고 패킹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윤활제가 새서 제품을 오염시키 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② 청소와 위생처리(Cleaning and Sanitization))

다양한 작업으로 인해 혼합기와 구성 설비의 빈번한 청소가 요구될 경우, 쉽게 제거될 수 있는 혼합기를 선택하면 철저한 청소를 할 수 있다. 풋베어링, 조절장 치 받침. 주요 진로. 고정나사 등을 청소하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치(Location)

필요할 때. 혼합기는 수리와 청소를 위해 이동하기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안전(Safety)

혼합기를 작동 시키는 사람은 회전하는 샤프트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생각하여 안전한 작동 연습을 적절하게 훈련 받아야 한다. 이동 가능한 혼합기는 사용할 때 적절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라. 호스(HOSES)

호스는 화장품 생산 작업에 훌륭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 위치에서 또 다른 위치로 제품의 전달을 위해 화장품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유형과 구성 제재는 대단히 다양하다. 이들은 조심해서 선택되고 사용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설비의 하나이다.

① 구성재질(Materials of Construction)

호스의 일반 건조 제재는 :

- 강화된 식품등급의 고무 또는 네오프렌
- TYGON 또는 강화된 TYGON
- 폴리에칠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 나일론

호스 부속품과 호스는 작동의 전반적인 범위의 온도와 압력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품에 적합한 제재로 건조되어야 한다. 호스 구조는 위생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야 한다.

- ② 청소와 위생처리(Cleaning and Sanitization)
- 호스와 부속품의 안쪽과 바깥쪽 표면은 모두 제품과 직접 접하기 때문에 청소의 용이성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 투명한 재질은 청결과 잔금 또는 깨짐 같은 문제에 대한 호스의 검사를 용이하게 한다.
- 짧은 길이의 경우는 청소, 건조 그리고 취급하기 쉽고 제품이 축적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선호된다.
- 세척제(예로 스팀, 세제, 소독제 그리고 용매)들이 호스와 부속품 제재에 적합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 부속품이 해체와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는 부속품의 사용은 가는 관이 미생물 또는 교차오염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청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한다.
- 일상적인 호스세척 절차의 문서화는 확립되어야 한다.
- ③ 위치(Location)

사용하지 않을 때 호스는 세척되고, 건조되어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위생적인 표면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캐비닛, 선반, 벽걸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정된 위치에 보관되어야 한다. 깨끗한 호스는 과도한 액체를 빼내고 적절한 것으로 끝을 (예를 들면, 적절하게 알맞은 위생 뚜껑을 덮거나, 플라스틱 또는 비닐로 배출구를 싸는 것) 덮어서 보관한다.

④ 안전(Safety)

호스 설계와 선택은 적용시의 사용 압력/온도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마. 필터, 여과기 그리고 체(FILTERS, STRAINERS AND SIEVES)

필터, 스트레이너 그리고 체는 화장품 원료와 완제품에서 원하는 입자크기, 덩어리 모양을 깨뜨리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현탁액에서 초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구의 선택은 화장품 제조 시 요구사항과 시작 제품의 흐름 특성에 크게 달려있다. 기구는 비중 여과, 왕복 운동하는 체, 선회 운동하는 체, 판과 틀 압축기, 백 또는 카트리지 필터 그리고 원심분리기들을 포함한다. 원치 않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와 필터의 사용 시 불순물이 아닌 성분을 제거할 지도 모른다. 제품 검체는 기능성의 보존, 안정성 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여과물의 적합성을확인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분석 되어야 한다. 설비는 여과공정 동안 여과된 제품의 검체 채취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① 구성재질(Materials of Construction)

화장품 산업에서 선호되는 반응하지 않는 재질은 스테인리스스틸과 비반응성 섬유이다. 현재, 대부분 원료와 처방에 대해 스테인리스 316L은 제품의 제조를 위해 선호된다. 여과 매체(예. 체, 가방(백(bag)), 카트리지 그리고 필터 보조물)는 효율성, 청소의 용이성, 처분의 용이성 그리고 제품의 적합성에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의해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안전(Safety)

시스템 설계는 여과조건하에서 생기는 최고 압력들을 고려해야 한다.

바. 이송 파이프(TRANSPORT PIPING)

파이프 시스템은 제품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운반한다. 파이프 시스템에서

밸브와 부속품은 흐름을 전환, 조작, 조절과 정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파이프 시 스템의 기본 부분들은 :

- 펌프
- 필터
- 파이프
- 부속품(엘보우, T's, 리듀서)
- 밸브
- 이덕터 또는 배출기

파이프 시스템은 제품 점도, 유속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교차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역류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파이프 시스템에는 플랜지(이음새)를 붙이거나 용접된 유형의 위생처리 파이프시스템이 있다.

① 구성재질(Materials of Construction)

구성 재질은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304 또는 #316,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전기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이프 시스템을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것들은 개스킷, 파이프 도료, 용접봉 등을 사용한다. 이것들은 물질의 적용 가능성을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유형 #304 와 #316 스테인리스 스틸에 추가해서, 유리, 플라스틱, 표면이 코팅된 폴리머가 제품에 접촉하는 표면에 사용된다.

② 청소와(세척과) 위생처리(Cleaning and Sanitization)

청소와 정규 검사를 위해 쉽게 해체될 수 있는 파이프 시스템이 다양한 사용조건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파이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동안 가득 차도록 그리고 가동하지 않을 때는 배출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오염 시킬 수 있는 막힌 관(Dead Legs)이 없도록 한다. 파이프 시스템은 축소와 확장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밸브와 부속품이 일반적인 오염원이기 때문에 최소의 숫자로 설계되어야 한다. 메인 파이프에서 두 번째 라인으로 흘러가도록 밸브를 사용할 때 밸브는 데드렉(Dead Leg)을 방지하기 위해 주 흐름에 가능한 한가깝게 위치해야 한다.

③ 안전(Safety)

파이프 시스템 설계는 생성되는 최고의 압력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 전, 시스템은 정수압 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사. 칭량 장치 (WEIGHING DEVICE)

칭량 장치들은 원료, 제조과정 재료 그리고 완제품을 요구되는 성분표 양과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중량 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추가적으로 칭량장치들은 재고 관리 같은 다른 작업에 사용된다. 선택된 칭량장치의 유형

은 작업의 조건과 요구되는 성과에 달려있다.

주의할 점은 필요한 무게가 계량되기 위해 적절한 칭량 장치가 선택되도록 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칭량 장치의 오차 허용도는 칭량에서 허락된 오차 허용도보다 커서는 안 된다. 칭량장치는 그들의 정확성과 정밀성의 유지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되어야 하고 일상적으로 검정되어야 한다.

기계식, 광선타입, 진자타입, 전자식 그리고 로드 셀(Load Cell)과 같은 몇몇 작동 원리를 갖는 칭량 장치의 유형이 있다. 액세서리들은 칭량 장치 대부분에 대해 이용할 수 있다. 인쇄기 추가는 게시표, 한 장 또는 한 조각 위에 무게, 시간, 날 짜 및 다른 자료를 기록할 것이다. 원형 또는 작은 스트립 기록기들은 지속적으 로 무게 대 시간의 그래프로 기록한다. 계량용의 칭량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① 구성재질(Materials of Construction)

계량적 눈금의 노출된 부분들은 칭량 작업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보호적인 피복제로 칠해질 수 있다. 계량적 눈금 레버 시스템은 동봉물을 깨끗한 공기와 동봉하고 제거함으로써 부식과 먼지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 ③ 위치(Location)

칭량장치들은 제재의 칭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교차 오염의 가능성이 최소화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칭량장치들은 민감한 기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남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부식성의 환경들과 과도한 먼지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면 칭량기 구의 기능저하의 원인이 될 것이다.

아. 게이지와 미터(GAUGES AND METERS)

게이지와 미터는 온도, 압력, 흐름, pH, 점도, 속도, 부피 그리고 다른 화장품의 특성을 측정 및 또는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이다. 이들 기구들은 화장품 제조업자들 사이에 다양하게 보유할 수 있는데 약간은 정교하고 자세한 전자적 설비가 있을 수 있고, 표준 pH 미터와 비수은 온도계 같은 전통적인 장치나 설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본 계측기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로 검교정 한다. 단, 품질에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하여 검교정 대상/비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① 구성재질(Materials of Construction)

제품과 직접 접하는 게이지와 미터의 적절한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제조자들은 기구들과 제품과 원료의 직접 접하지 않도록 분리 장치를 제공한다. ② 청소와 위생처리 (Cleaning and Sanitization)

게이지와 미터가 일반적으로 청소를 위해 해체되지 않을지라도, 설계 시 제품과 접하는 부분의 청소가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설계 고려 대상은 설비의 작 업부분과 제품이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설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과 미생물 생장을 돕는 원인일 수 있는 제품 오염을 방지하는 수단이 포함되어 야 하는 것이다.

③ 위치(Location)

인라인 게이지와 미터는 읽기 쉽고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위 치는 유지 관리와 정규 표준화에 적절해야 한다.

④ 안전(Safety)

전기 구성품들은 설비 지역에 있을 수 있는 폭발위험물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⑤ 예방적 정비(Preventive Maintenance)

공정 설비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안전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적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일정한 예방적 유지관리 간격은 설비 유형과 사용 에 따라 결정된 유지관리의 빈도로 공표되어야 한다.

○ 포장재 설비

가. 제품이 닿는 포장설비(PRODUCT CONTACT PACKAGING EQUIPMENT)

이 섹션은 제품이 직,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설비의 기본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들은 제품 충전기, 뚜껑을 덮는 장치/봉인장치/Plugger, 용기공급장치(Container Feeder), 용기세척기, 및 기타 설비 등이다.

① 제품 충전기(PRODUCT FILLER)

제품 충전기는 제품을 1차 용기에 넣기 위해 사용된다. 제품의 물리적 및 심미적 인 성질이 충전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품에 대한 영향을 설 비 선택 시 고려해야 한다.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1) 재질 구성
 - 조작중의 온도 및 압력이 제품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 제품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 제품에 의해서나 어떠한 청소 또는 위생처리작업에 의해 부식되거나, 분해되거나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된다.
 - 용접, 볼트, 나사, 부속품 등의 설비구성요소 사이에 전기 화학적 반응을 피하도 록 구축되어야 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과 접촉되는 표면물질은 300시리즈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Type #304와 더 부식에 강한 Type #316 스테인리스스틸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2) 충전기 표면마무리(Filler Surface Finish)

규격화되고 매끈한 표면이 바람직하다. 주형 물질(Cast material) 또는 거친 표면은 제품이 뭉치게 되어(미생물 막에 좋은 환경임) 깨끗하게 청소하기가 어려워 미생물 또는 교차오염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주형 물질(Cast material)은 화장품에 추천되지 않는다. 용접, 결합은 가능한 한 매끄럽고 평면이어야 한다. 외부표면의 코팅은 제품에 대해 저항력(Product - resistant)이 있어야 한다.

(3) 청소 및 위생처리(Filler Cleaning and Sanitization)

제품 충전기는 청소, 위생 처리 및 정기적인 감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충전기가 멀티서비스 조작에 사용되거나, 미생물오염 우려가 있는 제품인 경우 특히 중요하다. 충전기는 조작 중에 제품이 뭉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비에서 물질이 완전히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제품이 고여서 설비의 오염이 생기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고온세척 또는 화학적 위생처리 조작을 할 때 구성 물질과 다른 설계 조건에 있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청소를 위한 충전기의 해체가 용이할 것이 권장된다. 청소와 위생처리과정의효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4) 충전기정확도(Filler Accuracy)

제품충전기는 특별한 용기와 충전 제품에 대해 요구되는 정확성과 조절이 용이하 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이 장치는 정해진 속도에서 지정된 허용오차 내에서 원 하는 수의 제품의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 (5) 충전기의 안전성(Filler Safety)
 - 설비 시스템들과 주변 지역은 산업 안전 등에 관한 법규 및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뚜껑덮는장치/봉인장치/플러거/펌프 주입기(CAPPER/ SEALER/ PLUGGER/ PUMP INSERTER)

뚜껑덮는장치/봉인장치/플러거/펌프 주입기의 목적은 제품용기를 플라스틱튜브로 봉인하는 직접적인 봉인 또는 뚜껑, 밸브, 플러그, 펌프와 같은 봉인장치로 봉하 는 것이다. 장치는 조정이 용이하여야 하며 처방된 한도 내에서 봉인할 수 있도 록 설계 되어야 한다. 각각의 변경이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한다. 뚜껑 덮는 장치/ 봉인장치/플러거/펌프 주입기는 물리적인 오염, 먼지와 제품이 쌓이는 것을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 중일 때 뚜껑, 봉인, 마개 또는 펌프를 포함하는 호퍼(Hoppers)는 반드시 덮여야 하며 공급 메커니즘(Feed mechanism)은 변경 시 쉽게 비울 수 있고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용기공급장치(Container Feeder)

용기공급장치는 제품용기를 고정하거나 관리하고 그 다음 조작을 위해서 배치한다. 장치는 용기의 부당한 손상(닳음, 유리 깨짐, 압력을 가함, 펑크, 기타 등)없이용기를 다루어야 하며 청소가 용이 하여야 하고 변경이 용이하여야 하며 조작과

변경 중에 육안 검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수동 조작 시에 제품에 접촉되는 표면의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용기공급장치는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열린 용기를 덮어서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용기세척기

용기세척기는 충전될 용기 내부로부터 유리된 물질을 제거한다. 수집 장치는 쉽고 빈번하게 비울 수 있어야 한다. 용기 세척기의 효율성은 적절한 작동을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세척을 위해 사용되는 공기의 품질을 알아야만 하며 기름, 물, 미생물 함량, 및 다른 오염물질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쓴 공기는 다른 부위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⑤ 기타장치

컨베이어벨트, 버킷 컨베이어, 축적 장치 등과 같은 다른 포장장치는 세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구조적 부위(다리, 버팀대, 지지대 등)는 물리적 오염, 먼지, 제품이 쌓이는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제품이 닿지 않는 포장설비(NON-PRODUCT CONTACT PACKAGING EQUIPMENT)

① 코드화기기(CODER)

코드화기기의 목적은 라벨, 용기 또는 출하상자에 읽을 수 있는 영구적인 코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잉크로 인쇄, 엠보싱(embossing), 디보싱(debossing) 등으로 한다. 특히 제품유출가능성이 있는 부위에서는 코드화 기기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지고 마감 되어야 한다. 코드화 기기가 라벨을 다루어야 하는 곳에는 변경 시에 라벨 장치에서 라벨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은 라벨을 쉽게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코딩과 프린팅 헤드는 변경이 용이하고 청소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규정된 속도에서 코드 정확도, 신뢰도 등이 정기적으로 확인 되어야 한다.

② 라벨기기(LABELER)

라벨기기는 용기 또는 다른 종류의 포장에 라벨 또는 포장의 손상 없이 라벨을 붙이는데 이용된다. 접착제나 유출된 제품에 노출되는 라벨기기의 구역은 용기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벨호퍼 등은 변경 시 다른 코드 또는 다른 제품의 라벨의 혼입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검사가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케이스 조립 그리고 케이스 포장기/봉인(CASE ERECTOR AND CASE PACKER/SEALER) 이 설비의 목적은 완제품을 보호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하기 위해 정해진 외부 포장을 만들고 봉인하기 위해서이다. 제품 용기가 윤활제나 설비에 쌓여있는 외부 접착제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접착제의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제11조(입고관리)

- ① 화장품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여 입고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원자재의 입고 시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운송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③ 원자재 용기에 제조번호를 표시하고,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원자재 입고절차 중 육안확인 시 물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입고를 보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입고된 원자재는 "적합", "부적합", "검사 중" 등으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수준의 보증이 가능한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다.
- ⑥ 원자재 용기 및 시험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 2. 원자재 공급자명
 - 3. 수령일자
 - 4.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해 설

화장품의 제조와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 및 포장재의 부적절하고 위험한 사용,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의 검증, 확인, 보관, 취급, 및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가 수립되어 외부로부터 공급된 원료 및 포장재는 규정된 완제품 품질 합격판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원료와 포장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요도 분류
- 공급자 결정
- 발주, 입고, 식별·표시, 합격·불합격, 판정, 보관, 불출
- 보관 환경 설정
- 사용기한 설정
- 정기적 재고관리
- 재평가
- 재보관

모든 원료와 포장재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자료를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보증의 검증은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원료와 포장재는 사용전에 관리되어야 한다.

원료 및 포장재의 구매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목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평가를 근거로 한 공급자의 체계적 선정과 승인
- 합격판정기준, 결함이나 일탈 발생 시의 조치 그리고 운송 조건에 대한 문서화 된 기술 조항의 수립
- 협력이나 감사와 같은 회사와 공급자간의 관계 및 상호 작용의 정립

【공급자 선정 시의 주의사항】

-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 원료·포장재 일반정보, 안전성 정보, 안정성·사용기한 정보, 시험기록
- "품질계약서"를 교환할 수 있는가?
 - 구입이 결정되면 품질계약서 교환이 필요해진다.
 - "변경사항"을 알려주는가?
 - 필요하면 방문감사와 서류감사를 수용할 수 있는가?
 - ※ "공급자"는 제조원을 의미하며. 판매회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공급자 승인】

- 공급자가 "요구 품질의 제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할 것
- 일반적으로는 품질부(or 구매부서)가 승인 한다 .

- "조사"+"감사" 결과로 승인한다.
- 조사 시 고려할 점
 - 과거의 실적 : 일탈의 유무, 서비스의 좋고 나쁨 등
 - 세간의 소문. 신뢰도
 - 제품이나 회사의 특이성
- 실시할 감사(Audit)
 - 방문감사
 - 서류감사(질문서로 실시)

입고된 원료와 포장재는 검사중, 적합, 부적합에 따라 각각의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보관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적합 된 원료와 포장재를 보관하는 공간은 잠금장치를 추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창고와 같이 확실하게 구분하여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리 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라벨링 예시】

[원료입고라벨]

[원료적합라벨]





[시험중 라벨]

[시험중 라벨 위에 적합스티커]





[부자재 입고적합라벨]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라벨링 예시】

[원료 라벨] [해당 원료라벨의 바코드 조회 시 적합여부, 재고량, 보관위치 등을 확인하는 PDA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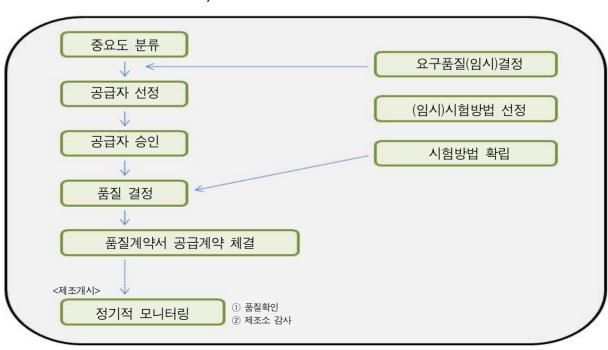
※원료입고라벨에는 적합여부 상태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원료와 포장재는 관리를 위해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포장외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한 번에 입고된 원료와 포장재는 제조단 위 별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단 적합판정이 내려지면, 원료와 포장재는 제조 장소로 이송된다. 품질이 부적합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취와 이송 중의 관리 등의 사전 관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손상, 보관온도, 습도, 다른 제품과의 접근성과 공급업체 건물에서 주문준비 시 혼동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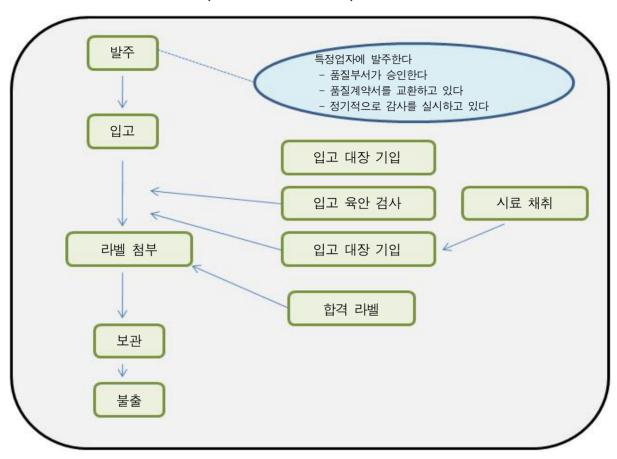
확인, 검체채취, 규정 기준에 대한 검사 및 시험 및 그에 따른 승인된 자에 의한 불출 전까지는 어떠한 물질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원료 수령 에 대한 절차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구매요구서, 인도문서(납품서, 공급업체 성적서 등 포함), 인도물(현물)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원료 및 포장재 선적 용기에 대하여 확실한 표기 오류, 용기 손상, 봉인 파손, 오염 등에 대해 육안으로 검사한다. 필요하다면, 운송 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재 선적 용기에 대하여 확실한 표기 오류, 용기 손상, 봉인 파손, 오염 등에 대해 육안으로 검사한다. 필요하다면, 운송 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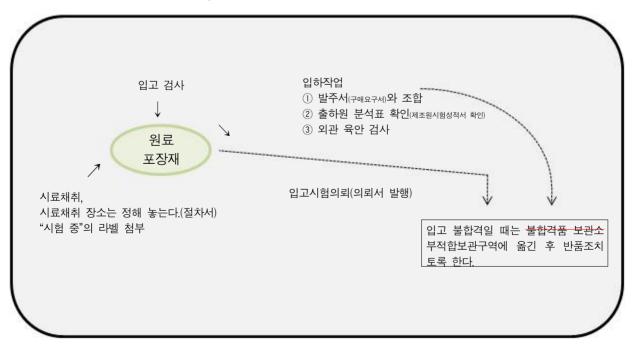


<원료, 포장재의 선정 절차 예시>

<원료, 포장재의 발주, 불출 절차>



<원료, 포장재의 입고 시 주의사항>



제품을 정확히 식별하고 혼동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라벨링을 해야 한다.

원료 및 포장재의 용기는 물질과 뱃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해야한다.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을 보이는 원료와 포장재는 결정이완료될 때까지 보류상태로 있어야 한다. 원료 및 포장재의 상태(즉, 합격, 불합격, 검사 중)는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확인시스템(물리적 시스템 또는 전자시스템)은 혼동, 오류 또는 혼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료 및 포장재의 확인은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인도문서와 포장에 표시된 품목·제품명
- 만약 공급자가 명명한 제품명과 다르다면, 제조 절차에 따른 품목·제품명 그리고/또는 해당 코드번호
- CAS번호(적용 가능한 경우)
- 적절한 경우. 수령 일자와 수령확인번호
- 공급자명
- 공급자가 부여한 뱃치 정보(batch reference), 만약 다르다면 수령 시 주어진 뱃치 정보
- 기록된 양

【원료, 포장재의 검체채취】

- 어디서, 누가, 방법, 표시
 - "시험자가 실시한다"가 원칙
 -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
 - 검체채취 절차를 정해 놓는다.
 - ① 검체채취 방법
 - ② 사용하는 설비
 - ③ 검체채취 양
 - ④ 필요한 검체 작게 나누기
 - ⑤ 검체용기
 - ⑥ 검체용기 표시
 - ⑦ 보관조건
 - ⑧ 검체채취 용기, 설비의 세척과 보관
 - 검체채취 한 용기에는 "시험 중"라벨을 부착한다.

○ 환경

-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 ※ 원료 등에 대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 검체채취 수
 - 뱃치를 대표하는 부분에서 검체 채취를 한다.
 - 원료의 중요도, 공급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체채취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검체채취 양

제12조(출고관리)

원자재는 시험결과 적합판정된 것만을 선입선출방식으로 출고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해 설

불출된 원료와 포장재만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물리적 시스템 또는 그의 대체시스템 즉 전자시스템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오직 승인된 자만이 원료 및 포장재의 불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뱃치에서 취한 검체가 모든 합격 기준에 부합할 때 뱃치가 불출될 수 있다. 원료와 포장재는 불출되기 전까지 사용을 금지하는 격리를 위해 특별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보관소에서는 선입선출의 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

특별한 환경을 제외하고, 재고품 순환은 오래된 것이 먼저 사용되도록 보증해야한다.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 방법으로 출고 한다. 다만, 나중에 입고된물품이 사용(유효)기한이 짧은 경우 먼저 입고된물품보다 먼저 출고할 수 있다. 선입선출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나중에 입고된물품을 먼저 출고할 수 있다.

원료의 사용기한(use by date)을 사례별로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시스템이 이행되어야 한다.

제13조(보관관리)

- ①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에 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가능한 선입선출에 의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설정된 보관기간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통해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해 설

보관 조건은 각각의 원료와 포장재의 세부 요건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예: 냉장, 냉동보관)

원료와 포장재가 재포장될 때, 새로운 용기에는 원래와 동일한 라벨링이 있어야한다. 원료의 경우, 원래 용기와 같은 물질 혹은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물질로 만들어진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보관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보관 조건은 각각의 원료와 포장재에 적합하여야 하고, 과도한 열기, 추위, 햇빛 또는 습기에 노출되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물질의 특징 및 특성에 맞도록 보관, 취급되어야 한다.
- 특수한 보관 조건은 적절하게 준수,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 원료와 포장재의 용기는 밀폐되어, 청소와 검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바닥과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 원료와 포장재가 재포장될 경우,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원료 및 포장재의 관리는 허가되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물질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물리적 격리(quarantine)나 수동 컴퓨터 위치 제어 등의 방법)

재고의 회전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재고가 제일 먼저 불출되도록 선입선출 한다.

- 재고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모든 중대한 모순을 조사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고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 원료 및 포장재는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 장기 재고품의 처분 및 선입선출 규칙의 확인이 목적
- 중대한 위반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일탈처리를 한다.

【원료, 포장재의 보관 환경】

- 출입제한
 - 원료 및 포장재 보관소의 출입제한
- 오염방지
 - 시설대응, 동선관리가 필요
- 방충방서 대책
- 온도. 습도
 - 필요시 설정한다.

원료의 허용 가능한 보관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보관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원료는 품질부문에서 적절한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원료의 정해진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원료를 재평 가하여 사용 적합성을 결정하는 단계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료공급처의 사용기한을 준수하여 보관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기한내에서 자체적인 재시험 기간과 최대 보관기간을 설정·준수해야 한다. 원료의 사용기한은 사용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라벨에 표시되어야 한다.

원료와 포장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 완제품, 부적합품 및 반품 등에 도난, 분실,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 외에 보관소의 출입을 제한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Guidance for Industry

-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U.S. FDA]

O Raw Materials

You should determine whether raw materials are identified, stored, examined, tested, inventoried, handled, and controlled to ensure they conform to appropriat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In particular, raw materials should be:

- Stored and handled to prevent mistakes (i.e., mix-ups or selection errors), contamination with microorganisms or other chemicals, and degradation from exposure to excessive environmental conditions (e.g., heat, cold, sunlight, moisture, etc.)
- Held in closed containers and stored off the floor
- Maintained in containers that are labeled with the identity, lot number, and control status (release or quarantine)
- Sampled and tested for conformance with specifications and to ensure the absence of filth, microorganisms, and other adulterants prior to processing or usage (Animal and vegetable origin materials and those produced by cold processing methods should be reviewed for filth and/or microorganism contamination.); and
- Properly identified and controlled to prevent the use of materials that fail to meet acceptance specifications

제14조(물의 품질)

- ① 물의 품질 적합기준은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
- ② 물의 품질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고 필요시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물 공급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물의 정체와 오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 2.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을 것
 - 3. 살균처리가 가능할 것

해 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탈이온화(deionization), 증류 또는 역삼투압 처리 유무에 상관없이)에 대한 절차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장해야 한다.

- 오염의 위험과 물의 정체(stagnation)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고 적절한 주기와 방법에 따라 청결 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물을 공급해야 한다.
-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규격서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한 적절한 모니 터링과 시험이 필요하다.
- 규정된 품질의 물을 공급해야 하고, 물 처리 설비에 사용된 물질들은 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는 제품에 사용하는 물 뿐만 아니라 설비 세척수, 시설 등을 청소하는 물, 손 씻는 물, 직원이 마시는 물 등 많은 종류의 물을 사용한다. 화장 품 제조회사에서는 이들 용도에 맞는 품질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

정제수를 사용할 때에는 그 품질기준을 정해 놓고 사용할 때마다 품질을 측정해서 사용한다. 수돗물과 달리 정제수 중에는 염소이온 등의 살균성분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다. 그러므로 한 번 사용한 정제수 용기의 물을 재 사용하거나 장기간 보존한 정제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제수는 사용할 때는 통상 자사에서 제조한다. 일반적으로는 정제수는 상수를 이온교환수지 통을 통과시키거나 증류하거나 역삼투(R/O) 처리를 해서 제조한다.

【용수의 품질관리】

- 1. 화장품 제조 용수의 고려할 점
- 사용하는 물의 품질을 목적별로 정해 놓는다.
- 예시
 - ① 제조설비 세척 : 정제수, 상수
 - ② 손 씻기 : 상수
 - ③ 제품 용수: 화장품 제조 시 적합한 정제수
- 사용수의 품질을 주기별로 시험항목을 설정해서 시험한다.
- 제조 용수 배관에는 정체방지와 오염방지 대책을 해 놓는다.
- 2. 용수의 품질 관리
- 용수시스템 유지 관리
 - 가. 소독(Sanitization)

제조용수의 미생물 관리는 기본적으로 소독에 의존하게 된다. 자외선 조사, 열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독할 수 있다.

나. 용수시스템 유지 관리

제조용수시스템이 일정한 관리 범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1) 작동절차

제조용수시스템의 작동 절차, 일상 점검 및 시정 조치절차 등을 문서로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한다. 이런 문서는 정식 문서로 잘 관리해야 하며 각 직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책임자를 지명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까지를 기술해 줘야 한다.

(2) 모니터링 절차

중요 품질 관련 기준과 운전 설정치를 문서로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모니터링 방법에는 전도도 측정기록계 같이 시스템 자체에 장착한 감지기나 기록계를 이용하는 방법, carbon filter의 차압이 떨어지는 것을 기록하 는 것처럼 작동에 관련된 수치를 일일이 손으로 쓰는 방법, 일반 세균 시험처럼 시험실에서 시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절차에는 검체 채취 빈도, 시험 결과 해석 요건 및 어떤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소독

각 단위 기계에 어떤 것을 써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주기를 정해 놓고 일상적으로 소독함으로써 끊임없이 미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소독에 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4) 설비유지관리

제조용수시스템 각 단위설비(예; 활성탄, 마이크로 필터, 이온교환 수지, RO membrane, UV lamp등)마다 점검주기, 교체주기를 설정하고 일상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 한다.

(5) 예방 점검

효율적인 예방 점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어떤 예방 점검을, 어떤 빈도로 해야 하며. 어떻게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느냐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6) 변경 관리

기계적 구조를 바꾸거나 작업 조건을 바꿀 때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변경 처리 절차는 어떤 공정을 바꿀 때는 그것이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평가 하고, 시스템을 재평가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며, 시스템 변경을 확정하면 그에 따라 도면, 작동 지침 및 절차 등 연관된 사항을 개정한다.

○ 용수시스템 품질 관리

가. 정제수의 품질 관리

(1) 관리 목적

정제수의 시험항목 및 규격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로서, 위생적인 측면과 다른 원료들의 용해도, 경시변화에 따른 침전, 탈색/변색에 대한 영향, 피부에대한 작용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정도의 순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Salt(염)이 함유된 정제수를 사용하면 제품의 향, 안정성, 투명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검체의 채취

검체 채취 전 밸브를 열고 정해진 배수시간 또는 배수량의 물을 배수하고 샘플링 병을 헹군 후 채취한다.

정제수 사용처에서 채취하는 경우, 제조 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과 같이 호스 등을 연결하여 채취한다.

반대로 제조 중 정제수 사용 시 검체 채취 방법과 동일하게 정제수를 사용한다.(사용 전 배수량 또는 배수시간, 호스 사용 등)

정제수의 품질관리용 검체채취 시에는 항상 정해진 채취 부위에서 정해진 시간에 채취하여야 한다. 이때 채취구는 아래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 항상 배수가 쉽도록 하고, 오염방지를 위해 밀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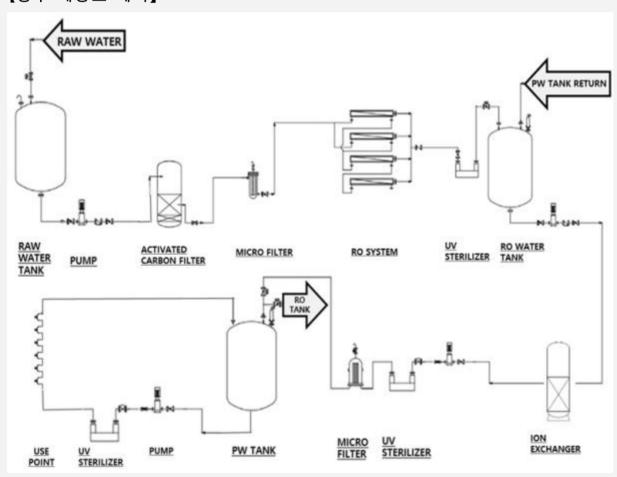
(3) 품질검사

정제수에 대한 품질검사는 원칙적으로 매일 제조 작업 실시 전에 실시하는 것이좋다. 단, 시험 항목은 공정서, 화장품 원료규격 가이드라인의 정제수 항목 등을 참고로 하여, 각 사의 정제수 제조설비 운영 및 결과를 근거로 검사주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항목별 시험주기 예시】

| 매일 제조 전 | 성상(외관, 향취), pH, 총유기체탄소, 전도도 등 |
|---------|-------------------------------------|
| 주간 | 순도시험(염화물, 황산염, 질산성질소 등), 위치별 미생물 검사 |

【용수 계통도 예시】



참고자료

Guidance for Industry

-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U.S. FDA]

O Water

You should determine whether:

- The water used as a cosmetic ingredient is used as-is (i.e., directly from the tap) or if it has been treated before being used (i.e., has it been treated by such means as deionization, distillation, or reverse osmosis)
- There are established procedures for ensuring that the water used as a cosmetic ingredient
- Is of a defined quality
- Is not affected by materials used in the water treatment equipment
- Is being tested or monitored regularly to verify that it meets applicable chemical, physical, and microbiological specifications for quality; and
- The entire system for supplying water used as a cosmetic ingredient is set up to avoid stagnation and risks of contamination (This system should be routinely cleaned and sanitized according to an appropriate SOP that ensures no biofilm build-up.)

제15조(기준서 등)

- ① 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합성을 보장하는 기본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따른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 기준서 및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품표준서는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품명
 - 2. 작성연월일
 - 3. 효능·효과(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4. 원료명. 분량 및 제조단위당 기준량
 - 5. 공정별 상세 작업내용 및 제조공정흐름도
 - 6. <삭 제>
 - 7. 작업 중 주의사항
 - 8. 원자재·반제품·벌크 제품·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 9.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 10. 보관조건
 - 11.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12. 변경이력
 - 13. <삭 제>
 -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제조관리기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작업소의 출입제한
 - 나. 공정검사의 방법
 - 다. 사용하려는 원자재의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라. 재작업절차
 - 2. 시설 및 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시설 및 주요설비의 정기적인 점검방법

- 나. <삭 제>
- 다. 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 방법
- 3. 원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입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및 포장의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과 훼손되었을 경우 그 처리방법
 - 나.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 다.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
 - 라. 취급 시의 혼동 및 오염 방지대책
 - 마. 출고 시 선입선출 및 칭량된 용기의 표시사항
- 바. 재고관리
- 4.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입・출하 시 승인판정의 확인방법
 - 나.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 다. 출하 시의 선입선출방법
- 5. 위탁제조에 관한 사항
 - 가. 원자재의 공급, 반제품, 벌크 제품 또는 완제품의 운송 및 보관 방법
 - 나. 수탁자 제조기록의 평가방법
- ④ 품질관리기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삭 제>
 - 2. 시험검체 채취방법 및 채취 시의 주의사항과 채취 시의 오염방지대책
 - 3.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의 점검(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 방법)
 - 4. 안정성시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5. 완제품 등 보관용 검체의 관리
 - 6. 표준품 및 시약의 관리
 - 7. 위탁시험 또는 위탁 제조하는 경우 검체의 송부방법 및 시험결과의 판정 방법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 제조위생관리기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작업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의 파악·조치방법
 - 2. 작업원의 수세, 소독방법 등 위생에 관한 사항
 - 3. 작업복장의 규격, 세탁방법 및 착용규정
 - 4. 작업실 등의 청소(필요한 경우 소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법 및 청소주기
 - 5. 청소상태의 평가방법
 - 6.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
 - 7.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는 방법 및 점검주기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 설

제조 공정 단계를 통하여, 추적성(traceability)을 제공함으로써, 완제품이 목표하는 품질 수준을 만족하고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서, 작업 지시서 및 규격서와 함께 생산관리 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

GMP문서의 일반적 구조



GMP의 문서작성 시 화장품에 관계된 법률과 기준, 적용 가능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며 형식과 내용의 통일성이 있어야 함.

국내 화장품GMP의 관리대상 문서는 4대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각 기준서에 하위 문서 규정과 절차서, 기록서 및 첨부문서 등으로 구성 되는 것이 일반적임.



각 기준서는 일괄하여 작성할 수도 있고, 각 업무에 따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으로 분할해도 좋다. 여러 가지 규정으로 세분하여 작성할 경우 찾기가 편리하도록 해당 기준서에 그 문서의 번호를 목록으로 정리한다.

문서 또는 이들 4대 기준서 작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 GMP 위원회 규정 등 GMP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4대 기준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작성한다.

기준서 작성 및 관리: 기준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1) 문서 양식을 정하고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페이지 번호를 매긴다.
- 2) 작업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3) 제조소 내 규정된 절차, 공정에 대하여 작성한다.
- 4) 문서마다 제정 또는 개정한 이력 등을 관리가 쉽게 따로 정리한다.
- 5) 기준서 개정 시 개정 전 기준서 사본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회수·폐기하고 원본은 문서관리 담당부서에서 "무효본"임을 표시하여 보관한다.

제품표준서는 제조품목마다 최초 생산 이전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품표준서는 그 품목의 제조에 필요한 내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작업상 착오가 없도록 하고 항상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작성하며 제품의 이력사항을 유지·관리한다. 또 작업이 완료되면 그 작업이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표준서가 필요하다. 제품표준서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항목 이외에도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또는 심사제외품목보고서) 사본과 참고 자료(기술제휴사의 자료 및 관련 근거 자료 등)를 첨부해두는 것이 좋다.

화장품 제조공정은 제조번호 지정부터 시작하여, 제조지시서 발행, 원료불출, 제조설비 및 기구의 청소상태 확인, 제조 작업 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사용한원료를 재보관 하는 등 많은 작업공정이 조합되어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화장품의 제조공정은 아래와 같다. 이들 작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사 제품에 적합한 제조공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제조번호 지정
- 제조지시서 발행
- 제조기록서 발행
- 원료 불출
- 공정표
- 작업시작 전 점검
- 공정관리 작업
- 제조기록서 완결
- 벌크제품
- 원료 재보관

제조지시서는 제조공정 중의 혼돈이나 착오를 방지하고 작업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단위(뱃치)별로 작성, 발행되어야 한다. 제조기록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제조지시서와 제조기록서를 통합하여 제조지시 및 기록서로운영하여도 무방하다. 제조지시서는 제조 시 작업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않도록 작업 내용을 상세하게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 관리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는 각각의 제조 작업 단계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제조 작업은 문서화된 공정 순서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다음은 제조 작업을 위한 문서관리의 예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각 뱃치가 규정된 방식으로 제조되어 뱃치와 뱃치사이의 균일성이 보장받게 된다.

제조지시서 발행 - 제조번호 지정 - 필수사항 기입 (기록 전) 제조기록서 발행 지시서에 따라 기록서 준비 제조를 기록한다 필요하면 일탈보고서 등 작성 (기록 후) 제조기록서 완결 제조책임자가 내용 조사 시험기록서 등 첨부 뱃치기록서 완결 사험기록서 등 첨부 모서보관

<뱃치 제조 문서의 흐름 예시>

화장품 제조는 제조지시서의 발행으로 시작하고 뱃치기록서의 보관으로 끝난다. 제조에 관한 문서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사의 특징을 더해서 독자적인 제조문서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장한다.

제조지시서에 따라 제조를 개시한다. 제조지시서는 제조 작업을 끝낼 때까지는 "가장 책임 있는 문서"이며, 제조지시서의 내용에 어긋나는 제조를 해서는 안 된다. 제조지시서에 제조 작업자가 제조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다. 책임 있는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내용의 지시서를 발행해야 한다. 기입이 끝나면 발행 제조부서책임자가 서명을 한다.

제조지시서는 제조기록서와 함께 뱃치기록서 내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조지시서에 따라 제조기록서를 발행한다. 제조에 관한 기록은 모두 제조기록서에 기재한다. 제조 개시 전에 제조설비 및 기구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제조설비 및 기구의 청소완료라벨을 기록서에 부착하거나 청소상태를 확인하는 기록란이 기록서에 있어야 한다. 설비 세척상태의 기록란을 마련해 둔다.

모든 제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시작 시 확인사항('start-up')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이다. 관련 문서가 제조 작업에 이용가능하고, 모든 원료가 사

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점검은 필수적이다. 또한 이를 통해, 설비가 적절히 위생 처리되고 생산할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제조 작업에 불필요한 포장재 및 표시 라벨 등의 혼합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 구역 및 제조라인 정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한다.

제조된 벌크의 각 뱃치들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벌크에 부여된 특정 제조번호는 완제품에 대응하는 제조번호와 반드시 동일할 필 요는 없다. 하지만 어떤 벌크 뱃치와 양이 완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여야 한다.

제조관리기준서는 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도 기계 및 생산지원 또는 부속시설 의 관리와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제조 전 반에 관한 관리 기준서이다.

품질관리기준서는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체채취 방법, 시험방법, 시험결과의 평가 및 전달, 시험자료의 기록 및 보존 등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하여 문서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명시된 각 항목은 최소한 필요한 사항이며 각 제조소에 따라 추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각 항목은 품질부서의 담당자가쉽게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조위생관리기준서는 제조소마다 제조환경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조하는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소, 제조시설 및 작업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할 때는 제형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청정도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작업원에 의해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원의 위생관리 기준과 교육에 관한 사항도 정한다.

제16조(칭량)

- ① 원료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기나 설비에 정확하게 칭량되어야 한다.
- ② 원료가 칭량되는 도중 교차오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해 설

처방에 표시된 대로, 각 원료는 적절한 용기(즉,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드럼이나 플라스틱 용기)로 측정 및 칭량되거나 또는 직접 제조 설비(즉, 탱크 또는 호퍼) 로 옮겨져야 한다. 용기가 적절하게 위생처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청량, 계량할 때는 먼저 작업 주위와 청량기구가 청결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 한다. 청량 중에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 다음 청량한 원료를 넣는 용기가 청결한 것을 확인한다. 용기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청결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 한다. 청량하기 전 사용되는 저울의 검교정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일일점검을 실시한 후에 청량 작업을 수행한다.

칭량은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중요한 작업이다. 2명으로 작업하는 것이 권장된다. 단, 자동기록계가 붙어 있는 저울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작업자가 기재한 칭량 결과를 백업하는 자동기록치가 존재하므로 칭량을 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다.

또한 원료나 벌크제품을 담는데 사용하는 모든 설비나 용기도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적절한 표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품명 또는 확인 코드
- 칭량 양 또는 벌크 제조량
- 특별히 부여된 제조번호
- 특별한 정보(특수한 보관 조건, 보관기한(shelf life), 불출 날짜 등)

- ※ 교차오염을 피하기 위한 방법
 - 원료칭량은 혼합 칭량이 아닌 개별로 칭량을 실시한다.
 - 칭량 시 사용 도구는 각 원료별 사용한다.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예시】

- 원료 칭량 시 단일 방향 기류(라미나플로우)를 형성하는 칭량부스(weighing booth)를 사용할 수 있다.
- 파우더 원료 등의 경우, 칭량 시 분진 등으로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칭량 시 후드를 가동하거나 하여 교차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후드>



<칭량부스>

제17조(공정관리)

- ① 제조공정 단계별로 적절한 관리기준이 규정되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결과는 보고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벌크제품은 품질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용기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며 용기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1. 명칭 또는 확인코드
 - 2. 제조번호
 - 3. 완료된 공정명
 - 4.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조건
- ③ 벌크제품의 최대 보관기간은 설정하여야 하며, 최대 보관기간이 가까워진 벌크제품은 완제품 제조하기 전에 재평가해야 한다.

해 설

제조 중인 모든 벌크가 규정 요건을 만족함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제품 속성들이 규격서에 명시된 요건들을 충족함을 검증하기 위해 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규정 범위를 벗어난 모든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여 적절한 시기 안에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는 기록되어야 한다.

공정관리 및 각종 작업은 모두 절차서에 따라 실시한다. 즉, 제조에 관련된 모든 작업에 절차서를 작성한다. 절차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성, 검토, 승인, 갱신, 배포 및 교육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즉 "작업"을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화장품 제조에 있어서도 항상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개선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선 내용이 화장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서를 개정하고 개선을 실행한다. 변경관리 내용은 변경관리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기록되어야 한다.

【공정관리 및 작업시 주의사항】

- 작업에 절차서를 작성하고 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한다.
- 통상 발생하지 않는 작업과 처리에도 절차서를 작성한다.
- 실행하지 않는 작업에는 "실행하지 않는" 것을 기재한 절차서가 필요
 - 예시 : 재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절차서에 "재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명기
- "작업"은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다.
- 개선
 - 개선안을 제안한다.
 - 개선안이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확인, 때로는 실험도 한다.
 - 절차서를 개정한다.
 - 개선을 실행한다.

공정관리는 관리기준을 설정해서 실시한다. 그 관리기준은 개발 단계에서의 기록 및 제조실적데이터를 토대로 설정한다. 기준치에는 반드시 범위를 만든다. 그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일탈처리를 한다. 즉 범위를 벗어난(평상시와다른 일이 일어난) 일이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조사한다. 만약품질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제품 페기도 포함하여 신중하게 검토한다. 일탈에대한 처리가 종료되면 '일탈관리 보고서' 등의 형태로 처리내용과 재발방지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공정 내 관리】

- 관리기준 설정
 - 관리기준을 설정한다.
 - 개발 및 제조 실적 데이터로 결정한다.
 - 범위를 만든다.
 -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일탈처리를 한다.
- 공정 내 시험의 관리
 -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공정을 관리한다.
 - 시험의 판정기준을 설정한다.
 - 개발이나 제조 실적 데이터로 결정한다.
 - 범위를 만든다.
 - 검체채취 시의 오염방지를 한다.(검체채취 환경, 검체채취 기구 등)
- 공정 검체채취 및 시험은 품질부서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

○ 검체채취 방법을 품질부서가 승인하고 제조부원이 검체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자격이 인증되어야 한다.

제조된 벌크 제품은 보관되고 관리 절차에 따라 재보관(re-stock)되어야 한다. 모든 벌크를 보관 시에는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용기는 내용물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모든 벌크의 허용 가능한 보관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보관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운 벌크부터 사용하도록 문서화된절차가 있어야 한다. 벌크는 선입선출 되어야 한다. 충전 공정 후 벌크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차후 다시 사용할 것이라면, 적절한 용기에 밀봉하여식별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남은 벌크를 재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다. 밀폐할 수 있는 용기에 들어 있는 벌 크는 절차서에 따라 재보관 할 수 있으며, 재보관 시에는 내용을 명기하고 재보관 임을 표시한 라벨 부착이 필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재보관은 권장할 수 없다. 개봉마다 변질 및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번 재보관과 재사용을 반복하는 것은 피한다. 뱃치마다의 사용이 소량이며 여러 번 사용하는 벌크는 사용 전에 미리 소량씩 나누어서 보관하고 재보관의 횟수를 줄인다.

【벌크의 재보관】

- 남은 벌크를 재보관하고 재사용 할 수 있다.
- 절차
 - 밀폐한다.
 - 원래 보관 환경에서 보관한다.
 - 다음 제조 시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변질 및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보관은 신중하게 한다.
 - 변질되기 쉬운 벌크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 여러 번 재보관하는 벌크는 조금씩 나누어서 보관한다.

제18조(포장작업)

- ① 포장작업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포장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지시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1. 제품명
 - 2. 포장 설비명
 - 3. 포장재 리스트
 - 4. 상세한 포장공정
 - 5. 포장지시수량
- ③ 포장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작업 관련 문서의 완비여부, 포장설비의 청결 및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해 설

화장품 포장공정은 벌크제품을 용기에 충전하고 포장하는 공정이다. 화장품 포장 공정은 제조번호 지정부터 시작하는 많은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조지시서 발행 → 포장지시서 발행
- 제조기록서 발행 → 포장기록서 발행
- 원료 갖추기 → 벌크제품, 포장재 준비
- 벌크제품 보관 → 완제품 보관
- 제품기록서 완결 → 포장기록서 완결
- 원료 재보관 → 포장재 재보관

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류의 작업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포장의 경우, 원칙은 제조와 동일하다. 완제품이 기존의 정의된 특성에 부합하는 지를 보증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포장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 지시가 이용가능하고 공간이 청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장 라인의 청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이다. 누락 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병, 튜브, 캡이나 인쇄물 등을 빠뜨리기 쉽다. 결과적으로, 청소는 혼란과 오염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규칙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작업 전 청소상태 및 포장재 등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line start-up)를 작성하여 기록관리 한다.

제조번호는 각각의 완제품에 지정되어야 한다.

용량 관리, 기밀도, 인쇄 상태 등 공정 중 관리(In-process control)는 포장하는 동 안에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공정중의 공정검사 기록과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내용도 관리자에 게 보고하고 기록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정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공정을 중지시켜야 하며, 이는 벌크제품과 포장재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포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업장 청소는 혼란과 오염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로 일관되게 실시되어야 한다.

가. 화장품 포장재의 정의

포장재에는 많은 재료가 포함된다. 일차포장재, 이차포장재, 각종 라벨, 봉함 라벨까지 포장재에 포함된다.

나. 용기(병, 캔 등)의 청결성 확보

포장재는 모두 중요하고 실수 방지가 필수이지만, 일차포장재는 청결성 확보 가 더 필요하다.

용기(병, 캔 등)의 청결성 확보에는 자사에서 세척할 경우와 용기공급업자에 의존할 경우가 있다. 자사에서 세척할 경우는 사용 전 육안으로 용기를 재확인하여 적합한 것만을 제조에 사용한다.

용기의 청결성 확보를 용기공급업자(실제로 제조하고 있는 업자)에게 의존할 경우에는 그 용기 공급업자를 감사하고 용기 제조방법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신뢰할 수 있으면 계약을 체결한다. 용기는 매뱃치 입고 시에 무작위 추출하여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남긴다.

청결한 용기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기존의 공급 업자 중에서 찾거나 현재 구입처에 개선을 요청해서 청결한 용기를 입수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는 절차에 따라 구입한다.

다. 포장 문서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문서들은 포장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작업은 문서화된 공정에 따라 수행되어 야 한다. 문서화된 공정은 보통 절차서, 작업지시서 또는 규격서로 존재한다. 이를 통해, 주어진 제품의 각 뱃치가 규정된 방식으로 제조되어 각 포장작업마 다 균일성을 확보하게 된다. 일반적인 포장 작업 문서는 보통 다음 사항을 포 함하다.

- 제품명 그리고/또는 확인 코드
- 검증되고 사용되는 설비
- 완제품 포장에 필요한 모든 포장재 및 벌크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개요나 체크리스트
- 라인 속도, 충전, 표시, 코딩, 상자주입(Cartoning), 케이스 패킹 및 팔레타이 징(palletizing) 등의 작업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기술된 포장 생산 공정
- 벌크제품 및 완제품 규격서, 시험 방법 및 검체 채취 지시서
- 포장 공정에 적용 가능한 모든 특별 주의사항 및 예방조치(즉, 건강 및 안전 정보, 보관 조건)
- 완제품이 제조되는 각 단계 및 포장 라인의 날짜 및 생산단위
- 포장작업 완료 후, 제조부서책임자가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포장작업 시작 전에 작업시작 시 확인사항('start-up')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이다. 포장작업에 대한 모든 관련 서류가 이용가능하고, 모든 필수 포장재가 사용 가능하며, 설비가 적절히 위생처리 되어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데 이러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포장 작업 전, 이전 작업의 재료들이 혼입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 구역/라인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된 완제품의 각 단위/뱃치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특정한 제조번호가 부여되

어야 한다. 완제품에 부여된 특정 제조번호는 벌크제품의 제조번호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완제품에 사용된 벌크 뱃치 및 양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

작업 동안, 모든 포장라인은 최소한 다음의 정보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포장라인명 또는 확인 코드
- 완제품명 또는 확인 코드
- 완제품의 뱃치 또는 제조번호

모든 완제품이 규정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속성들이 규격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즉, 미생물 기준, 충전중량, 미관적 충전 수준, 뚜껑/마개의 토크, 호퍼(hopper) 온도 등). 규정요건은 제품 포장에 대한 허용 범위 및 한계치(최소값-최대값)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보관 및 출고)

- ①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하의 정해진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고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② 완제품은 시험결과 적합으로 판정되고 품질부서 책임자가 출고 승인한 것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 ③ 출고는 선입선출방식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출고할 제품은 원자재,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과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 설

모든 완제품은 포장 및 유통을 위해 불출되기 전, 해당 제품이 규격서를 준수하고, 지정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승인된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서가 수립되어야한다. 또한 절차서는 보관, 출하, 회수 시, 완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완제품 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보관
- 검체채취
- 보관용 검체
- 제품 시험
- 합격·출하 판정
- 출하
- 재고 관리
- 반품

제품 관리를 충분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관한 기초적인 검토 결과를 기재한 CGMP 문서, 작업에 관계되는 절차서, 각종 기록서, 관리 문서가 필요하다.

시장 출하 전에, 모든 완제품은 설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고, 합격 판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뱃치에서 취한 검체가 합격 기준에 부합했을 때만 완제품의 뱃치를 불출할 수 있다.

완제품의 적절한 보관, 취급 및 유통을 보장하는 절차서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적절한 보관 조건(예: 적당한 조명, 온도, 습도, 정렬된 통로 및 보관 구역 등)
- 불출된 완제품, 검사 중인 완제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완제품은 각각의 상태에 따라 지정된 물리적 장소에 보관하거나 미리 정해진 자동 적재 위치에 저장되어야 한다. 수동 또는 전산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한다.
 - 재질 및 제품의 관리와 보관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 재질 및 제품의 수령과 철회는 적절히 허가되어야 한다.
 - 유통되는 제품은 추적이 용이해야 한다.
 -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고 회전은 선입선출 방식으로 사용 및 유통되어야 한다.
- 파레트에 적재된 모든 재료(또는 기타 용기 형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야 한다.
 - 명칭 또는 확인 코드
 - 제조번호
 -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보관 조건
 - 불출 상태

완제품 재고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규정된 합격판정기준이 만족됨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 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제품의 검체채취란 제품 시험용 및 보관용 검체를 채취하는 일이며, 제품 규격에 따라 충분한 수량이어야 한다.

가. 제품 검체채취는 품질부서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품 시험 및 그결과 판정은 품질부서의 업무다. 제품 시험을 책임지고 실시하기 위해서도 검체 채취를 품질부서 검체채취 담당자가 실시한다. 원재료 입고 시에 검체채취라면 다른 부서에 검체 채취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나 제품 검체채취는 품질부서 검체채취 담당자가 실시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타부서에 의뢰할 수는 있다.

검체 채취자에게는 검체 채취 절차 및 검체 채취 시의 주의사항을 교육, 훈련시켜야 한다.

나. 보관용 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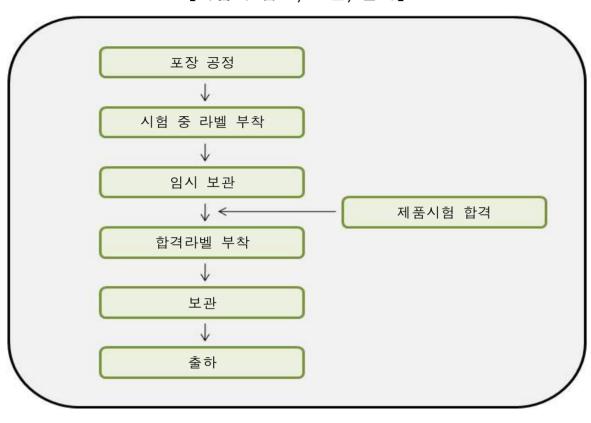
보관용 검체를 보관하는 목적은 제품의 사용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검 토 작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재검토작업은 품질 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재시험이 필요할 때 또는 발생한 불만에 대처하기 위하여 품질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될 때이다. 보관용 검체는 재시험이나 불만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사용한다.

【완제품 보관 검체의 주요 사항】

- 제품을 사용기한 중에 재검토(재시험 등)할 때에 대비한다.
 - 제품을 그대로 보관한다.
 - 각 뱃치를 대표하는 검체를 보관한다.
 - 일반적으로는 각 뱃치별로 제품 시험을 2번 실시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한다.
 - 제품이 가장 안정한 조건에서 보관한다.
 - 사용기한까지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한다.

다. 제품의 입고, 보관, 출하

제품의 입고, 보관, 출하의 일련의 흐름은 다음에 제시하였다.



【제품의 입고, 보관, 출하】

※ 바코드 등 시험 중. 적합. 부적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라. 제품의 보관 환경

제품 보관 시 필요한 환경 항목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보관 온도, 습도는 제품 의 안정성 시험 결과를 참고로 해서 설정하며, 안정성 시험은 화장품의 보관 조건이나 사용기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품의 보관 환경】

- 출입제한
- 오염방지
- 시설대응, 동선 관리가 필요
- 방충·방서 대책
- 온도·습도·차광
- 필요한 항목을 설정
- 안정성시험결과, 제품표준서 등을 토대로 제품마다 설정

참고자료

Guidance for Industry

-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U.S. FDA]

Production

You should determine whether written manufacturing and control SOPs have been established (for example, formulations, processing instructions, in-process control methods, packaging instructions, instructions for operating equipment). Procedures should include provisions to ensure that:

- The selection, weighing, and measuring of raw materials and the determination of finished yield are reviewed by a second individual
- Major equipment, transfer lines, containers and tanks used for processing, holding, or filling are identified to indicate contents, batch identification/designation, stage of processing and control status
- There ar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contamination with microorganisms, chemicals, filth, or other extraneous material
- There are in-process controls to ensure product uniformity, integrity (for example, in-process batch weights), accurate fill of mixing containers, and adequacy of mixing.
- The theoretical yield for a production batch is compared with the actual yield
- The tamper-resistant packaging and labeling for liquid oral hygiene products and vaginal products meet the requirements of 21 CFR 700.25
- The storage and handling of packaging materials that are intended to come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product prevent selection errors and microbiological or chemical contamination; and
- Finished product packages bear permanent meaningful, unique lot or control numbers and you have a coding system that corresponds to these numbers

4. 제4장 품질관리

제20조(시험관리)

- ①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업무에 대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원자재·반제품·벌크 제품·완제품에 대한 적합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번호 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③ 시험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인지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원자재·반제품·벌크 제품·완제품은 적합판정이 된 것만을 사용하거나 출고하여야 한다.
- ⑤ 정해진 보관기간이 경과된 원자재·반제품·벌크 제품은 재평가하여 품질기 준에 적합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 ⑥ 모든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시험기록은 검토한 후 적합, 부적합, 보류를 판정하여야 한다.
- ⑦ 기준일탈이 된 경우는 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는 책임자에 의해 일탈, 부적합, 보류를 명확히 판정하여야 한다.
- ⑧ 표준품과 주요시약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개봉일
 - 3. 보관조건
 - 4. 사용기한
 - 5. 역가, 제조자의 성명 또는 서명(직접 제조한 경우에 한함)

해 설

품질관리는 화장품 품질보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료의 다양화, 해외 원료의 증가, 안정성시험의 증가 등으로 품질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품질 확인 필요도 증가해 왔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바르게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하다.

품질관리는 CGMP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품질관리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화장품의 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핵심은 제조공정의 각 단계에서 제품 품질을 보장하고, 공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자재, 반제품, 벌크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시험업무를 문서화된 종합적인 절차로 마련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품질관리는 원자재, 반제품, 벌크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적합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 번호별로 시험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적합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화되고 적절한 시험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화학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회사, 공급자에 의해 작성되거나 검증된 가장 최신본을 따라야 한다.

시험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인지 분명히 기록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손쉬운 복구 및 추적이 가능한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품질관리는 규정된 합격판정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험 방법이 모두 적용 되어야 한다. 시험방법은 계획된 목적을 위해 규정되고, 적절하여야 하며 이용 가능해야 한다. 설정된 시험 결과는 시험 물질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험기간 동안 보류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화장품 원료시험은 '원료공급자의 검사결과 신뢰 기준'(대한화장품협회 자율규약 참조)을 충족할 경우 원료공급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원자재, 반제품, 벌크제품 및 완제품은 품질이 규정된 합격판정기준을 만족할 때

에만 물질의 사용을 위해 불출되고, 제품은 출고를 위해 불출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품질관리부서는 물질이 불출되기 전 문서화된 검체채취 및 시험 관리에 책임이 있다. 직원, 공장, 설비, 위탁계약, 내부감사 및 문서관리에 대한 원칙은 품질관리 에도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

【품질관리의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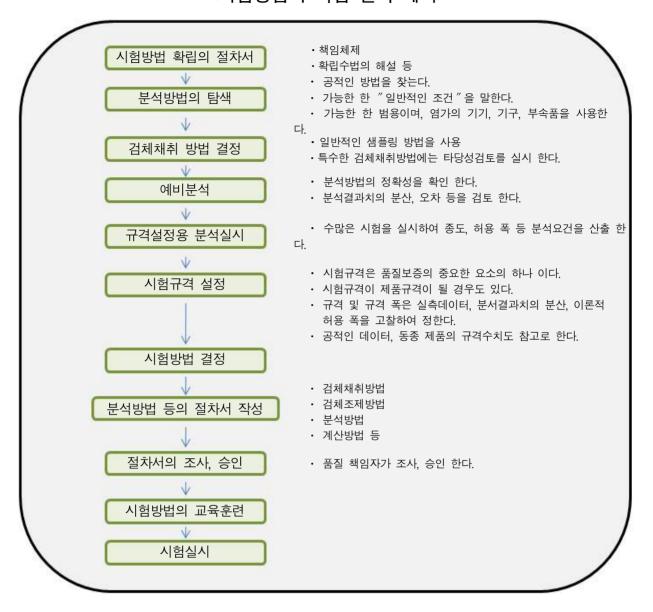
- 업무환경
 -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험시설과 설비를 보유한다. (통상 제조구역에서 분리한다.)
 - 시험의 실시 및 검체와 기록서를 보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춘다.
 -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이 있다.
 - 수행 업무 절차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조직체계상 제조부문과 독립 운영되어야 한다.
- 시험업무
 - 제품 품질에 관련된 결정에 관여한다.
 - 절차서에 따라 검체채취, 분석, 합격여부 판정을 한다.
 -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 일반데이터, 원자료(raw data)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 시약, 시액, 표준품, 보관용 검체(Retain Sample)를 취급, 관리한다.
 - 시험기기를 사용하고 관리한다.
 - 필요시 분석방법을 개발한다.
 - 시험에 관한 최신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 기준일탈 결과를 조사한다.
 - 변경을 관리한다.
 - 일탈을 처리한다.

각 시험의 결과는 시험성적서에 정리한다. 시험성적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시험성적서에는 뱃치별로 원료, 포장재, 벌크제품, 완제품에 대한 시험의 모든 기록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검체데이터, 분석법 관련 기록, 시험데이터와 시험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의뢰서, 검체채취 기록, 시험근거자료(raw data), 계산 결과 등 그 뱃치의 제품 시험에 관계된 기록이 모두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기재되어 있는 문서와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어있어야 한다.

<시험방법의 확립 절차 예시>



다시 말하면 시험에 관한 기록을 각 뱃치 단위로 정리하여 조사, 승인 작업을 손쉽게 하고 언제라도 재검토할 수 있는 기록 체계를 확립한 문서이어야 한다.

시험성적서에는 각 표준서에 설정된 항목을 기록해야 하며, 이들 항목의 기록이 각각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험성적서에 기록되고 기재되어야 하며, 시험성적서에는 모든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시험기록을 검토한 후 적합, 부적합, 보류를 판정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 ※ 제조번호별로 작성한다.
- 검체
 - 명칭, 제조원, 제조번호, 식별코드번호, 채취일, 입고일 또는 제조일, 검체량 등
- 시험방법
 - 사용 시험방법 기재(또는 시험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근거 기재)
- 데이터
 - 원자료(raw data)(기록·그래프·차트·스펙트럼 등)
- 기준 및 판정
 - 판정결과와 고찰
- 날짜, 서명
 - 담당자. 확인자의 서명·날인
 - 책임자에 의한 검토·승인(기록의 정당성, 완전성, 적합성)

제품 시험에서 기준일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이 "기준일탈"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 심지어는 손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는 시험결과에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단계이며, 결정이 아니다. 많은 의문도 발생한다. 시험 문제인가, 제조 문제인가, 제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재발하는 것이 아닐까 등의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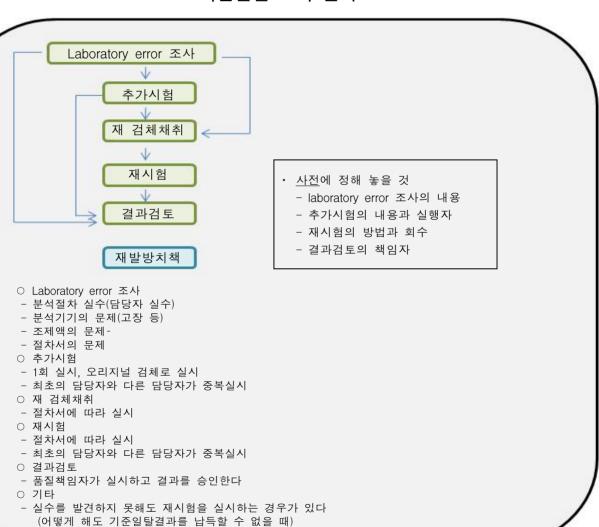
이상의 미확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시험 결과를 재확인해 두자는 것이 "기준일탈 조사"이다.

기준일탈인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후에는 책임자에 의해 검체의 일탈(deviation), 부적합(rejection), 또는 이후의 평가를 위한 보류(pending)를 명확하게 결정해야 하며 재시험에 대해서는 충분한정당성이나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기준일탈 결과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고객, 사내의 관련 부서 생산부, 물류부, 영업부 등에 대한 연락이 필요하다. 시험에 사용한 검체와 시약, 시액의 확보가 필요하다.

기준일탈 조사 결과, 시험 결과가 기준일탈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제품 품질이 "부적합"이다. 제품의 부적합이 확정되면 우선 해당 제품에 부적합 라벨을 부착 (식별표시)하고 부적합보관구역에 격리 보관한다. 그리고 부적합의 원인 조사를 시작한다. 제조, 원료, 오염, 설비 등 종합적인 원인을 조사한다.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적합품의 처리 방법(폐기처분, 재작업, 반품)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재작업해서 제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위탁 제조품이며, 특수한 경우에는 반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들 일련의 작업의 결과는 기록에 남겨야 한다.

<기준일탈 조사 절차>



【시약, 용액, 표준품, 배지】

- 시약(reagents) : 시험용으로 구입한 시약
 - 리스트 작성, 라벨 표시, 적절한 관리
 - 사용기한 설정과 표시 필요
- 시액(solutions) : 시험용으로 조제한 시약액
- 리스트 작성, 라벨표시, 적절한 관리
- 사용기한 설정과 표시 필요
- 표준품(reference, standards) : 시험에 사용하는 표준물질
 - 공식 공급원으로부터 입수할 경우와 자사에서 조제할 경우가 있다.
 - 사용기한 설정과 표시 필요
- 배지(culture media) : 미생물이나 생물조직을 배양하는 것
 - 세균. 진균 등 많은 배지가 있다.
 - 적절한 환경에서 관리한다.

품질관리 시 시험업무에는 다양한 표준품, 시약, 용액, 배지 등이 구매, 조제,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표준품, 시약, 용액, 배지 등은 구매, 조제, 사용 후의 이력이라벨과 제조사 시험성적서(COA) 및 관리기록서 등의 문서로서 관리되어야 한다.라벨은 병 또는 용기에 반드시 부착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재항목은 아래와 같다.

- 명칭
- 개봉일
- 적절한 보관조건
- 사용기하
- 역가 또는 농도
- 직접 조제한 경우, 제조자의 이름 그리고/또는 서명
- 제조날짜 또는 구매날짜

원료 및 포장재의 허용 가능한 사용기한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사용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원료와 포장재는 품질부문에서 통상의 유사한 성상과 물성, 형태의 원료, 자재와 유사하게 적절한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Guidance for Industry

-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U.S. FDA]

O Laboratory Controls

You should evaluate laboratory controls including sample collection techniques, specifications, test methods, laboratory equipment, and technician qualifications. Laboratory controls should include provisions to ensure that:

- Raw materials (including water), in-process and finished product samples are tested or examined for identity and compliance with applicable specifications (for exampl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microbial contamination, and hazards or other chemical contamination
- Samples are representative of the lot
- Current finished product samples as well as retained product samples are tested for adequacy of preservation against microbial contamination under reasonable conditions of storage and use
- Samples of approved lots of raw materials and finished products are retained for an adequate time period
- Retained samples are stored under conditions which protect their integrity (for example, to avoid contamination and deterioration), and are retested at appropriate intervals to assure continued compliance with established specifications; and
- Returned cosmetics are examined for deterioration, contamination, and compliance with acceptance specifications

제21조(검체의 채취 및 보관)

- ①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채취하고, 채취한 후에는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하며,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명칭 또는 확인코드
 - 2. 제조번호
 - 3. 검체채취 일자
- ③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조건 하에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단 위별로 사용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 설

검체 채취란 원료, 포장재, 벌크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의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다. 검체 채취는 품질관리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검체 채취는 자격을 갖춘 담당자에 의해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는 입증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검체 채취 후에는 혼란의 위험을 피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하며,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검체 채취는 품질부서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품시험 및 그 결과판정은 품질부서의 업무다. 제품 시험을 책임지고 실시하기 위해서도 검체 채취를 품질 부서에서 실시한다.

검체 채취자에게는 검체채취 절차 및 검체채취 시의 주의사항을 교육, 훈련시켜 야 한다.

검체는 제조단위(Batch)를 대표하는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액체제품이라면 전체

를 간단하게 균일하게 할 수 있어서 채취한 검체가 그 제조단위를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체, 고체, 점성 액체일 경우에는 제조단위 전체가 균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장소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균일하게 한 후에 검체채취를 실시한다.

검체채취를 실시할 때에는 주위를 정리하고 제품 및 검체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체채취 기구 및 검체용기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품규격 중에 미생물에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검체 용기를 미리 멸균한다. 파손 및 내용물에 대한 악영향의 가능성이 없는 용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검체용기에는 용기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체채취 전에 라벨을 붙여 놓는 것이 바람 직하다.

검체는 보존기간을 정해 놓는다. 일반적으로는 제품시험이 종료되고 그 시험결과 가 승인되면 폐기한다. 시험 시에 여러 번 개봉된 검체는 각종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간 보존해도 의미가 없다.

검체채취 절차서에는 분석을 위한 설비, 기기, 기술, 계획, 양 및 품질관리 검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안전 예방조치, 검체 의뢰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규정된 사항과수립된 절차서에 따라, 검체채취는 숙련되고 승인된 직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검체채취 절차서는 다음의 요소들은 포함해야 한다.

- 오염과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포함한 검체채취 방법
- 검체채취를 위해 사용될 설비·기구
- 채취량
- 검체확인 정보
- 검체채취 시기 또는 빈도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명칭 또는 확인 코드
- 제조번호 또는 제조단위
- 검체채취 날짜 또는 기타 적당한 날짜

- 가능한 경우, 검체채취 지점(point)

【검체 채취】

- 1. 어디서, 누가, 방법
-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
- 품질관리부가 검체 채취를 실시한다.
- 검체채취 절차를 정해 놓는다
 - 검체채취 시기, 검체채취 방법, 사용하는 설비, 검체채취 양, 검체용기, 검체용기로의 표시, 보관조건, 검체채취 용기, 설비의 세정과 보관
- 검체채취자는 아래의 교육, 훈련을 받아 둔다.
 - 검체채취 절차, 설비취급방법, 제품취급주의사항, 제품, 용기, 라벨의 육안 검사 방법
- 뱃치를 대표하는 검체를 채취한다.
 - 검체채취 위치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때는 혼합 작업을 하고 나서 검체를 채취한 다
- 검체라벨을 첩부한 검체용기에 넣는다.
- 2. 검체 환경
- 주위를 정리하고 검체를 채취 한다.
- 3. 검체 용기
- 내용물 반응성이 없고, 깨끗한 검체 용기(PET or PE)에 미리 라벨을 붙여 놓는다.
- 미생물항목이 있는 검체(원료 등)는 멸균된 기구를 사용하여 멸균용기에 채취한다.
- 품질관리부 자체에서 준비한다.
- 4. 검체채취 양
- 일반적으로는 시험용 검체는 전 제품 시험 필요양을 채취한다.
- 5. 검체의 보존기간
 - 일반적으로 시험 검체는 제품시험이 종료되고 그 시험결과가 승인될 때까지 보존하고, 보관용 검체는 지정된 보존기간동안 보존한다.

완제품의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양을 제조단위별로 따로 보관하며 이것을 보관용 검체라고 한다.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조건 하에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단위별로 사용기한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제품의 경시 변화를 추적하고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제품을 시험하는 데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화장품은 장기 적으로 경시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시험 계획을 세우고 특정 제조단위에 대하여 충분한 양의 검체를 보존한다.

동일 제조단위에서 포장형태는 같으나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포장단위 라도 무방하나, 포장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을 보관한다.

보관용 검체의 보관조건은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극단의 고온다습이나 저 온저습을 피하고 제품 유통시의 환경조건에 준하는 조건(실온)으로 보관한다. 보관용 검체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제조단위를 대표해야 한다.
- 적절한 용기·마개로 포장하거나 또는 제조단위가 표시된 동일한 용기·마 개의 완제품 용기에 포장한다.
- 제조단위·제조 번호(또는 코드) 그리고 날짜로 확인되어야 한다.

【보관용 검체의 주요사항(완제품)】

- 목적 : 제품을 사용기한 중에 재검토 할 때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 시판용 제품의 포장형태와 동일하여야 한다.
- 각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검체를 보관한다.
- 사용기한까지 보관한다. 다만,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

화장품 제조 시 보관용 검체를 보관하는 것은 품질관리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보관용 검체는 아래 사항을 위해 중요하다.

- 소비자 불만과 기타 소비자 질문 사항의 조사를 위한 중요한 도구
- 제품 및 그 포장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
- 문의 가능한 질문에 대응을 위한 회사의 제품 라이브러리

제22조(폐기처리 등)

- ①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품질 책임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작업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③ 재작업을 할 수 없거나 폐기해야 하는 제품의 폐기처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 대상은 따로 보관하고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해 설

원료와 포장재, 반제품, 벌크제품과 완제품이 적합판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할 경우 "기준일탈 제품"으로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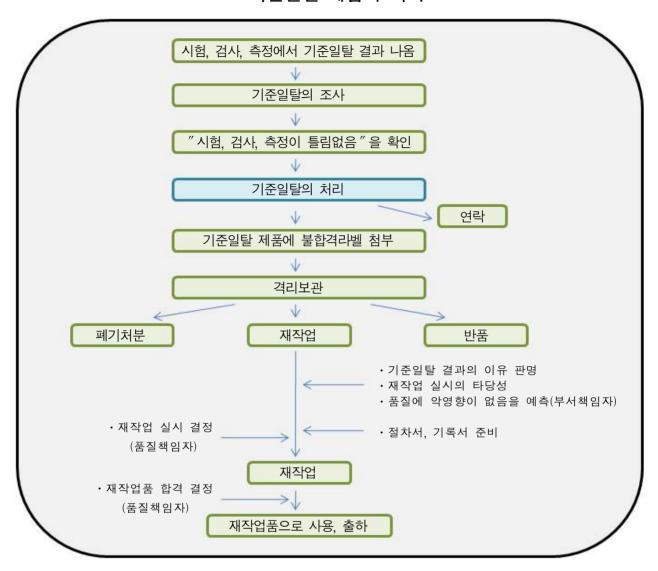
기준일탈 제품이 발생했을 때는 미리 정한 절차를 따라 확실한 처리를 하고 실시한 내용을 모두 문서에 남긴다.

기준일탈이 된 반제품, 벌크제품 또는 완제품은 재작업 할 수 있다. 재작업이란 뱃치 전체 또는 일부에 추가 처리(한 공정 이상의 작업을 추가하는 일)를 하여 부 적합품을 적합품으로 다시 가공하는 일이다.

기준일탈 제품은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폐기하면 큰 손해가 되므로 재작업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부적합 제품의 재작업을 쉽게 허락할수는 없다. 먼저 권한 소유자에 의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권한 소유자는 부적합 제품의 제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재작업을 해도 제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예측해야 한다.

기준일탈 제품의 처리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기준일탈 제품의 처리>



재작업 처리의 실시는 품질책임자가 결정한다. 재작업 실시의 제안을 하는 것은 제조 책임자일 것이나, 실시 결정은 품질책임자가 한다. 그리고 품질책임자가 재작업의 결과에 책임을 진다.

재작업은 해당 재작업의 절차를 상세하게 작성한 절차서를 준비해서 실시한다. 재작업 실시 시에는 발생한 모든 일들을 재작업 제조기록서에 기록한다. 그리고 통상적인 제품 시험 시보다 많은 시험을 실시한다. 제품 분석뿐만 아니라, 제품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 품질에 대한 좋지 않은 경시 안정성에 대한 악영향으로서 나타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재작업의 정의 및 절차】

- 재작업(Reprocessing)의 정의
 - 적합판정기준을 벗어난 완제품 또는 벌크제품을 재처리하여 품질이 적합한 범위에 들어 오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재작업 예시>

- ·충전: 충진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부족한 충전양만큼을 세팅하여, 다시 충전공 정을 반복한다.
- ·로트착인이 되지 않아 완제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로트착인공정을 다시 행함으로써 완제품 기준에 맞춘다.
- 재작업의 절차
 - 품질책임자가 규격에 부적합이 된 원인 조사를 지시한다.
 - 재작업 전의 품질이나 재작업 공정의 적절함 등을 고려하여 제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재작업 실시 전에 예측한다.
 - 재작업 처리 실시의 결정은 품질책임자가 실시한다.
 - 승인이 끝난 재작업 절차서 및 기록서에 따라 실시한다.
 - 재작업 한 최종 제품 또는 벌크제품의 제조기록, 시험기록을 충분히 남긴다.
 - 품질이 확인되고 품질책임자가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재작업품은 다음 공정에 사용할 수 없고 출하할 수 없다.

제23조(위탁계약)

- ①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있어 공정 또는 시험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에 위탁 제조 하는 것을 권장한다.
- ③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의 계약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④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확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업체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⑤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에 대해 계약에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탁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⑥ 수탁업체에서 생성한 위·수탁 관련 자료는 유지되어 위탁업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해설

위탁계약이라고 하는 업무의 형태는 가전제품, 전자기기, 공업용 기계, 식품 등산업계의 각 분야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수탁 업무가 왕성해지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에서도 제조비용의 절감 요청, 제조기술의 고도화, 국제 분업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위·수탁 업무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 공장의 거의 모든 과정에 대해 위탁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화장품의 제조, 포장에서부터 품질관리까지 위탁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제조 및 품질관리에 있어 공정 또는 시험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제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에 위탁 제조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탁업체의 공정이 CGMP를 따르는 것을 권장함으로 수탁업체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소유함을 보증하는 문서에 양측이 서명하여 위탁자와 수탁 업체간의 의무와 책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탁업체가 처음에 보증한 사항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들 작업을 위탁할 때에는 계약서를 교환하고 위탁업체 역할과 수탁업체 역할을 바르게 알고 업무를 실행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위·수탁제조에서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양자가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여 위·수탁제조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실정에 맞는 위·수탁제조의 형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위·수탁제조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기업 간에 위·수탁제조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한국에 맞는 형태로, 외국기업과 위·수탁제조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양사가 잘 의논해서서로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위·수탁제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위·수탁제조에서는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다. 위탁업체와 수탁업체는 상하 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지닌 파트너다.

위탁업체는 위탁제조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제조품의 품질보증을 수탁업체에게 추구하는 위탁업체가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위탁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 스스로가 제조 공정을 확립하고 사용할 원료나 포장재의 품질규격 및 공급업자를 결정해야 한다. 제조 공정의 확립이나 원료공급업자의 결정을 수탁업체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그 결정 책임까지 위탁할 수는 없다. 아울러,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의 능력평가, 기술이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탁업체는 위탁업체가 확립한 제조 공정의 실시를 보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조 실시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제조는 CGMP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조 및 CGMP준수의 상황에 관해서 위탁업체의 평가 및 감사를 받아들인다. 평가 및 감사를 위해서는 제조의 결과를 모두 문서로 남기고 수탁업체의 모든 데이터는 위탁업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각각 제품에 적합한 CGMP 제조 체제는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가 공동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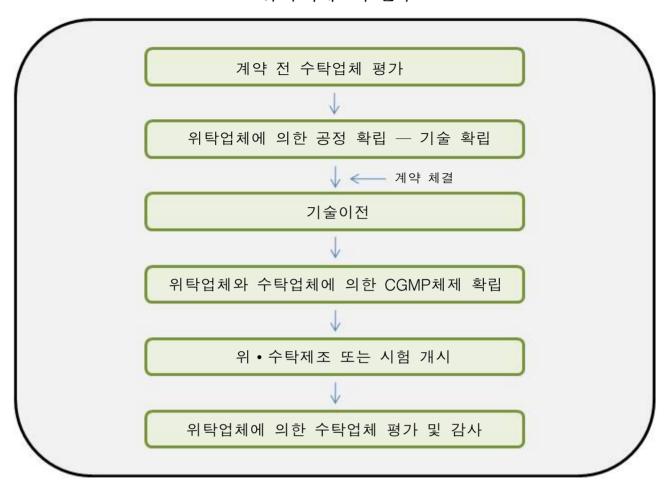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역할】

- 위탁업체의 역할
 -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
 - 제조 공정을 확립한다. : 원료, 포장재의 결정을 포함한다.
 - 수탁업체를 평가한다.
 - 수탁업체에게 기술이전을 한다.
 - 수탁업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수탁업체가 수행한 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평가하고 감사한다.
- 수탁업체의 역할
 - 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보증한다.
 - 제조공정 또는 시험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한다.
 - CGMP에 준하는 적절한 관리를 한다.
 - 제조공정 또는 시험의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 위탁업체의 평가 및 감사를 받아들인다.
- ※ 위탁업체와 수탁업체는 계약을 하여 양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한다.
- ※ 위탁업체-수탁업체 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필수
- ※ 품질보증, 기술이전, 변경관리, 일탈처리에 관한 공통인식을 키운다.

위·수탁제조의 절차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으며, 위·수탁제조는 수탁업체평가 \rightarrow 기술 확립 \rightarrow 계약 체결 \rightarrow 기술이전 \rightarrow CGMP체제 확립 \rightarrow 제조 또는 시험 개시 \rightarrow 위탁업체에 의한 수탁업체 평가 및 감사 순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단한 위·수탁제조라면 각 항목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으나, 신기술 또는 새로운 업무의 위·수탁 등에는 각 항목에 대한 책임체제를 명확히 해서 위·수탁제조를 해나가야 한다.

<위·수탁제조의 절차>



가. 계약 전 수탁업체평가

위탁업체는 수탁업체를 선정 할 때, 수탁업체가 해당 화장품을 수탁제조 하는데 적합한지 계약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현재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체는 수탁 업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계약 전 평가 시에는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결과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위·수탁제조 계약체결 전의 수탁업체 평가의 주요사항 및 수탁기업의 평가 판정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 제조개시 후의 수탁업체평가

위탁제조 개시 후, 위탁업체는 정기적으로 수탁업체의 평가를 실시한다. 개시 후에도 정기적으로 평가 또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탁업체는 수탁업체를 평가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수탁업체에게 피드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 전 수탁업체 평가】

- 화장품의 위탁제조 또는 시험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수탁업체를 평가한다.
 - 절차를 설정해 둔다.
 - 체크 항목을 설정해 둔다.
 - CGMP준수 평가를 항목에 추가한다.
 - 평가기록을 남긴다.
 - 평가자의 양성이 중요하다.

다. 위·수탁계약서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수탁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계약서 요건(위·수탁사항, 가격, 매매방법, 배송방법, 비밀유지 등) 이외에화장품의 제조 및 위·수탁에 특이적인 요건이 포함된다.

우선 계약 범위를 명확하게 해둔다. 어느 범위를 위·수탁 하는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계약은 시작되지 않는다. 양사가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책임 분담의 항목은 CGMP문서 작성, 절차서 작성, 표준품의 작성과 같은 제조개시 전의 항목부터 검정이나 유지관리와 같은 제조개시 전후의 요건까지 계약항목에 넣어 둔다.

"변경"을 실시할 때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탁업체가 위탁업체에게 알릴 것, 일탈, 기준일탈 발생 시 신속한 연락 의무를 계약서에 기입해야 한다. 또한 위탁 업체는 무단으로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위·수탁계약서에 있어서의 항목 및 내용에 대해서는 품질부서가 검토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4조(일탈관리)

제조 또는 품질관리 중의 일탈에 대해 조사를 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일 탈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 일탈의 정의

일탈(Deviations)은 규정된 제조 또는 품질관리활동 등의 기준(예시: 기준서, 표준작업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등)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이며, 기준일탈 (Out of specification)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시험결과가정한 기준값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다. 기준일탈은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이에따라 조사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일탈의 예는 아래와 같다.

가. "중대한 일탈"

- (1) 제조 공정상의 일탈 예
 - 제품표준서, 제조작업절차서 및 포장작업절차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방법 으로 작업이 실시되었을 경우
 - 공정관리기준에서 두드러지게 벗어나 품질 결함이 예상될 경우
 -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생산 시의 관리 대상 파라미터의 설정치 등) 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설정치를 벗어났을 경우
 - 제조 작업 중에 설비ㆍ기기의 고장, 정전 등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 벌크제품과 제품의 이동·보관에 있어서 보관 상태에 이상이 발생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 (2) 품질검사에 있어서의 일탈 예
- 절차서 등의 기재된 방법과 다른 시험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 (3) 유틸리티에 관한 일탈 예
- 작업 환경이 생산 환경 관리에 관련된 문서에 제시하는 기준치를 벗어났을 경우

나. "중대하지 않은 일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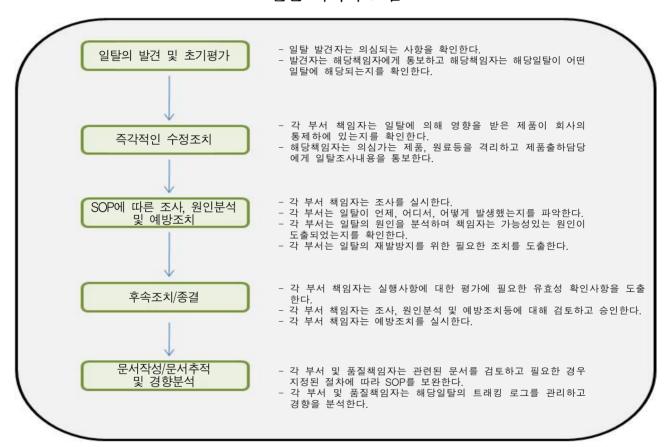
- (1) 제조 공정상의 일탈 예
 -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제조 시의 관리 대상 파라미터의 설정치 등) 에 있어서 설정된 기준치로부터 벗어난 정도가 10%이하이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있을 경우
 -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제조 시의 관리 대상 파라미터의 설정치 등) 보다도 상위 설정(범위를 좁힌)의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 제조 공정 중 원료 투입에서 동일 온도 설정 하에서의 투입 순서에서 벗어 났을 경우
 - 제조에 관한 시간제한을 벗어날 경우 : 필요에 따라 제품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각 제조 공정 완료에는 시간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설정 된 시간제한에서의 일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에 의거한 설명이 가능할 경우
 - 합격 판정된 원료, 포장재의 사용: 사용해도 된다고 합격 판정된 원료, 포장재에 대해서는 선입선출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 요건에서의 일탈 이 일시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출하배송 절차 : 합격 판정된 오래된 제품 재고부터 차례대로 선입선출 되어야 하나, 이 요건에서의 일탈이 일시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2) 품질검사에 있어서의 일탈 예
 - 검정기한을 초과한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설비보증이 표준품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 일탈의 조치

일반적인 일탈 조치의 흐름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일탈의 정의, 순위 매기기, 제품의 처리 방법 등을 절차서에 정해둔다.

제품의 처리법 결정부터 재발방지대책의 실행까지는 발생 부서의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실행하면 된다. 그러나 품질부서에 의한 내용의 조사·승인이나 진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절차서 등의 문서 개정을 한다. 제품 처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일탈 원인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원인을 모르면 재발방지대책의 입안·실행을 할 수 없고 다음 뱃치를 개시할 수도 없다. 일탈 원인이 아무리 해도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같은 일탈이 발생하기까지 원인 규명을 미루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재발을 발견하는데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일탈 처리의 흐름>



제25조(불만처리)

- ① 불만처리담당자는 제품에 대한 모든 불만을 취합하고, 제기된 불만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1. 불만 접수연월일
 - 2. 불만 제기자의 이름과 연락처(가능한 경우)
 - 3. 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포함한 불만내용
 - 4. 불만조사 및 추적조사 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 대책
 - 5. 다른 제조번호의 제품에도 영향이 없는지 점검
- ② 불만은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해 설

소비자의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은 품질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다.

- 이와 같은 시스템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
 - 시장에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제품 성능의 척도 제공
 - 현재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정보 제공 및 미래 제품 설계 개선에 도움 제공
 - 제품 품질 및 안전성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점 발견

소비자 의견은 칭찬, 불만, 질문 등으로 분류되며 소비자의 의견 중 "불만"은 일 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그 의미가 개인에 따라 또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불만의 예시>

- 이물, 이취, 변색 등의 상태 변화
- 포장, 표시의 결함
- 배송 시의 결함
- 안정성, 안전성의 문제 등

소비자로부터 문서화되거나 구두로 표현된 불만에 대한 접수, 처리, 검토, 응답, 조치에 대하여 그 절차가 확립되어야 하며 불만처리담당자는 제품에 대한 모든 불만을 취합하고, 제기된 불만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불만 파일은 정해진 부서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고 불만은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화장품 제조업자의 불만 처리서에 필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이들 항목을 기록한 불만처리서 서식을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불만 처리서 항목 예시>

- 불만을 접수연월일
- 불만 제기자의 이름,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가능한 경우)
- 제품의 명칭, 제조번호
- 불만의 내용
- 최초에 실시한 대응, 대응한 날짜, 담당자명
- 실시한 모든 추적 조사
- 불만 신청자에 대한 답변, 답변한 날짜
- 화장품 뱃치에 관련된 최종 결정

제26조(제품회수)

- ① 제조업자는 제조한 화장품에서 「화장품법」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 1항을 위반하여 위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회수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1. 전체 회수과정에 대한 제조판매업자와의 조정역할
 - 2. 결함 제품의 회수 및 관련 기록 보존
 - 3.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회수의 경우 회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 록 필요한 조치 수행
 - 4. 회수된 제품은 확인 후 제조소 내 격리보관 조치(필요시에 한함)
 - 5. 회수과정의 주기적인 평가(필요시에 한함)

해설

화장품 회수는 화장품 영업자(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주요한 의무이며, 제조 및 유통 판매한 화장품에 대한 회수 필요성이 인식될 경우 신속히 관련 화장품 영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 ① 영업자는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회수 대상 회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이하 "회수대상화장품"이라 한다)은 유통 중인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으로 한다.
- 1. 법 제9조에 위반되는 화장품
- 2. 법 제15조에 위반되는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 가. 법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 나. 법 제15조제4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다. 법 제15조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1) 법 제8
-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2) 법 제8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적합하
- 지 아니한 화장품
- 라. 법 제15조제9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 마, 법 제15조제10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 바. 그 밖에 영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장품
- 3.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화장품
- ②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회수대상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가등급, 나등급 및 다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2호다목1)에 해당하는 화장품
- 2. 위해성 등급이 나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2)(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마목에 해 당하는 화장품
- 3.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2호가목・나목・다목2)(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라목・바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회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이하 "회수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화장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수대상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까지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해당 품목의 제조 수입기록서 사본
- 2. 판매처별 판매량 판매일 등의 기록
- 3. 회수 사유를 적은 서류
- ② 회수의무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회수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회수 기간 이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회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1. 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인 화장품: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
- 2. 위해성 등급이 나등급 또는 다등급인 화장품: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수의무자에게 그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④ 회수의무자는 회수대상화장품의 판매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를 말한다), 그 밖에 해당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공고 등을 통하여 회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수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통보받은 자는 회수대상화장품을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수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회수의무자는 회수한 화장품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폐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의 참관 하에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계획서 사본
- 2.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
- ① 제6항에 따라 폐기를 한 회수의무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⑧ 회수의무자는 회수대상화장품의 회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회수종 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

- 2.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폐기확인서 사본(폐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평가보고서 사본
- 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8항에 따라 회수종료신고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1. 회수계획서에 따라 회수대상화장품의 회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수의무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
- 2.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의무자에게 회수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명할 것

참고자료

Guidance for Industry

-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U.S. FDA]

O Complaints, Adverse Events, and Recalls

You should review product complaints, consumer adverse event reports, and product recall files and determine the following:

- For complaints:
 - O Whether there are SOPs for reporting, recording, filing, evaluating, and following up on both written and oral complaints
- For complaints alleging adverse events involving bodily injury:
 - O The kind and severity of each reported injury
 - O The body part involved
 - O Product and code numbers
 - O Whether medical treatment was sought, and, if so, the nature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the name of the attending physician or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
 - O Whether resolution of the event occurred, with or without long-term or persistent effects (If long-term or persistent effects occurred, the nature of those effects)
- O The name(s) and location(s) of any poison control center, government agency, physicians group, etc., to whom formula information and/or toxicity data has been provided; and

- O Whether you are voluntarily reporting adverse events to FDA through the MedWatch program
- For voluntary product recalls, the guidelines in 21 CFR part 7, Subpart C, should be considered, including:
 - O Whether there is a proposed strategy for conducting a recall
- O Whether recall notifications are capable of being initiated promptly
- O Whether the appropriate FDA district office has been notified of recalls
- O Whether recalled products have been identified and stored separately in a secure area until the firm has made a decision about the proper disposition or correction consistent with the degree of risk of the recalled product; and
- O Whether FDA's guidance as outlined in 21 CFR 7.59 has been considered

제27조(변경관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제조공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하고 품질책임자에 의해 승인된 후 수행하여야 한다.

해 설

○ 변경관리의 정의

변경관리는 화장품 제조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같은 품질의 제품을 계속 제조하기 위한 필수작업이며, 변경사항은 조직적이고 예측적 방식으로 제조 공정활동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의 예시>

- 제조용 교반장치를 전과 같은 것으로 갱신한다.
- 교반장치의 모터를 강력한 것으로 교환한다.
-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기의 속도를 30개/min에서 60개/min으로 변경한다.
- 제조설비의 세정방법을 물 세정에서 증기 세정으로 변경한다.
- 주요 원료의 공급업자를 A사에서 B사로 변경한다.
- 배합 처방을 조금 변경한다.

어떠한 변경사항이든 적절한 수준에서 계획되고, 조직되며, 통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충분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변경에 많은 문서 작성 및 복잡한 절차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변경관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가능한 한 간편한 절차로 실시하면 된다.

【변경관리】

- 변경이 있었을 때는 그 변경이 제품 품질이나 제조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증명해 두어야 하며, 이 증명 작업이 변경관리다.
- 변경관리는 화장품 제조에 필수불가결한 증명 작업이다.
- 증명이 간단한 변경은 간결하게 실시하면 된다.

- 변경의 영향을 검토하는 대상은 제품 품질과 제조 공정의 품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변경이 제품 품질이나 제조 공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변경에 의하여 다른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이 되므로 규제 정부나 제조업자 등과 서로 논의해야 한다.

○ 변경관리 절차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서, 공정, 설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하고 이러한 변경은 품질책임자에 의해 적절한 시기 안에 정당화되고 승인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변경관리 절차는 변경사항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기술 한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에 따라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변경 및 요구조건의 적절한 검토를 해야 한다. 이 절차는 기존의 허가된 시스템, 절차가 여전히 유효하고 변경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증거를 제공함을 보장한다.

절차는 기존 공정, 처방, 설비 등에 대한 계획된 변경에 적용된다. 또한 이절차는 직원의 환경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변경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다.

변경관리자,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자 등의 변경관리상의 역할에 대하여 책임사항을 정의한다. 변경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소집할 수 있다. 제조, 포장, 엔지니어링, 운영, 품질보증실험, 설비 유지관리, 제도, 마케팅, R&D, 환경적 건강영향 및 안전성, 재무부서 등의 부서들 또한 참여할 수 있다.

가. 변경관리의 기본 단계

- ① 변경 필요성 확인
- ② 소위원회 소집 변경 분야 전문가 소집(각 분야별 전문가를 소집하여 회의)
- ③ 변경을 정당화할 근거 수립
- ④ 착수 전 변경 승인
- ⑤ 변경 작업 실시
- ⑥ 변경에 영향을 받는 영역을 정비
- ⑦ 관련 작업을 수행

- ⑧ 변경 결과 확인 및 평가
- ⑨ 변경을 종료하고 추세 분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생성

나. 변경 기록

변경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그 형식은 전체 변경과정과 승인사항을 요약하여 한 장이나 두 장의 분량을 넘지 않는다.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권장한다.

- ① 변경 제안 : 요청자나 프로세스 오너에 의해 완료된 변경 제안에 대한 이유 및 정당성을 제공한다.
- ② 승인 및 책임: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각 부서의 승인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또한 이 부문은 각 부서에 대한 관련 임무의 목록을 포함해야한다. 그리고 최종 승인 과정에는 품질부서가 포함되도록 권장된다.
- ③ 종료: 변경작업이 승인된 대로 완료되고 관련 업무가 계획된 대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한다. 변경의 결과 및 효과가 달성되었음을 증명한다.

제28조(내부감사)

- ① 품질보증체계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내부감사 계획 및 실행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감사자는 감사대상과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사 결과는 기록되어 경영책임자 및 피감사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감사 중에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④ 감사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후속 감사활동을 행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해 설

내부감사의 목적은 회사의 품질보증체계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감사는 품질 시스템의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품질보증 프로그램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내부 감사 계획 및 실행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는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심사로써 인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감사는 회사 내 많은 부서 즉, 품질부서, 연구 개발, 구매, 물류(유통), 인사, 기술, 제조 등의 부서들에 의한 검토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감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규정 준수 감사: 판매자 요구사항, 회사 정책 및 관련 정부 규정의 준수에 대한 평가
- 제품 감사: 무작위로 추출한 검체를 통한 생산 설비의 가동이나 제조공정의 품질 평가
- 시스템 감사: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이용되는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 적인 평가

상기 열거된 감사의 종류는 아래의 방법으로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다.

- 내부 감사: 조직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피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감사
- 외부 감사: 도급계약자나 공급자와 같은 회사 외부의 피감사 대상 부서나 조직에 대한 감사
- 사전 감사: 계약 체결 전, 잠재적 공급업체나 도급업체에 대한 감사
- 사후 감사: 발주 후, 제품 생산 전 또는 생산 중에 공급업체나 도급업체 대한 감사 ○ 감사 절차

가. 감사 준비

개인이나 팀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아래 영역에 대한 경험, 지식, 교육 및 능력은 감사자 선발 시 고려할 사항이다.

- 제품 지식
- 공정 지식
- 품질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시스템
- 관련 표준
- 정부 규정
- 일반 제조 지식
- 구술 또는 서면의 의사소통 능력
- 회사의 정책 및 요구사항

감사자는 이러한 감사 대상 및 부서 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는 감사자의 숙련도, 전문성, 공정한 평가 및 직무윤리 등에 의하며, 감사자의 자격은 피감사 그룹·부서·회사와 감사를 수행하는 그룹·부서 양쪽 모두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감사의 전반적인 개요, 체크리스트, 일정, 팀 리더의 확인 및 구체적인 감사 영역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준비할 것
- 피감사 대상 조직에 대한 사전 통보(최소 2주전을 추천함)
- 감사 시에 피감사인이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 직전 감사 순서를 결정
- 감사의 마지막 최종 검토서를 작성

나. 감사 수행

감사는 면담, 운영 및 설비의 관찰, 문서 조사(정책, 절차서, 데이터·시험 기록 등)로 이루어진다. 철저한 감사의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제안한다.

-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한 영역과 또 다른 영역의 결과를 교차 점검한다.
- 예를 들어 입고 검사와 자재관리처럼 두 영역이 상호 연관이 있는 경우, 자재의 확인, 보관 및 불출 방법에 대하여 두 부서가 합의하였는지를 점검 한다. 합의가 없었다면, 시스템이 일관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규격서와 요구사항에 대하여 자료와 자료 분석기술의 검토
- 객관적인 근거자료(예시: 육안 자료 및 서면 증거)를 이용하여 피감사자 (직원)의 진술을 선별적으로 검증
- 정확한 기록을 유지(감사자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 감사 보고서

특정 작업이나 품질수준에 대한 한계 또는 정부 규정의 준수를 필요로 하는 회사 표준·정책과 같이, 명확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예" 또는 "아니오"로 객관적으로 수행된다. 경영 효율, 시스템 효율, 특정시스템의 적합성, 전체 생산시스템에 대한 품질관리의 기여도와 같은 특성을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이다.

감사는 절대적인 점수라기보다 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써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감사의 주요 결과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서면 감사보고서
- 시정조치 프로그램
- 개선 상황 모니터링

감사보고서는 감사 시 발견사항에 대한 확실한 전달 기능과 함께 담당자로 하여금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하도록 도움을 준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사의 목적
- 감사의 유형, 날짜, 위치 등을 포함한 감사 세부사항

- 관찰 결과(강점 및 약점), 근거자료, 문서화, 의견 및 권고사항
- 추적 감사의 제안

추적감사는 시정조치 계획상 중요한 영역에 대해 검토하도록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감사 후 회의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한 조속한 일자를 기입, 서명 후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일부 정보는 기밀로 취급될 수도 있으므로 피감사자나 고객과 본 건에 대해 먼저 협의하지 않은 경우,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의 직업윤리 상 협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로 유지하도록 한다.

감사 결과는 기록되어 경영책임자 및 피감사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감사 중에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후속 감사활동을 행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는 고시의 평가표를 사용하거나 회사 자체별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 등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Guidance for Industry

-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U.S. FDA]

O Internal Audit

You should determine whether effective procedures for internal audits are followed. At a minimum, internal audit procedures should provide that:

- Internal audits occur regularly or on demand
- Internal audits are conducted by individuals who do not have direct responsibility for the matters being audited
- All observations made during the internal audit are evaluated and shared with appropriate management, production, quality control, and/or lab personnel; and
- Internal audit follow-up confirms the satisfactory completion or implementation of corrective actions

제29조(문서관리)

- ① 제조업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보증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포함한 관리방침을 문서화하며 전 작업원들이 실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문서의 작성 및 개정·승인·배포·회수 또는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문서는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문서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서명과 승인연월일이 있어야 한다.
- ④ 문서의 작성자·검토자 및 승인자는 서명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문서를 개정할 때는 개정사유 및 개정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권한을 가진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 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 ⑥ 원본 문서는 품질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사본은 작업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 ⑦ 문서의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⑧ 작업자는 작업과 동시에 문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작성 하여야 한다.
- ⑨ 기록 문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하려는 글자 또는 문장 위에 선을 그어 수정 전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수정된 문서에는 수정사유, 수정 연월일 및 수정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⑩ 모든 기록문서는 적절한 보존기간이 규정되어야 한다.
- ① 기록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기 위해 백업파일 등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해 설

문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 후에는 무엇을 하였는지를 기록하기 위해 필요하다.

각 회사는 회사의 조직 구조와 제품 종류에 적합한 고유의 문서관리 시스템을 제정, 설계, 구축,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전자시스템은 문서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서관리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문서관리의 목적은 CGMP에서 규정된 활동들의 과거 이력을 설명하고, 구두로 전달되는 의사소통에 내재된 해석상의 위험과 정보 손실, 혼동 또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활동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CGMP에 있어서 문서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화장품 제조업자 및 직원에게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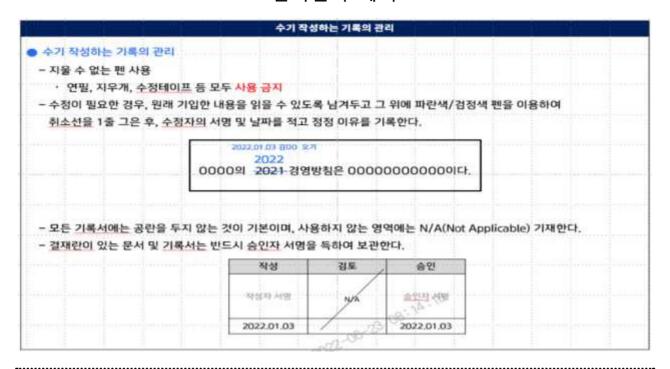
각 사의 독자적인 문서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선 CGMP용 문서를 체계화 한다. "체계화 한다"는 것은 문서를 분류해서 CGMP 문서화 체계를 만들고 다른 문서 체계(사내 규정 문서체계, ISO 문서체계 등)와 연관시키는 것을 말한다. 문서 체계화 시에는 가능한 한 다른 문서체계의 규칙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컴퓨터의 발달로 문서의 작성·관리 및 데이터의 보존을 전자화시스템(컴퓨터) 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서관리에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문서는 CGMP에서 적용하고 있는 활동들에 적합한 절차서, 지시서, 규격서, 프로 토콜, 보고서, 방법 및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문서는 출력물(hard-copy papers) 또는 전자문서(electronic data processing records) 일 수 있다.

CGMP용 문서의 분류 예시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CGMP문서, 절차서, 기록서, 관리문서의 4종으로 분류하면 편리하다.

<문서관리 예시>



【CGMP와 문서】

- 문서
 - 절차서, 지시서, 기록서, 품질규격서, 프로토콜, 보고서, 시방서, 원자료 등
- CGMP에서는 화장품 제조의 일련과정을 문서에 남긴다.
- CGMP에서는 문서화된 증거만 믿어야 한다
- 문서화의 목적
- 매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 화장품 제조의 CGMP활동을 모두 기재한다.
- 문서화 시스템이 필요
 - CGMP용 문서체계를 확립한다.
 - * CGMP용 문서를 분류한다.
 - * 다른 문서체계와 연관시킨다.
 - 손으로 기입하는 규칙, 정정 규칙을 갖는다.
 - 전자화 시스템(컴퓨터)의 관리 규칙을 갖는다.
 - 문서보관 규칙을 갖는다.

CGMP문서란 CGMP에 관련된 보고서류를 말한다. 화장품 개발, 제조, 시험, 품질에 관한 각종 보고서류가 포함된다. 해당 화장품의 개발 경위 또는 화장품 기술을 기재한 개발 보고서나 기술보고서, 제품표준서, 각종 프로토콜과 보고서 등

이다. 날마다 발생하는 사항(일탈, 기준일탈, 제품회수)에 관한 조사보고서, 변경 관리보고서, 연차조사보고서도 CGMP문서다. CGMP문서는 해당 제품이 존재하 는 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제품 제조가 계속 진행되어 있을 때에는 제품의 역사 를 말살할 것 같은 폐기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절차서란 표준작업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의 관용어이며, 모든 작업에 작성한다. 제조나 시험과 같은 실제 작업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일탈 처리방법, 내부감사 진행 방법, 위수탁 제조 공정, 품질보증작업, 시험담당자 교육훈련절차와 같은 소프트웨어 작업에도 절차서를 작성한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최신 절차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기록서란 절차에 따라 실시한 기록이다. 기록서에는 제조기록서나 시험기록서와 같은 기록서 이외에 시약 등의 관리대장, 제품의 출하대장과 같은 대장류도 포함된다. 미리 정한 미기입 기록서에 기입하고, 확인, 조사, 승인 등의 문서작업을 거쳐 "정식기록서"가 된다. 종류에 따라 기록서의 중요도가 다르다. 제조기록서와같이 관리부서가 정한 기간 중 보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기록서도 있는가 하면, 설비의 검정 기록서처럼 각 부서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기록서도 있다. 관리문서란 화장품 제조에 관련된 것, 사람, 부서를 관리하기 위한 문서다. "회사의 품질 선언"에 상당하는 품질매뉴얼, 제품 · 원료 · 포장재의 품질규격서, 시방서, 제조 스케줄표, 설비리스트, 설비의 취급설명서, 계약서 등 폭넓은 문서가 포함된다. 이들 관리문서는 CGMP문서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이들 문서도 화장품의 품질확보에 필요한 문서다. 분류한 문서는 체계화해둔다.

【CGMP 문서의 분류 예시】

- CGMP 문서
 - CGMP에 관련된 보고서류
 - 해당 제품이 존재하는 한 보관한다.
 - 예시 : 개발보고서, 기술보고서, 제품표준서, 밸리데이션 프로토콜 및 보고서, 안정성시

험 프로토콜 및 보고서, 안전성시험 프로토콜 및 보고서, 일탈, 기준일탈, 불만에 관한 조사보고서, 변경관리보고서

- 표준작업절차서
 - 작업마다 작성한다.
 -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 최신 절차서를 작업 현장에 구비한다.
 - 예시 : 원료, 포장재 취급절차서, 제조절차서, 시설·설비·기기 취급절차서, 검체채취 절차서, 분석절차서, 품질보증 절차서, 각종 관리절차서

○ 기록서

- 절차서에 따라 실시한 기록
- 미리 정한 기록서에 기입한다.
- 정한 기간 보관한다.
- 예시: 제조기록서, 시험기록서, 교육훈련기록서, 시설·설비·기기의 정기점검기록서, 설비의 검정 기록서, 설비의 세정기록 및 사용대장, 원료·포장재의 입고·검사 보관대장, 시약·용액·표준품 관리대장, 제품의 라벨링·보관·출하대장, 각종 원자료(raw data)

○ 관리문서

- 제조에 관련된 것, 사람, 부서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 예시: 품질매뉴얼(회사의 "품질선언"), 제품·원료·포장재의 품질규격서, 제품·원료· 포장재의 시방서, 제조스케줄, 시험스케줄, 설비리스트, 비품리스트, 시험기기리스트, 문서리스트, 원료·포장재·시약리스트, 시설·설비·기기의 시방서, 취급설명서, 서비 스업자·위탁회사와의 계약서 각서

절차서는 "절차서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작업을 실수 없이 할 수 있다"는 문서로 작업을 실시할 때마다 보는 문서다. 작업 내용에 정통하는 사람이 작성하고 작업하는 사람이 사용한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작업마다 절차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에게 그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절차서】

○ 무엇을 위하여 : 실수 없이 작업하기 위하여

○ 무엇에 : 작업마다(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 누가 만드나 : 작업 내용에 정통한 사람

○ 어떻게

- 이해하기 쉽다.

- 필요한 것을 모두 알 수 있다.
- 작업마다 있다.
- 최신이다.
- 누가 사용하나 : 작업하는 사람

문서는 CGMP와 연관된 활동에서의 적절한 상세 사항의 기술, 수행되는 작업, 취해진 주의사항과 적용된 조치로 규정되어야 한다.

문서의 제목, 특징 및 목적이 언급되어야 한다. 문서는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 야 한다.

-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 사용 전 승인된 자에 의해 승인되고,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어야 한다.
- 작성되고, 업데이트되고, 철회되고, 배포되고, 분류되어야 한다.
- 폐기된 문서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작업 구역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하거나 다른 문서 와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다.
- 관련 직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수기로 기록하여야 하는 자료의 경우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 기입할 내용 표시한다.
- * 지워지지 않는 검정색 잉크로 읽기 쉽게 작성한다.
- * 서명 및 년, 월, 일순으로 날짜를 기입한다.
- * 필요한 경우 수정한다. 단, 원래의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수정의 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문서에는 작성, 확인, 조사, 승인이라는 작업이 있다. 이들 작업을 규칙화하고 전원이 이 규칙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동일 품질의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문서는 실제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다. 내용에 정통하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장품 제조에 관련된 문서이므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쓴다. 사내의 서식 규칙(용지, 문자수와 행수, 폰트, 머리글과바닥글, 페이지 번호 등)에 따라 쓴다.

"확인한다"는 것은 실행된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실시한다. 일반적으로는 작성자보다 선임자인 사람이 확인자가 된다.

"조사한다"는 것은 문서 내용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이다. 문서 내용에 관하여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한다. 독단적으로 결론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관계자가 존재하는 문서라면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문서를 조사한다.

"승인한다"는 것은 문서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일이다. 정당성을 보증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실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품질부서의 일원이나 조직의 권한 보유자가 실시한다. 해당 문서에 고쳐 쓰기 및 거짓이 없고 법령·계약·CGMP 등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회람한다"는 작업이 문서에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 회람에는 역할이수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다고 해서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직책상의 상사에게 회람했다고 해서 그 문서의 조사자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문서 작업의 의미를 사내에서 단순하게 정의해서 전원이 같은 의미로 이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문서는 복수의 관계자가 작성, 확인, 조사, 승인해서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된다. 한 사람이 쓰고 같은 사람이조사와 승인을 한 문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꾸며서 본인이 승인하는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서의 작성, 확인, 조사, 승인의 작업을 실시하면 실시한 사람이 날짜가 있는 서명을 남긴다. 서명을 해서 날짜를 기입해도 된다. 이때에 사용하는 서명은 사내에서 등록한 서명을 사용한다. 그리고 서명 관리대장은 잠글 수 있는 책상 서랍등에 보관하고 책상 위에 방치하지 않는다.

문서는 갱신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번호를 표시한다. 각 개정에 관한 사유가 보존되어야 한다.

문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 쪽이 많을 것이다. 어느 쪽 문서를 사용하여도 보관책임자를 정해둔다. 종이문서에서는 원본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제품 품질에 관련된 문서(CGMP문서, 절차서, 기록서)의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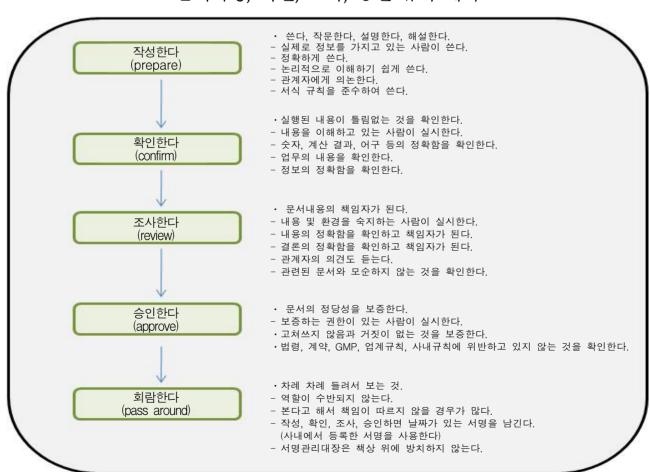
관리가 중요하며, 품질부서가 일괄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원본을 복사했을 때는 그 기록(언제, 누가, 날짜, 목적은)을 남긴다. 제조기록서와 시험기록서를 제외한 관리문서 및 원자료(raw data)는 제품 품질에 직접 관련되지 않아서 발생부서의 관리로 될 것이다.

원본 문서만을 파일로 보관하고 관리되는 복사본만을 사용해야 한다. 원본문서의 보관기간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원본의 보관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문서는 전자문서 또는 출력물로 보관되어야 하며, 판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백업데이터(backup data)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전자문서에서는 접근제한, 변경관리, 고쳐 쓰기방지, 백업이 필수다. 이들 대책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전자문서로 문서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문서작성, 확인, 조사, 승인 규칙 예시>



【문서 보관】

- 종이문서(hard-copy papers)
 - 보관책임자와 보관 장소를 정해둔다.
 - CGMP문서, 절차서, 기록서의 원본은 품질관리부서가 바람직하다.
 - 필요하면 각 부서에 CGMP문서, 절차서, 기록서의 복사본을 배치한다.
 - 복사본을 충분히 관리한다.
 - 관리문서와 원자료(raw data)는 각 부서에서 관리한다.
 - 보관기간을 정해둔다.
- 전자문서(electronic data processing records)
 - 보관책임자를 정해둔다.
- 접근을 제한한다.
- 변경을 관리한다.
- 고쳐 쓰기를 방지한다.
- 백업을 한다.

Guidance for Industry

-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U.S. FDA]

Documentation

Documentation creates a mechanism that shows how products are manufactured and tested. Documenistation should define your organization's processes and capture every aspect of your manufacturing process. Documentation prevents errors of interpretation or loss of information that may result from reliance on verbal communication. Documentation also allows you to trace where any problems may have occurred and to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O Records

Records should be retained in either paper or electronic format. Records should capture in detail the operations, procedures, deviations from procedures, justifications, instructions (including training), specifications, protocols, reports, methods, precautions, corrections and other measures, and other appropriate information related to GMPs.

You should review raw material records to determine if raw material is adequately controlled. These records may include origin, receipt, examination, testing, disposition, and use records. You should determine whether disposition of rejected materials or returned goods is documented. (For example, reworking operations, returns to suppliers, and disposals).

You should evaluate batch production control records, which should include:

- Documentation of all ingredients (name, code, lot number, quantity, etc.) added to the batch
- Documentation of all production steps (for example, processing, handling, transferring, holding, and filling)
- In-process sampling, controlling, and adjusting steps
- Batch and finished product lot or control numbers
- The finished products control status -accepted or rejected

You should evaluate laboratory control records for raw materials, in-process materials, and finished products. These records should include documentation of sampling procedures, test results, and interpretation of the test results (accepts or reject).

You should determine if records are adequate to conduct an effective recall. Initial distribution records identifying the consignee, the product, and the lot or control number should be retained.

You should determine if records are developed in a timely manner after an event occurs.

5. 제5장 판정 및 감독

제30조(평가 및 판정)

- 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공정만을 행하는 업소는 별표 1에 따른 해당 공정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삭제<2012. 10. 16.>
 - 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 가표
 - 3.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조직
 - 4. 제조소의 시설내역
 - 5. 제조관리현황
 - 6. 품질관리현황
- ② 삭제<2012. 10. 16.>
- ③ 삭제<2012. 10. 16.>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고 별표 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공정만을 행하는 업소는 해당 공정을 증명서 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 설

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 제1 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1.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표
-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조직
 - 1)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조직 및 운영현황
 - 2) 품질책임자의 이력서
 - 3)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규정과 실시 현황
- 3. 제조소의 시설내역
 - 1) 제조소의 평면도(각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그 밖에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명 청과 출입문 및 복도 등을 표시한 1/100실측 평면도면)
 - 2) 공조 또는 환기시설 계통도
 - 3) 용수처리계통도
 - 4) 제조시설 및 기구내역(시설 및 기구명, 규격, 수량 등의 표시)
 - 5) 시험시설 및 기구내역(시설 및 기구명, 규격, 수량 등의 표시)
- 4. 제조관리현황
 - 1) 제조관리기준서 및 각종 규정목록
 - 2) 위 수탁제조 시 위 수탁 제조계약서 및 관리현황
 - 3) 작업소의 구분 및 출입에 관한 규정
 - 4) 작업소의 청소 소독방법과 관리현황
 - 5) 방충・방서관리 규정 및 실시현황
- 5. 품질관리현황
 - 1) 품질관리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교정 등 관리규정과 실시현황
 - 2) 제조용수관리 규정 및 시험실시 사례
 - 3) 품질관리 기기 및 기구에 대한 점검규정 및 기기대장
 - 4) 위 수탁시험 시 위 수탁시험 계약서 및 관리현황
-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서 및 실시현황을 첨부하며, 제조소의 평면도(1/100실측)는 대략적인 수치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제31조(우대조치)

- ① 삭제<2012. 10. 16.>
- ② 국제규격인증업체(CGMP, ISO9000) 또는 품질보증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에서 제공된 원료·자재는 제공된 적합성에 대한 기록의 증거를 고려하여 검사의 방법과 시험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는 정기 수거검정 및 정기 감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제30조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는 별표 3에 따른 로고를 해당 제조업소와 그 업소에서 제조한 화장품에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제32조(사후관리)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 별표 2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업소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법 제3조제1항(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화장품제조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 나.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변경)
 - 다.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 라. 제조 유형 변경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변경인 경우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의 이면기재로 변경신청을 한다. 그 외, 신청분류 및 제조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변경인 경우「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내 설비, 실 변경 등 내부적인 변경일 경우에는 사내변경관리 절차에 따른 자체적인 변경관리가 바람직하다.

[부록1]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6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 70호(2009. 8. 24,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14호(2011. 3. 24, 전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55호(2011. 9. 1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 106호(2012. 10. 1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 31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104호(2014. 3. 2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202호(2014. 12. 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 58호(2015. 9. 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2호(2020. 2. 2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 46호(2024. 8. 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삭제
- 2. "제조"란 원료 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1차포장) 등의 일련의 작

업을 말한다.

3. 삭제

- 4. "품질보증" 이란 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에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계획되고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 5. "일탈"이란 제조 또는 품질관리 활동 등의 미리 정하여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를 말한다.
- 6. "기준일탈 (out-of-specification)" 이란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검사, 측정 또는 시험결과를 말한다.
- 7. "원료"란 벌크 제품의 제조에 투입하거나 포함되는 물질을 말한다.
- 8. "원자재"란 화장품 원료 및 자재를 말한다.
- 9. "불만"이란 제품이 규정된 적합판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외부 정보를 말한다.
- 10. "회수"란 판매한 제품 가운데 품질 결함이나 안전성 문제 등으로 나타난 제조번호의 제품(필요시 여타 제조번호 포함)을 제조소로 거두어들이는 활동을 말한다.
- 11. "오염"이란 제품에서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 또는 이들이 조합되어 나타내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의 발생을 말한다.
- 12. "청소"란 화학적인 방법, 기계적인 방법, 온도, 적용시간과 이러한 복합된 요인에 의해 청정도를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눈에 보이는 먼지를 분리, 제거하여 외관을 유지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 13. "유지관리"란 적절한 작업 환경에서 건물과 설비가 유지되도록 이루 어지는 정기적·비정기적인 지원 및 검증 작업을 말한다.

- 14. "주요 설비"란 제조 및 품질 관련 문서에 명기된 설비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설비를 말한다.
- 15. "검교정"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기기나 측정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는 값과 표준기기의 참값을 비교하여 이들의 오차가 허용범위 내 에 있음을 확인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16. "제조번호" 또는 "뱃치번호"란 일정한 제조단위분에 대하여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로서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특정적인 조합을 말한다.
- 17. "반제품"이란 제조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필요한 제조공정을 더거쳐야 벌크 제품이 되는 것을 말한다.
- 18. "벌크 제품"이란 충전(1차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을 말한다.
- 19. "제조단위" 또는 "뱃치"란 하나의 공정이나 일련의 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갖는 화장품의 일정한 분량을 말한다.
- 20. "완제품"이란 출하를 위해 제품의 포장 및 첨부문서에 표시공정 등을 포함한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된 화장품을 말한다.
- 21. "재작업"이란 적합 판정기준을 벗어난 완제품, 벌크제품 또는 반제품을 재처리하여 품질이 적합한 범위에 들어오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 22. "수탁자"는 직원, 회사 또는 조직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회사 또는 외부 조직을 말한다.
- 23. "공정관리"란 제조공정 중 적합판정기준의 충족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조정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 24. "감사"란 제조 및 품질과 관련한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제조 및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 25. "변경관리"란 모든 제조, 관리 및 보관된 제품이 규정된 적합판정기준에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활동을 내부 조직의 책임하에 계획하여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26. "내부감사"란 제조 및 품질과 관련한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제조 및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사 내 자격이 있는 직원에 의해 행해지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 27. "포장재"란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말하며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외부 포장재는 제외한 것이다. 제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 는지 여부에 따라 1차 또는 2차 포장재라고 말한다.
- 28. "적합 판정 기준"이란 시험 결과의 적합 판정을 위한 수적인 제한, 범위 또는 기타 적절한 측정법을 말한다.
- 29. "소모품"이란 청소, 위생 처리 또는 유지 작업 동안에 사용되는 물품 (세척제, 윤활제 등)을 말한다.
- 30. "관리"란 적합 판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검증을 말한다.
- 31. "제조소"란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 32. "건물"이란 제품, 원료 및 포장재의 수령, 보관, 제조, 관리 및 출하

- 를 위해 사용되는 물리적 장소, 건축물 및 보조 건축물을 말한다.
- 33. "위생관리"란 대상물의 표면에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미생물 등 오염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작업을 말한다.
- 34. "출하"란 주문 준비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과 운송 수단에 적재하는 활동으로 제조소 외로 제품을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적자원

- 제3조(조직의 구성) ①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를 두어야한다.
 - ② 조직구조는 조직과 직원의 업무가 원활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회사의 규모와 제품의 다양성에 맞추어 적절하여야 한다.
 - ③ 제조소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직원의 책임)** ① 모든 작업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 1. 조직 내에서 맡은 지위 및 역할을 인지해야 할 의무
 - 2. 문서접근 제한 및 개인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
 - 3. 자신의 업무범위내에서 기준을 벗어난 행위나 부적합 발생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
 - 4. 정해진 책임과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의무
 - ② 품질책임자는 화장품의 품질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품질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절차의 검토 및 승인
- 2. 품질 검사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의 확인
- 3. 일탈이 있는 경우 이의 조사 및 기록
- 4. 적합 판정한 원자재 및 제품의 출고 여부 결정
- 5. 부적합품이 규정된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는지의 확인
- 6. 불만처리와 제품회수에 관한 사항의 주관
- 제5조(교육훈련) ①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각자의 직무와 책임에 적합한 교육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의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의 내용 및 평가가 포함된 교육훈련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수 있다.
 - ③ 교육 종료 후에는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새로 채용된 직원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훈련 외에 추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 하여야 한다.
- 제6조(직원의 위생) ①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② 작업소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등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 ④ 제조구역별 접근권한이 없는 작업원 및 방문객은 가급적 제조, 관리 및 보관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직원 위생에 대한 교육 및 복장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제 조

제1절 시설기준

- 제7조(건물) ① 건물은 다음과 같이 위치, 설계, 건축 및 이용되어야 한다.
 - 1. 제품이 보호되도록 할 것
 - 2.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 3. 제품, 원료 및 포장재 등의 혼동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할 것
 - ② 건물은 제품의 제형, 현재 상황 및 청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한다.
- 제8조(시설) ① 작업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제형에 따라 적절히 구획·구분되어 있어 교차오염 우려가 없을 것

- 2.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청소 또는 위생관리를 하기 쉽게 매끄러운 표면을 지니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을 것
- 3.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할 것
- 4.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할 것. 창문이 외부 환경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방법 으로 차단할 것
- 5. 작업소 내의 외관 표면은 가능한 매끄럽게 설계하고, 청소, 소독제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을 것
- 6. 적절하고 깨끗한 수세실과 화장실을 마련하고 수세실과 화장실은 접근이 쉬어야 하나 생산구역과 분리되어 있을 것
- 7. 작업소 전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처리절차를 마련할 것
- 8.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
- 9. 각 제조구역별 청소 및 위생관리 절차에 따라 효능이 입증된 세척 제 및 소독제를 사용할 것
- 10.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모품을 사용할 것
- ②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유지관 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도 또한 같다.
 - 2. 사용하지 않는 연결 호스와 부속품은 청소 등 위생관리를 하며, 건조

한 상태로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것

- 3. 설비 등은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설치 하며,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 4. 설비 등의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5. 벌크 제품의 용기는 먼지나 수분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을 것
- 6. 제품과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 및 배수관을 설치하며, 배수관은 역류되지 않아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것
- 7. 천정 주위의 대들보, 파이프, 덕트 등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노출된 파이프는 받침대 등으로 고정하고 벽에 닿지 않게 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할 것
- 8.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 도록 할 것
- 제9조(작업소의 위생) ①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조, 관리 및 보관 구역 내의 바닥, 벽, 천장 및 창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③ 제조시설이나 설비니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 또는 소독제는 효능이입증된 것을 사용하고 잔류하거나 적용하는 표면에 이상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제조시설이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① 건물, 시설 및 주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기록하여야 한다.
 - ② 결함 발생 및 정비 중인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고장 등사용이 불가할 경우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세척한 설비는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제조 관련 설비는 승인된 자만이 접근 ·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측정·시험장비 및 자동화 장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검교정 및 성능점검을 하고 기록해 야 한다.
 - ⑥ 유지관리 작업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절 원자재의 관리

- 제11조(입고관리) ① 화장품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여 입고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원자재의 입고 시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운송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 ③ 원자재 용기에 제조번호를 표시하고,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원자재 입고절차 중 육안확인 시 물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입고를 보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입고된 원자재는 "적합", "부적합", "검사 중" 등으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수준의 보증이 가능한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다.
- ⑥ 원자재 용기 및 시험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 2. 원자재 공급자명
 - 3. 수령일자
 - 4.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 제12조(출고관리) 원자재는 시험결과 적합판정된 것만을 선입선출방식으로 출고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 제13조(보관관리) ①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한을 설정하여야 한 다.
 - ②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가능한 선입선출에 의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설정된 보관기간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시 스템을 확립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통해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 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제14조(물의 품질) ① 물의 품질 적합기준은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하여 야 한다.
 - ② 물의 품질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고 필요시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물 공급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물의 정체와 오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 2.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을 것
 - 3. 살균처리가 가능할 것

제3절 제조관리

- 제15조(기준서 등) ① 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합성을 보장하는 기본 요건 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따른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및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품표준서는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품명
 - 2. 작성연월일
 - 3. 효능・효과(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4. 원료명, 분량 및 제조단위당 기준량
- 5. 공정별 상세 작업내용 및 제조공정흐름도
- 6. 삭제
- 7. 작업 중 주의사항
- 8. 원자재 · 반제품 · 벌크 제품 ·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 9.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 10. 보관조건
- 11.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12. 변경이력
- 13. 삭제
-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제조관리기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작업소의 출입제한
 - 나. 공정검사의 방법
 - 다. 사용하려는 원자재의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라. 재작업절차
 - 2. 시설 및 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시설 및 주요설비의 정기적인 점검방법
 - 나. 삭제
 - 다. 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 방법
 - 3. 원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입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및 포장의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과 훼손되었을 경우 그 처리방법
- 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 다.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
- 라. 취급 시의 혼동 및 오염 방지대책
- 마. 출고 시 선입선출 및 칭량된 용기의 표시사항
- 바. 재고관리
- 4.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입・출하 시 승인판정의 확인방법
 - 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 다. 출하 시의 선입선출방법
- 5. 위탁제조에 관한 사항
- 가. 원자재의 공급, 반제품, 벌크제품 또는 완제품의 운송 및 보관 방법 나. 수탁자 제조기록의 평가방법
- ④ 품질관리기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삭제
 - 2. 시험검체 채취방법 및 채취 시의 주의사항과 채취 시의 오염방지대책
 - 3.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의 점검(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 방법)
 - 4. 안정성시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5. 완제품 등 보관용 검체의 관리
 - 6. 표준품 및 시약의 관리
 - 7. 위탁시험 또는 위탁제조하는 경우 검체의 송부방법 및 시험결과의

판정방법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 제조위생관리기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작업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의 파악·조치방법
 - 2. 작업원의 수세, 소독방법 등 위생에 관한 사항
 - 3. 작업복장의 규격, 세탁방법 및 착용규정
 - 4. 작업실 등의 청소(필요한 경우 소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법 및 청소주기
 - 5. 청소상태의 평가방법
 - 6.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
 - 7.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는 방법 및 점검주기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칭량) ① 원료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기나 설비에 정확하게 칭량 되어야 한다.
 - ② 원료가 칭량되는 도중 교차오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 제17조(공정관리) ① 제조공정 단계별로 적절한 관리기준이 규정되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결과는 보고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벌크 제품은 품질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용기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며 용기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1. 명칭 또는 확인코드
 - 2. 제조번호
 - 3. 완료된 공정명

- 4.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조건
- ③ 벌크 제품의 최대 보관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최대 보관기간이 가까워진 벌크 제품은 완제품 제조하기 전에 재평가해야 한다.
- 제18조(포장작업) ① 포장작업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포장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지시서에 의해수행되어야 한다.
 - 1. 제품명
 - 2. 포장 설비명
 - 3. 포장재 리스트
 - 4. 상세한 포장공정
 - 5. 포장지시수량
 - ③ 포장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작업 관련 문서의 완비여부, 포장설비의 청결 및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19조(보관 및 출고) ①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하의 정해진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고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② 완제품은 시험결과 적합으로 판정되고 품질부서 책임자가 출고 승인한 것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 ③ 출고는 선입선출방식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출고할 제품은 원자재,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과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

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품질관리

- 제20조(시험관리) ①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업무에 대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원자재·반제품·벌크 제품·완제품에 대한 적합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번호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③ 시험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인지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원자재·반제품·벌크 제품·완제품은 적합판정이 된 것만을 사용하거나 출고하여야 한다.
 - ⑤ 정해진 보관 기간이 경과된 원자재·반제품·벌크 제품은 재평가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 ⑥ 모든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시험기록은 검토한 후 적합, 부 적합, 보류를 판정하여야 한다.
 - ⑦ 기준일탈이 된 경우는 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사하여 야 한다. 조사결과는 책임자에 의해 일탈, 부적합, 보류를 명확히 판정하 여야 한다.
 - ⑧ 표준품과 주요시약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개봉일
 - 3. 보관조건

- 4. 사용기한
- 5. 역가, 제조자의 성명 또는 서명(직접 제조한 경우에 한함)
- 제21조(검체의 채취 및 보관) ①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채취하고, 채취한 후에는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하며,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명칭 또는 확인코드
 - 2. 제조번호
 - 3. 검체채취 일자
 - ③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조건 하에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단위별로 사용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2조(폐기처리 등) ①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품질책임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작업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③ 재작업을 할 수 없거나 폐기해야 하는 제품의 폐기처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 대상은 따로 보관하고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 제23조(위탁계약) ①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있어 공정 또는 시험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조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에

위탁제조하는 것을 권장한다.

- ③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의 계약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④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확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업체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⑤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에 대해 계약에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탁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⑥ 수탁업체에서 생성한 위·수탁 관련 자료는 유지되어 위탁업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 제24조(일탈관리) 제조 또는 품질관리 중의 일탈에 대해 조사를 한 후 필 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일탈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 야 한다.
- 제25조(불만처리) ① 불만처리담당자는 제품에 대한 모든 불만을 취합하고, 제기된 불만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1. 불만 접수연월일
 - 2. 불만 제기자의 이름과 연락처(가능한 경우)
 - 3. 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포함한 불만내용
 - 4. 불만조사 및 추적조사 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 대책
 - 5. 다른 제조번호의 제품에도 영향이 없는지 점검
 - ② 불만은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26조(제품회수) ① 화장품제조업자는 제조한 화장품에서 「화장품법」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회수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1. 전체 회수과정에 대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의 조정역할
 - 2. 결함 제품의 회수 및 관련 기록 보존
 - 3.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회수의 경우 회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수행
 - 4. 회수된 제품은 확인 후 제조소 내 격리보관 조치(필요시에 한함)
 - 5. 회수과정의 주기적인 평가(필요시에 한함)
- 제27조(변경관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제조공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하고 품질책임자에 의해 승인된 후 수행하 여야 한다.
- 제28조(내부감사) ① 품질보증체계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내부감사 계획 및실행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감사자는 감사대상과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사 결과는 기록되어 경영책임자 및 피감사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감사 중에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④ 감사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후속 감사활동을 행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29조(문서관리) ① 화장품제조업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보증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포함한 관리방침을 문서화하며 전 작업원들이 실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문서의 작성 및 개정·승인·배포·회수 또는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문서는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문서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서명과 승인연월일이 있어야 한다.
 - ④ 문서의 작성자·검토자 및 승인자는 서명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문서를 개정할 때는 개정사유 및 개정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권한을 가진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 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 ⑥ 원본 문서는 품질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사본은 작업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 ⑦ 문서의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⑧ 작업자는 작업과 동시에 문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⑨ 기록문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하려는 글자 또는 문장 위에 선을 그어 수정 전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수정된 문서에는 수정사유, 수정연월일 및 수정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⑩ 모든 기록문서는 적절한 보존기간이 규정되어야 한다.
 - ① 기록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기 위해 백업파일 등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판정 및 감독

- 제30조(평가 및 판정) 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공정만을 행하는 업소는 별표 1에 따른 해당 공정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삭제<2012. 10. 16.>
 - 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표
 - 3.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조직
 - 4. 제조소의 시설내역
 - 5. 제조관리현황
 - 6. 품질관리현황
 - ② 삭제<2012. 10. 16.>
 - ③ 삭제<2012. 10. 16.>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고 별표 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공정만을 행하는 업소는 해당 공정을 증명서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우대조치) ① 삭제<2012. 10. 16.>

- ② 국제규격인증업체(CGMP, ISO9000) 또는 품질보증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에서 제공된 원료·자재는 제공된 적합성에 대한 기록의 증거를 고려하여 검사의 방법과 시험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는 정기 수거검정 및 정기감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제30조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는 별표 3에 따른 로고를 해당 제조업소와 그 업소에서 제조한 화 장품에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 제32조(사후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 별표 2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 적합업소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 - 31호, 2013. 4.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 104호, 2014. 3.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 202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하여 평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 다.

부칙 <제2015 - 58호, 2015. 9.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제조업자가 신청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20 - 12호, 2020. 2.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4 - 46호, 2024. 8.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후 화장품제조업자가 신청하는 우수화장품 제 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26호, 2024. 8.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후 화장품제조업자가 신청하는 우수화장품 제 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화장품 군별 분류

<삭제>

2. 공정별 분류

| 연번 | 일부 공정 |
|----|-------------|
| 1 | 벌크 제조 |
| 2 | 충전·포장(1차포장) |

[별표 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표

I . 제조업소 현황

| | 업 소 명 | |
|-----------------|-------------|------------------------------|
| | 소 재 지 | |
| 신 청 인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품질책임자 | 연 락 처 |
| | 신청 담당자 | 연 락 처 |
| | 제조 작업소 | 보 관 소 |
| 제조소의 면적 (m²) | 품질관리 시험실 | 기 타 |
| | 합 계 | |
| 신청분류 | 전 공정 | 일부 공정 벌크 제조 충전 · 포장(1차포장) |
| 20211 | | |
| 작 업 인 원 | 제조관련부서 | 품 질 부 서 |
| (명) | 기타 작업원 | 합계 |
| 스 타 zl | 업 소 명 | 대 표 자 |
| 수 탁 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Ⅱ.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표

| 항목 및 평가내용 | 적부판정 (O/X) | 비고 |
|---|---------------|----|
| 제2장 인적자원 제3조 조직의 구성 | | |
| 가.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가 있는가? | | |
| 나. 조직구조가 업무의 원활히 이해되도록 규정되고 회사의 규모와 제품의 다양성이 적절한가? | | |
| 다. 제조소에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 는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 | |
| 제4조 직원의 책임 | | |
| 가. 모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가? 1) 조직 내에서 맡은 지위 및 역할의 인지 2) 문서접근 제한 및 개인위생 규정의 준수 3) 자신의 업무범위내에서 기준을 벗어난 행위나 부적합 발생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 4) 정해진 책임과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 | |
| 나. 품질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1) 품질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절차의 검토 및 승인 2) 품질 검사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의 확인 3) 일탈이 있는 경우 이의 조사 및 기록 4) 적합 판정한 원자재 및 제품의 출고 여부 결정 5) 부적합품이 규정된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는지의 확인 6) 불만처리와 제품회수에 관한 사항의 주관 | | |
| 제5조 교육훈련 | | |
| 가.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각 자의 직무와 책임에 적합한 교육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나.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모든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가? | | |
| 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평가가 포함된 교육 훈련 규정이 작 성되어 있는가? | | |
| 라. 교육 후에 교육결과를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 우에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마.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훈련 외에 추가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고 이와 | | |

| | 관련한 문서화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제6조 | 직원의 위생 | |
| 가. |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나. | 작업소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들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는가? | |
| 다. | 제조구역별 접근권한이 없는 작업원 및 방문객은 가급적 출입을 제한한 규정과 질병에 걸린 직원이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가? | |
| 1 | 장 제조 널 시설기준 | |
| 제7조 | 건물 | |
| 가. | 건물은 다음과 같이 위치, 설계, 건축 및 이용되고 있는가? | |
| 1) | 제품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는가? | |
| 2) | 청소 등 위생관리와 유지관리를 하는가? | |
| 3) | 제품, 원료 및 포장재 등의 혼동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는가? | |
| 나. | 건물은 제품의 제형, 현재 상황 및 청소 등을 고려하여 설계 되었는가? | |
| 제8조 | 시설 | |
| 가. | 제조작업을 행하는 작업소가 있는가? | |
| 1) |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제형에 따라 적절히 구획·구분 되어 있어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가? | |
| 2) | 바닥, 벽, 천장은 청소 또는 위생관리를 하기 쉽게 매끄러운 표면을 지니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소독제 등의 부 식성에 저항력이 있는가? | |
| 3) |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한가? | |
| 4) |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가능하면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창문이 외부 환경으로 열리는 경우,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적절히 차단되어 있는가? | |
| 5) | 작업소 내의 외관표면은 매끄럽게 설계되고, 청소, 소독제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는 것인가? | |
| 6) | 적절하고 깨끗한 수세실과 화장실을 마련하고 수세실과 | |

|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나 생산구역과 분리되어 있는 가? | |
|---|---|
| 7) 작업소 전체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고 제품 보호를 위해 조명의 파손시 방지대책이 있는가? | |
| 8)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 9) 각 제조구역별 청소 및 위생관리 절차에 따라 효능이 입증된 세척제 및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10)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모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등은 다음에 적합한가? | |
| 1)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시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가? | |
| 2) 사용하지 않는 물품(연결호스, 부속품 등)은 청소 등 위생 관리를 하며,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오염으로부터 보호 하고 있는가? | |
| 3) 설비 등은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설치되고 있으며,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반응을 일으 키지 않는가? | |
| 4) 설비 등의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 |
| 5) 벌크 제품의 용기는 먼지나 수분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 할 수 있는가? | |
| 6) 제품과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 및 배수관은 설치하 며, 배수관은 역류되지 않고, 청결을 유지하는가? | |
| 7) 천정 주위의 대들보, 파이프, 덕트 등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노출된 파이프는 받침대 등으로 고정하 고 벽에 닿지 않게 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는가? | - |
| 8)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가? | |
| 제9조 작업소의 위생 | |
| 가. 곤충, 해충이나 쥐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있는가? | |
| 나. 생산, 관리 및 보관 구역 내의 바닥, 벽, 천장 및 창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

| 다. > | 제조시설이나 설비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 또는 소독제는 | |
|---------------------|---|--|
| 2 | 효능이 있으며 잔류하거나 적용하는 표면에 이상을 초래 | |
| - | 하지 않는가? | |
| 라. > | 제조시설이나 설비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필요시 위생관 | |
| i | 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제10조 | 유지관리 | |
| , | 건물, 시설 및 주요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기록하고 있는가? | |
| 1 | 결함 발생 및 정비 중인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고장 등 사용이 불가함을 표시하여 분리하고 있는가? | |
| | 세척한 설비는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
| | 모든 제조 관련 설비는 승인받은 자만이 접근·사용하고 있는가? | |
| , |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측정·시험장비 및 자동화장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검교정 및 성능 점검을 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 |
| 바 | 유지관리 작업이 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 |
| | 원자재의 관리 입고관리 | |
| | 원자재 공급자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여 입고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원자재 입고시 구매요구서, 성적서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 는지 확인하는 등 절차가 있는가? | |
| | 원자재 용기에 제조번호를 표시하고, 제조번호가 없는 경 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는가? | |
| | 원자재 입고시 물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 |
| 1 | 입고된 원자재는 상태(적합, 부적합, 검사중) 표시를 하고 있는가? | |
| | 원자재 용기 및 시험기록서에 다음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가? | |
| · / |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 |
| I ′ | 원자재 공급자명 | |
| / | 수령일자 | |
| $\lfloor 4 \rfloor$ |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 |

| 제12조 출고관리 | |
|--|----------|
| 가. 원자재 시험결과 적합판정된 것만을 선입선출방식으로 출.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가? | 고 |
| 제13조 보관관리 | |
| 가.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 아니하는 조건에서 선입선출에 의하여 출고할 수 있도 보관하고 있는가? | |
| 나.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않도 보관하고 가능한 선입선출에 의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보 하는가? | |
| 다.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에서 보관하고 있는가?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침 | 가 |
| 라.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의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여부에 대한 재평가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고, 해당 간 경과 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
| 제14조 물의 품질 | |
| 가. 물의 품질 적합기준이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기 | - |
| 나. 물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가? | |
| 다. 물 공급 설비는 다음을 만족하는가? 1) 물의 정체와 오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2)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을 것 3) 살균처리가 가능할 것 | |
| 제3절 제조 관리 제15조 기준서 등 | |
| 가. 제품표준서는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작성하여 구비하고 있는가? 1) 제품명 2) 작성연월일 3) 효능·효과(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학4) 원료명, 분량 및 제조단위당 기준량 5) 공정별 상세 작업내용 및 제조공정흐름도 6) 작업 중 주의사항 7) 원자재·반제품·벌크 제품·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8)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 ठुं}- |
| 9) 세조 및 품질관디에 필요한 시절 및 기기 9) 보관조건 10)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

| 11) 변경이력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 나.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구비하고 있는가? 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작업소의 출입제한 나) 공정검사의 방법 다) 사용하려는 원자재의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라) 재작업절차 2) 시설 및 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시설 및 주요설비의 정기적인 점검방법 나) 계측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 방법 3) 원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입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및 포장의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과 훼손되었을 경우 그 처리방법 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다)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 라) 취급 시의 혼동 및 오염 방지대책 마) 출고 시 선임선출 및 청량된 용기의 표시사항 바) 재고관리 4)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입ㆍ출고 시 승인판정의 확인방법 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다) 출고 시의 선입선출방법 5) 위탁제조에 관한 사항 가) 원자재의 공급, 반제품ㆍ벌크 제품 또는 완제품의 운송 및 보관 방법 나) 수탁자 제조기록의 평가방법 | |
| 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구비하고 있는가? 1) 시험검체 채취방법 및 채취 시의 주의사항과 채취 시의 오염방지대책 2)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의 점검(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방법) 3) 안정성시험(해당하는 경우) 4) 원료 및 완제품 등 보관용 검체의 관리 5) 표준품 및 시약의 관리 6) 위탁시험 또는 위탁제조하는 경우 검체의 송부방법 및 시험결과의 판정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 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구비 | |

| 하고 있는가? 1) 작업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의 파악·조치방법 2) 작업원의 수세, 소독방법 등 위생에 관한 사항 3) 작업복장의 규격, 세탁방법 및 착용규정 4) 작업실 등의 청소(필요한 경우 소독을 포함한다. 이하 전다) 방법 및 청소주기 5) 청소상태의 평가방법 6)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 7)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는 방법 및 점검주기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1- (1- |
|---|------------|
| 제16조 칭량 | |
| 가. 원료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기나 설비에 정확하기 칭량하고 있는가? | 1) |
| 제17조 공정관리 | |
| 가. 제조공정 단계별로 적절한 관리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결과는 보고되고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 |
| 나. 벌크 제품은 품질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용기에 어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는가? | 5 |
| 다. 벌크 제품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가? 1) 명칭 또는 확인코드 2) 제조번호 3) 완료된 공정명 4)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조건 | |
| 라. 벌크 제품의 최대 보관기간이 규정되어 있는가? 최대 보관기간이 가까워진 벌크 제품은 완제품 제조하기 전에 제공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제18조 포장작업 | |
| 가. 포장작업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하는 있는가? | 2 |
| 나.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지시서에 의해 포장작업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1) 제품명 2) 포장 설비명 3) 포장재 리스트 4) 상세한 포장공정 5) 포장지시수량 |] |

| 다. | 포장작업 시작 전 포장관련 문서완비 여부, 포장설비의 청결 및 작동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절차가 있는가? | |
|----------------------|--|--|
| 제192 | C 보관 및 출고 | |
| 가. |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하의 정해진 장소에서 보관되고 주기적으로 완제품의 재고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나. | 시험결과 적합으로 판정되고 품질책임자가 출고 승인한 것만을 출고하고 있는가? | |
| 다. | 출고할 제품은 원자재,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과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는가? | |
| 라. | 출고는 선입선출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 |
| | 상 품질 보증 & 시험 관리 | |
| 가. |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업무에 대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하고 유지하고 있는가? | |
| 나. | 원자재·반제품·벌크 제품·완제품에 대한 적합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번호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있는가? | |
| 다. | 모든 시험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시험기록은 검토되고 있으며, 적/부/보류 등을 명백히 결정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 |
| 라. | 원자재·반제품·벌크 제품·완제품을 적합판정 된 것만 사용·출고하고 있는가? | |
| 마. | 정해진 보관기간이 경과된 원자재·반제품·벌크 제품은 재평가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가? | |
| 바. | 기준일탈이 된 경우에 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사하고 있는가? 조사결과는 책임자에 의해 일탈, 부적합, 보류를 명확하게 판정하고 있는가? | |
| 1) 2) 3) 4) | 표준품과 주요시약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명칭 개봉일 보관조건 유효기간 역가, 제조자의 성명 또는 서명(직접 제조한 경우에 한함) | |
| 제212 | 은 검체의 채취 및 보관 | |

| 가. 시험용 검체를 채취한 후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하고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가? | |
|--|--|
| 나.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1) 명칭 또는 확인코드 2) 제조번호 3) 검체채취 일자 | |
| 다.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를 적절한 보관조건 하에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단위별로 사용기한까지 보관하고, 개봉 후 사 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
| 제22조 폐기처리 등 | |
| 가.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 작업 여부가 품질책임자의 승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가? | |
| 나. 가.에 따라 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작업 절차를 따르 고 있는가? | |
| 다. 재작업을 할 수 없거나 폐기해야 하는 제품의 폐기처리규정 이 작성되어 있고, 폐기 대상은 따로 보관하고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하고 있는가? | |
| 제23조 위탁계약 | |
| 가.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있어 공정 또는 시험의 일부 위탁과 관련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유지하였는가? | |
| 나. 제조업무 위탁 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된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위탁제조하고 있는가? | |
| 다.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의 계약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하였는가? | |
| 라.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에 대해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확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탁업체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 | |
| 마. 수탁업체에 대해 계약에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바. 수탁업체의 모든 데이터가 유지되어 위탁업체에서 이용가능 한가? | |
| 제24조 일탈관리 | |

| 가. 제조 또는 품질관리 중의 일탈에 대해 조사한 후 필요한 조 치를 마련하고 일탈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 어졌는가? | |
|--|--|
| 제25조 불만처리 | |
| 가. 불만처리담당자는 제품에 대한 모든 불만을 취합하고, 제기된 불만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조치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 유지하였는가? 1) 불만 접수연월일 2) 불만 제기자의 이름과 연락처(가능한 경우) 3) 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포함한 불만내용 4) 불만조사와 추적조사 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 대책 5) 다른 제조번호의 제품에도 영향이 없는지를 점검 | |
| 나. 불만은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 하고 있는가? | |
| 제26조 제품회수 | |
| 가. 화장품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통하여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 |
| 나.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회수 책임자가 있는가? 1) 전체 회수과정에 대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의 조정역할 2) 결함 제품의 회수 및 관련 기록 보존 3)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회수의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자를 통하여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4) 회수된 제품은 확인 후 제조소 내 격리보관 조치(필요시에 한함) 5) 회수과정의 주기적인 평가(필요시에 한함) | |
| 제27조 변경관리 | |
| 가. 품질책임자의 승인 하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 재, 제조공정 등을 변경하고 이를 문서화 하였는가? | |
| 제28조 내부감사 | |
| 가. 품질보증체계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 하기 위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내부감사 계획 및 실행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 |
| 나. 감사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감사 대상과 독립적인가? | |
| 다. 감사 결과가 기록되어 경영책임자 및 피감사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유되고 감사 중에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시정조치가이뤄지고 있는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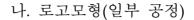
| 라. 시정조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후속 감사활동을 행하고 이를 기록하였는가? | |
|---|--|
| 제29조 문서관리 | |
| 가.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보증에 대한 목 표와 의지를 포함한 관리방침을 정하고 문서화하여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이해되고 실행되도록 하고 있는가? | |
| 나. 모든 문서의 작성·개정·배포·회수·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유지하고 있는가? | |
| 다. 작성된 문서에 권한을 가진 사람의 서명과 승인연월일이 있는가? | |
| 라. 문서의 작성자·검토자 및 승인자의 서명은 등록되어 있는가? | |
| 마. 개정된 문서에 개정사유, 개정연월일, 권한을 가진 사람의 승인 및 개정번호가 있는가? | |
| 바. 원본 문서는 품질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사본은 작업자 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사용하고 있는가? | |
| 사. 문서는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 |
| 아. 문서의 기록은 작업자가 작업과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작성 하였는가? | |
| 자. 수정된 경우 수정하려는 글자 또는 문장 위에 선을 그어 수정 전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수정된 문서에는 수정 사유, 수정연월일 및 수정자의 서명이 있는가? | |
| 차. 모든 기록문서에 적절한 보존기간이 규정되어 있는가? | |
| 카. 기록의 훼손 및 소실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파일 등 자료를 유지하고 있는가? | |

[별표 3]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로고

1. 표시기준

가. 로고모형(전 공정)







2. 표시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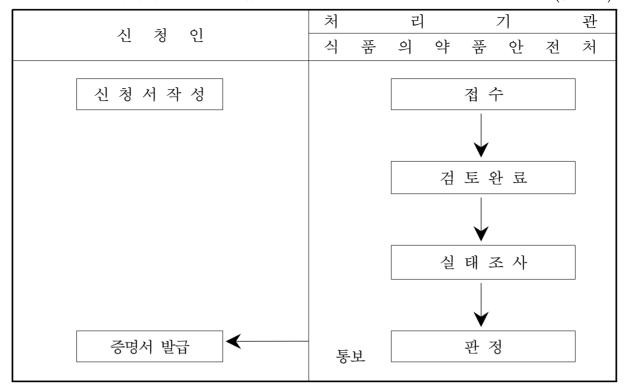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삭제<2012. 10. 16>

| [별지 | 제1호 | 서식] | | | | | | | | | | | | (앞 | 면) |
|-------|-------|----------|----------|------|-----------------|-----------------|------|----------|-----|------------|------------------------------|----------|---------|--------------|----------|
| 우 | -수화정 | 상품 | 제. | 조 및 | 품: | 질관 [;] | 리기준 | 실 | 시상 | ·황 | 평가 | 신청 | 서 | 처리? | |
| 제 | 조 업 | | 곀 | | | | | | | | | | | 909 | <u> </u> |
| | | | | | | | | | | | | | | | |
| 소 | 재 | | 지 | | | | | | | | | | | | |
| 대 | 丑 | <u>-</u> | 자 | | | | T | | | | | | | | |
| 제결 | 조소의 | 면 2 | 적 | 작 | 업 | 소 | | | | 보 | 관 | 소 | | | |
| (| m² | _ |) | 시 | 험 | 실 | | | | 기 | | 타 | | | |
| | | | | 합 | 33 | 계 | | | . | | | | | | |
| 작 | 업 숙 | <u>)</u> | 원 | | 관련 | | | (|) | | 질 - | | | (| |
| | | | | 기브 | }작 ⁹ | 집 원 | | <u>(</u> |) | 합 | 일 : | 계 변 3 | 공 정 | (|) |
| | 신 청 년 | 분 류 | | | 전 | 공 | 정 | | 벌 : | 크. | _크 ' 제 <i>조</i> | | 충 전 | l · 포 포 장 | |
| | | | | | | | | | | | | | ` | | Í |
| | 「우수회 | 라 장 품 | - - ス | 메조 및 | 및 품 | -질괸 | :리기준 | <u>.</u> | 제30 | 조0 | 에 따를 | 른 우 | 수화 | 장품 7 | 세조 |
| 및 | 품질관 | 난리기 | [준 | 실시 | 상황 | 평기 | 가를 신 | 청호 |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1 | | 43 | | | | | | |
| | | | | | | 년 | 월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 인 | | | (서명 | 병 또는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품의 | 약품 | 한 | 전처 | 장 - | 귀하 | | | | | | | | | |
| | 구비서투 | 루: 뒷 | 면 | 참조 | | | | | | | | | | 수수 | |
| | | . / (| _ | _ | | | | | | | | | | 없. | 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구비서류>

- 1. 삭제<2012. 10. 16>
- 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3회 이상 적용 · 운영한 자체평가표
- 3.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조직
- 1)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조직 및 운영현황
- 2) 품질책임자의 이력서
- 3)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규정과 실시 현황
- 4. 제조소의 시설내역
- 1) 제조소의 평면도(각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그 밖에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명칭과 출입문 및 복도 등을 표시한 1/100실측 평면도면)
- 2) 환기시설 계통도
- 3) 용수처리계통도
- 4) 제조시설 및 기구내역(시설 및 기구명, 규격, 수량 등의 표시)
- 5) 시험시설 및 기구내역(시설 및 기구명, 규격, 수량 등의 표시)

5. 제조관리현황

- 1) 제조관리기준서 및 각종 규정목록
- 2) 위 · 수탁제조 시 위 · 수탁 제조계약서 및 관리현황
- 3) 작업소의 구분 및 출입에 관한 규정
- 4) 작업소의 청소 · 소독방법과 관리현황
- 5) 방충 · 방서관리 규정 및 실시현황

6. 품질관리현황

- 1) 품질관리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검교정 등 관리규정과 실시현황
- 2) 제조용수관리 규정 및 시험실시 사례
- 3) 품질관리 기기 및 기구에 대한 점검규정 및 기기대장
- 4) 위 · 수탁시험 시 위 · 수탁시험 계약서 및 관리현황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제 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

- 1. 업 소 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 4. 신청분류:

위의 화장품 제조업소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0조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로 판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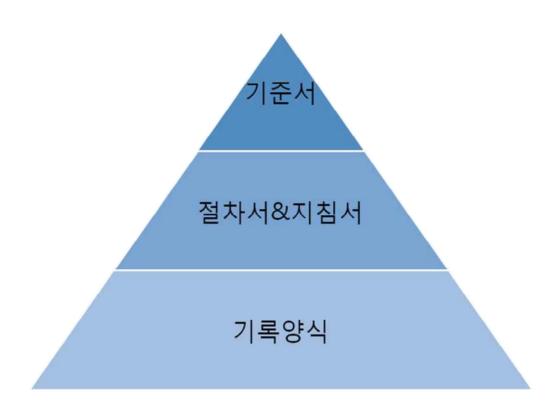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

| | | | | (뒤 쪽) |
|-------|----|--------|---|-------|
| | 변경 | 및 처분사항 | | |
| 연 월 일 | | 내 |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2] 기준서 예시

■ 화장품 GMP 관련 관리문서의 체계



□ 기준서

특정 물품의 검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 절차서

어떠한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여 기재한 문서

□ 지침서

회사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

□ 기록양식

각종 기록 장치에서의 정보의 기록 방식 및 서식(계획서, 보고서, 회의록 등)

※ 관리 문서 예시

| 기준서 | 절차서&지침서 | 기록양식 |
|---------------|--------------------|--|
| , _ , | 제조 공정 관리 절차서 | 제조 지시 및 기록서, 작업 표시서 등 |
| | 원료관리 절차서 | 원료 입출고 관리 대장, 원료 보관 관리 점검 표, 원료 시험 의뢰 및 결과 통보서, 원료 표시 라벨 등 |
| | 부자재 관리 절차서 | 부자재 입출고 관리대장, 부자재 보관 관리 점 검표, 부자재 시험 의뢰 및 결과 통보서, 부자 재 표시 라벨 등 |
| | 충진 포장 공정관리 절차서 | 충진·포장 지시 및 기록서 |
| | 벌크제품 관리 절차서 | 벌크제품 입출고 관리 대장, 벌크제품 보관 관리 점검표, 벌크제품 시험 의뢰 및 결과 통보서 등 |
| 제조관리 기준서 | 완제품 관리 절차서 | 완제품 입출고 관리 대장, 완제품 보관 관리 점검표, 완제품 시험의뢰 및 결과 통보서 등 |
| | 부적합품 관리 지침서 | 부적합 보고서 등 |
| | 변경 관리 절차서 | 변경관리 보고서 등 |
| | 정제수 제조장치 관리 지침서 | 정제수 제조설비 점검 기록서, 정제수 제조설 비 세척 및 소독 기록서, 정제수 계통도 등 |
| | 설비기구 세척 및 소독관리 지침서 | 설비 세척 및 소독 관리 표준, 설비 세척 및 소독 관리 점검표 등 |
| | 건물 시설 및 설비 관리 절차서 | 설비 이력카드, 설비 관리대장, 공조조화기 점 검기록서, 콤프레샤 점검기록서, 보일러 운전일 지, 설비별 점검기록서, 건물 청소 점검기록서, 설비 상태 표시서 등 |
| | 작업원 위생 관리 절차서 | - |
| | 작업원 건강 관리 지침서 | 건강문진표, 질병 발생 및 신고 조치서 등 |
| 제조위생 | 작업장 위생 관리 절차서 | 작업장 출입자 기록서, 작업장 위생 관리 기록서, 온습도 및 차압 점검 기록서, 반입 금지 품목 등 |
| 관리 기준서 | 작업장 청소 및 소독 관리 지침서 | 청소 및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세제, 작업장 별 표준 청소 및 소독 방법 등 |
| | 작업원 수세 및 소독 관리 지침서 | 손세척·소독방법 등 |
| | 위생복 착용 지침서 | 위생복 착용 관리 등 |
| | 방충 및 방서 관리 지침서 | 방충·방서 도면, 방충·방서 점검 내역 등 |
| | 계측기 검교정 관리 절차서 | 계측기 관리 대장, 내부 검정 기록서, 일일 저 울 점검표(제조/생산), 일일 저울 점검표(실험 실), 일일 PH 미터 점검표, 검교정 계획서, 검 교정 식별 라벨 등 |
| | 시액 및 시약관리 지침서 | 시액 및 시약 라벨 등 |
| | 표준품 관리 지침서 | 표준품 관리대장(완제품), 표준품 관리 대장(부 자재), 표준품 라벨 등 |
| | 미생물 시험 지침서 | _ |
| 품질관리 | 낙하균 측정 지침서 | 낙하균 시험 기록서 등 |
| 기준서 | 검체의 채취 및 보관 절차서 | 관리품 라벨 등 |
| | 분석장비 Validation | GC Validaton 결과서, HPCL Validaton 결과 서, TOC Validaton 등 |
| | OSS 관리 절차서 | 업무 흐름도, 실험실 조사 보고서, 공정 조사 보고서 등 |
| | 안정성 시험 지침서 | 안정성 시험 관리 대장, 안정성 시험 표시 라벨 등 |
| | 검사 및 시험 절차서 | 부자재 시험 성적서, 벌크 제품 시험 성적서, 완제품 시험 성적서 등 |
| | 부자재 입고 검사 지침서 | 부자재 샘플링 기준 및 검사 기준표 등 |
| 11 11 11 2 11 | 정제수 관리 지침서 | 정제수 일일 시험 일지 등 |
| 제품표준서 | | 제품표준서 등록 대장 |

| | | 제정일자 | |
|--------|------------|------|------------|
| 제조관 | 리기준서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1 / 10 |

| | ~~: | | |
|-------|------|----|----------------------|
| ▶ 개정이 | 력 | |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내용 | 작성자 |
| | 7000 | | Annual Protes Spar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 | | | |
|------|----|----|----|
| 구분 | 작성 | 검토 | 승인 |
| 부서 | | | |
| 직책 | | | |
| 성명 | | | |
| 서명 | | | |
| 일자 | | | |

| ▶ 배포처 | | | | |
|----------------------|------|--|---|--|
| ull vz +l | 부서명 | | | |
| 배포처 | 사본번호 | | 2 | |

| | | 제정일자 | |
|--------|-------------|------|------------|
| 제조관리 | 리기준서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2 / 10 |

1. 목적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각 공정에서의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여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제조공정에 따른 원료칭량부터 최종 완제품의 포장 및 창고입고까지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공정 전반에 걸친 품질에 관한 중요사항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3. 업무내용

- 3.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3.1.1 작업소의 출입제한

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소의 환경을 보호·유지하고,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소 출입을 제한한다.

- 1) 작업원
 - 가) 작업소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규정에 따라 갱의실을 거쳐 출입한다.
 - 나) 작업원은 갱의실에서 규정된 작업복과 작업모, 작업화를 착용한 후 출입한다.
 - 다) 작업소 내의 각 작업장의 출입은 해당 작업원 및 품질보증팀원과 작업과 관련되어 사전에 허가를 득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2) 외부인사
- 가) 외부인사는 사전 승인 없이 공장건물 및 생산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 나) 공장건물의 출입은 반드시 관계자의 승인 및 안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3.1.2 공정검사의 방법

화장품 제조공정의 검사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검사를 실시한다.

- 1) 제조공정 검사는 반제품 검사 담당자가 반제품 검사 절차에 따라 제조 전 점검 사항의 기록여부 및 제조기록서를 통해 실시한다.
- 2) 충전·포장공정 검사는 공정검사 담당자가 공정검사 절차에 따라 포장지시기록서 및 라인검사를 통해 실시한다.
- 3.1.3 사용하려는 원자재의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1) 원자재보관소 담당자는 원자재 입고 시 대기보관소에 원자재를 보관하고, 적합

| | 제정일자 | | |
|--------|------------|------|------------|
| 제조관 | 리기준서 | 개정일자 | |
| | 개정번호 |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3 / 10 |

판정 된 원자재만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

2) 원자재 공급 시에는 적합라벨을 확인하고 공급한다.

3.1.4 재작업 방법

- 1) 기준일탈 또는 일탈로 인하여 재작업이 발생했을 시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2) 기준일탈 또는 일탈처리 결과 재작업이 결정되면 해당부서는 재작업 계획을 수 립하여 품질보증팀장의 승인을 받아 재작업을 실시한다.
- 3) 재작업 전 반드시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충분히 작업 내용을 숙지시킨 후에 실시한다.
- 4) 재작업이 완료된 제품에는 반드시 재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식별표시를 하고, 품 질부서에 검사의뢰를 한다.

3.2 시설 및 기구관리에 관한 사항

3.2.1 시설 및 주요설비의 정기적인 점검방법

시설 및 주요설비의 정기적인 점검은 공무부서 또는 생산부서에 책임자를 두어 정기 점검을 실시 및 기록하고 유지관리, 수리, 이동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설비이력카드 에 작성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한다.

- 3.2.2 작업중인 시설 및 기기의 표시방법
 - 1) 현재 작업중인 제품명을 설비에 표시하여 작업중인 사항을 명시한다.
 - 2) 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대기"라는 표시를 한다.
 - 3) 설비를 세척중인 경우 "세척중"이라는 표시를 한다.
- 3.2.3 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 방법

설비 책임자는 계측장비의 연간교정계획을 수립하여 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을 실시한다.

3.3 원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3.3.1 원료의 입고

- 1) 원료담당자는 원료가 입고되면 입고원료의 발주서 및 거래명세표를 참고하여 원료명, 규격, 수량, 납품처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2) 원료 용기 및 봉합의 파손여부, 물에 젖었거나 침적된 흔적 여부, 해충이나 쥐 등의 침해를 받은 흔적 여부, 표시 된 사항의 이상여부 및 청결여부 등을 확인한다.
- 3) 용기에 표시 된 양을 거래명세표와 대조하고 필요 시 칭량하여, 그 무게를 확인

| | 제정일자 | | |
|--------|------------|------|------------|
| 제조관리 | 비기준서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4 / 10 |

한다.

- 4)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용기 및 외포장을 청소한 후 원료 대기 보관소로 이동하다
- 5) 원료담당자는 입고 정보를 전산에 등록한 후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지참하여 품질부서에 검사를 의뢰한다.
- 6) 품질보증팀 담당자는 시험을 실시하고 원료 시험기록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팀 장의 승인을 득하고, 적합일 경우에는 해당원료에 적합라벨을 부착하고 전산에 적·부 여부를 등록한다.
- 7) 시험결과 부적합일 경우에는 해당원료에 부적합라벨을 부착하고, 해당부서에 기준일탈조치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 8) 구매부서는 부적합원료에 대한 기준일탈조치를 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품질 보증팀에 회신한다.
- 3.3.2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취급 시의 혼동 및 오염방지 대책)
 - 1) 보관장소
 - 가) 원료대기 보관소 : 원료가 입고되면 판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관한다.
 - 나) 부적합 원료 보관소 : 시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원료는 반품, 폐기 등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보관한다.
 - 다) 적합원료 보관소 : 시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원료를 보관한다.
 - 라) 저온원료 창고 : 저온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원료를 보관하며, 저온이라 함은 10℃이하를 의미한다.
 - 2) 보관방법
 - 가) 원료보관장고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규정에 적합한 보관조건에서 보관 되어야 한다.
 - 나)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바닥 및 내벽과 10cm 이상, 외벽과 30cm 이상 간격을 두고 적재한다.
 - 라) 방서 및 방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지정된 보관소에 원료를 보관하여 누구나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혼동될 염 려가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바) 원료의 출고 시에는 반드시 선입선출이 되어야 하며, 출고 전 적합라벨의 부 착여부 및 원 포장에 표시 된 원료명과 적합라벨에 표시 된 원료명의 일치 여 부를 확인한다.

| | 제정일자 | | |
|--------|------------|------|------------|
| 제조관 | 리기준서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5 / 10 |

- 사) 원료창고 담당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원료의 입출고 내역 및 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관리를 해야 한다.
- 아) 보관장소는 항상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 3) 원료의 유효기간 관리원료관리 규정에 따른다.
- 3.4 포장재관리에 관한 사항
 - 3.4.1 포장재의 입고
 - 1) 포장재가 입고되면 자재 담당자는 입고 된 자재 발주서와 거래명세표를 참고하여 포장재명, 규격, 수량, 납품처, 해충이나 쥐 등의 침해를 받은 흔적, 청결 여부 등을 확인한다.
 - 2)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업체의 포장재 성적서를 지참하여 품질보증팀에 검사의 뢰를 한다.
 - 3) 품질보증팀은 포장재 입고검사 절차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고, 외관검사 및 기능 검사를 실시한다.
 - 4) 시험결과를 포장재 검사 기록서에 기록하여 품질보증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입고 된 포장재에 적합라벨을 부착하고, 부적합 시에는 부적합라벨을 부착한 후 기준일탈조치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 5) 구매부서는 부적합포장재에 대한 기준일탈조치를 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품질보증팀에 회신한다.
 - 3.4.2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 1) 보관장소
 - 가) 포장재보관소 : 적합 판정 된 포장재만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 나) 부적합보관소 : 부적합 판정 된 자재는 선별, 반품,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 보관한다.
 - 2) 보관방법
 - 가) 누구나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혼동될 염려가 없도록 구분하여 보관한다.
 - 나) 바닥 및 내벽과 10cm 이상, 외벽과 30cm 이상 간격을 두고 보관한다.
 - 다) 보관장소는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고, 출고 시에 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 라) 방서·방충 시설을 갖춘 곳에서 보관한다.
 - 마) 직사광선, 습기, 발열체를 피하여 보관한다.

| 제조관리기준서 | | 제정일자 | |
|---------|------------|------|------------|
| |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6 / 10 |

3.4.3 포장재의 출고

- 1) 포장재공급 담당자는 생산계획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되, 적합 라벨의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공급한다.
- 2) 공급되는 부자재는 WMS 시스템을 통해 공급기록을 관리한다.

3.4.4 충전·포장시 발생 된 불량자재의 처리

품질부서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포장재라도 생산 중 이상이 발견되거나 작업 중 파손 또는 부적합 포장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생산팀에서는 생산 중 발생한 불량 포장재를 정상품과 구분하여 물류팀에 반납 한다.
- 2) 물류팀 담당자는 부적합 포장재를 부적합 자재 보관소에 이동하여 보관한다.
- 3) 물류팀 담당자는 부적합 포장재를 추후 반품 또는 폐기 조치 후 해당업체에 시정 조치 요구를 한다.

3.5 반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

3.5.1 반제품의 입고

- 1) 제조담당자는 제조완료 후 품질보증팀으로 부터 적합판정을 통보 받으면, 지정 된 저장통에 반제품을 배출한다.
- 2) 반제품은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적당한 용기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며 용기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가) 명칭 또는 확인코드
 - 나) 제조번호
 - 다) 제조일자
 - 라)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조건

3.5.2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 1) 보관장소 : 지정된 장소(벌크 보관실)에 해당 반제품을 보관한다. 품질보증부서 로부터 보류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반제품의 경우 부적합품 대기소에 보관하 여 적합제품과 명확히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
- 2) 보관방법
 - 가) 이물질 혹은 미생물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 나) 최대 보관기간은 6개월이며, 보관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반드 시 사용 전 품질보증부서에 검사 의뢰하여 적합 판정된 반제품만 사용되어야 한다.

| 제조관리기준서 | | 제정일자 | |
|---------|------------|------|------------|
| |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7 / 10 |

3.6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

3.6.1 완제품의 입고

- 1) 생산팀 담당자는 정상적인 작업 공정을 통해 작업 된 제품에 제품명, 제조일자, 제조번호 등을 표시하여 제품 창고로 입고시킨다.
- 2) 생산팀 담당자는 당일 입고 시킨 제품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물류 담당자에 게 전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3) 물류 담당자는 창고에 입고 된 제품 정보와 기록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팀장에게 보고 후 후속조치를 한다.

3.6.2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1) 보관장소

- 가) 완제품보관소 : 지정된 장소에 해당 제품을 보관한다.
- 나) 부적합 완제품보관소 : 반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된 제품을 보관한다.

2) 보관방법

- 가) 선입·선출 : 제품별, 제조번호별, 입고순서대로 지정된 장소에 제품을 보관한다.
- 나) 창고바닥 및 벽면으로부터 10c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보관함으로써 통풍이 되도록 한다.
- 다) 적재 시 상부의 적재중량으로 인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 라) 방서·방충 시설을 갖추어 해충이나 쥐 등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3.6.3 완제품의 출하

1) 출하절차

- 가) 물류담당자는 제품출하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팀에 공유한다.
- 나) 출하 시에는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선입·선출에 의거하여 출하한다.

2) 출하검사

가) 품질부서 담당자는 사전에 완료 된 제품검사기록을 확인하고, 출하 전 제품 명, 제조번호, 외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품질보증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물류담당자에게 통보한다.

3.6.4 기록관리

완제품을 출하할 때는 거래처별로 제품명, 규격(포장단위), 제조번호, 출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 관리한다.

| 제조관리기준서 | | 제정일자 | |
|---------|------------|------|------------|
| |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8 / 10 |

3.6.5 반품의 처리

제품이 거래처로부터 반품 된 경우에는 회수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운반할 때는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제품재고를 파악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생산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 3.7 위탁제조에 관한 사항

위탁제조의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 3.7.1 수탁자의 작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한다.
- 3.7.2 수탁자에게 위탁생산에 필요한 검사규격, 시험방법, 공정관리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 표준서를 작성하여 상호간에 합의하여, 이를 적용·준수한다.
- 3.7.3 위탁제조 계획을 통보하고, 필요원료, 포장재 및 벌크제품를 공급한다.
- 3.7.4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요구사항에 준해 생산 및 검사를 실시한다.
- 3.7.5 수탁자는 생산량, 시험기록서 및 납품서 등과 함께 위탁제품을 납품한다.
- 3.7.6 납품 된 제품은 완제품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 3.7.7 계약 조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기록보관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기록은 "문서기록관리(MCS-QP-941)"에 따라 기록, 보관한다.

5. 관련문서

- 5.1 문서기록관리
- 5.2 원자재 입출고 관리
- 5.3 원자재 재고 관리
- 5.4 칭량작업
- 5.5 제조작업
- 5.6 반제품보관
- 5.7 포장작업
- 5.8 제조설비관리
- 5.9 반제품검사
- 5.10 공정검사
- 5.11 제품식별 및 추적성

| 제조관리기준서 | | 제정일자 | |
|---------|------------|------|------------|
| |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9 / 10 |

6. 관련양식

6.1 작업소 출입관리대장

| | 작성 | 검토 | 확인 |
|-------------|----|----|----|
| 작업소 출입 관리대장 | | | |
| | | | |

| NO | 일자 | 성명 | 부서명(업체명) | 시간 | 출입목적 | 승인자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s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6 | | | | | | |
| 27 | | | | | | |
| 28 | | | | | | |
| 29 | | | | | | |
| 30 | | | | | | - |

| | | 제정일자 | |
|--------|------------|------|------------|
| 제조위생관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1 / 15 |

| ▶ 개정이 | 벽 | | |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내용 | 작성자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 | | | |
|------|----|----|----|
| 구분 | 작성 | 검토 | 승인 |
| 부서 | | | |
| 직책 | | | |
| 성명 | | | |
| 서명 | | | |
| 일자 | | | |

| ▶ 배포처 | | | | |
|----------------------|------|--|--|--|
| ull 17 +1 | 부서명 | | | |
| 배포처 | 사본번호 | | | |

| | | 제정일자 | |
|-----------|------------|------|------------|
| 제조위생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2 / 15 |

작업소 및 설비의 청결유지와 작업원의 위생관리를 통하여 화장품의 미생물 및 이물질 오염을 방지하여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작업소, 설비 및 작업원에 대한 위생관리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제조 위생관리의 주관부서는 생산팀이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 3.1 생산팀장
 - 3.1.1 제조 위생관리 책임자로서 제조, 충전, 포장시의 제조 위생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 3.1.2 작업소 청소 및 소독
 - 3.1.3 설비 청소 및 소독
 - 3.1.4 작업원 건강상태의 파악 및 조치
 - 3.1.5 작업원의 수세, 소독방법 등의 관리
- 3.2 품질보증팀
 - 3.2.1 작업소 및 설비의 청소상태 확인
 - 3.2.2 각종 기록사항에 대한 점검
- 3.3 관리팀
 - 3.3.1 신입사원 건강진단서 확인 및 관리
 - 3.3.2 정기적인 건강진단 및 관리
 - 3.3.3 방서/방충 관리

4. 작업원의 건강관리

4.1 신입사원의 건강진단

신입사원 채용 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작업원 및 제품을

| | | 제정일자 | |
|-----------|------------|------|------------|
| 제조위생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3 / 15 |

오염 시킬 수 있는 질병(전염성 질병 포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4.2 정기 건강 진단

경영지원부서는 근로 기준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보관 관리한다.

4.3 수시 건강 진단

- 4.3.1 작업원은 정기진단 외에 필요 시 또는 이상이 있을 경우 수시로 건강진단을 받는다.
- 4.3.2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출장할 경우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4.3.3 작업 중에 발생하는 건강 이상에 대한 작업원은 즉시 인근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관리팀은 이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4.4 자진 신고

- 4.4.1 작업원 본인 또는 가족의 일부가 전염성질환 전염성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생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벼운 질환(감기, 설사, 미열 등)이라 할지라도 위생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4.2 위생관리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신고 된 건강 이상의 중대성에 따라 필요 시 총 무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퇴, 병원 진료,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

전염성 질환을 앓는 작업원이나 보균자를 발견할 시 에는 질병 또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4.5.1 감염성 질환이 제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감염된 작업원을 격리하는 한편, 오염된 제품을 검사 및 폐기하는 조치를 취한다.
- 4.5.2 진단결과 전염성질환으로 판명된 작업원은 완치됐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올 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 4.5.3 전염성질환이 의심되거나, 노출된 피부에 질환을 앓고 있는 작업원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도록 지시해야 한다.

4.6 구급함 설치 및 운영

관리부는 작업원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급함을 설치하고, 각종 구급 비상약 품과 기구,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4.7 개인위생관리 및 점검

전 작업원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작업 중 개인위생에 철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한다. 4.7.1 사람은 전염병 및 미생물의 매개체임을 숙지한다.

| | | 제정일자 | |
|-----------|------------|------|------------|
| 제조위생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4 / 15 |

- 4.7.2 사람은 머리, 피부, 손톱, 호흡기, 신발, 옷 등에 여러 가지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 4.7.3 사람의 머리카락, 피부, 옷 등에는 먼지 및 때가 있어 이 것이 수많은 미생물 및 분진의 원인이 된다.
- 4.7.4 다음과 같은 개인위생을 준수한다.
 - 1) 자주 목욕을 하여 항상 몸을 청결히 유지한다.
 - 2) 방진복, 방진모, 방진마스크, 방진화, 장갑을 착용해서 피부가 직접 제품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특히 작업모는 반드시 머리카락이 빠져 나오지 않도록 착용한다.
 - 4) 작업복장은 항상 관찰하여 이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5) 손톱은 항상 단정하게 관리한다.

5 작업원의 위생

5.1 작업원의 수세 및 소독

제조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품 및 제조설비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5.1.1 작업 전 수세를 실시하고 작업 소 입실 전 분무식 소독기를 사용하여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5.1.2 운동 등에 의한 오염, 땀, 먼지 등의 제거를 위하여 입실 전 수세 설비가 비치된 장소에서 수세 후 입실하여야 한다.
- 5.1.3 화장실을 이용하는 작업원은 화장실 퇴실 시 수세하고 작업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5.2 작업중 준수 사항

개인위생 외에도 작업 중의 위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2.1 사물은 반드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로 들여놓지 않는다.
- 5.2.2 작업장에서는 제조와 직접 관계가 없는 행위(흡연, 음식물섭취, 개인세탁, 잡담, 낮잠 등)를 금한다.
- 5.2.3 작업 중 패물 및 휴대용품 착용 및 휴대를 금한다.
- 5.2.4 작업 중 화장을 금한다.
- 5.2.5 작업 시작 전에 작업원은 반드시 손을 씻고, 씻은 후에는 에어타올을 사용하며

| | | 제정일자 | |
|-----------|------------|------|------------|
| 제조위생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5 / 15 |

헝겊수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5.2.6 필요한 경우 깨끗한 토시, 장갑, 앞치마를 착용하되 제조작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5.3 교육

5.3.1 정기교육

- 1) 작업전반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 2) 교육훈련 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5.3.2 수시교육

- 1) 교육의 필요가 있을 시 수시로 실시한다.
- 2) 작업담당자와 또는 공정 담당자는 작업개시 직전 수시로 실시한다.

6. 작업복장 관리

6.1 작업복장 착용 기준

작업복장의 종류는 작업복, 위생모, 작업화로 하며 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구 분 복장기준 | |
|---------|--------------------------------|----------|
| 제조, 칭량 | 방진복, 위생모, 안전화 / 필요시 마스크 및 보호안경 | 제조실, 칭량실 |
| 생 산 | 방진복, 위생모, 작업화,/필요시 마스크 | 충진 |
| 생 산 | 지급된 작업복, 위생모, 작업화 | 포장 |
| 품질관리 | 상의흰색가운, 하의평상복, 슬리퍼 | 실험실 |
| 관 리 자 | 상의 및 하의는 평상복, 슬리퍼 | 사무실 |
| 견학, 방문자 | 각 출입 작업소의 규정에 따라 착용 | - |

6.2 작업복의 기준

- 6.2.1 땀의 흡수 및 방출이 용이하고 가벼워야 한다.
- 6.2.2 보온성이 적당하여 작업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 6.2.3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 6.2.4 작업환경에 적합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 6.2.5 작업 시 섬유질의 발생이 적고 먼지의 부착성이 적어야 하며 세탁이 용이하여 야 한다.
- 6.2.6 착용 시 내의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의는 단추 및 모털이 서있는 경향의

| | | 제정일자 | |
|-----------|------------|------|------------|
| 제조위생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6 / 15 |

의류는 착용하지 않는다.

6.3 작업모의 기준

- 6.3.1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야 한다.
- 6.3.2 착용이 용이하고 착용 후 머리카락의 형태가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 6.3.3 착용 시 머리카락을 전체적으로 감싸 줄 수 있어야 한다.
- 6.3.4 공기 유통이 원활하고, 분진 기타 이물 등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6.4 작업화의 기준

- 6.4.1 가볍고 땀의 흡수 및 방출이 용이하여야 한다.
- 6.4.2 제조실 근무자는 등산화 형식의 안전화 및 신발 바닥이 우레탄 코팅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5 작업 복장의 착용시기

- 6.5.1 1급지, 2급지 작업실의 상주 작업자는 작업실 입실 전 갱의실에서 해당 작업복을 착용 후 입실하여야 한다.
- 6.5.2 1급지, 2급지 작업실의 상주 작업자는 제조소 이외의 구역으로 외출, 이동 시 갱의실에서 작업복을 탈의 후 외출하여야 한다.
- 6.5.3 임시 작업자 및 외부 방문객이 1급지. 2급지. 작업실로 입실 시 갱의실에서 해당 작업복을 착용 후 입실하여야 한다.

6.6 작업 복장의 착용방법

- 6.6.1 입실자는 실내화를 작업장 전용 실내화(작업화)로 갈아 신는다.
- 6.6.2 작업장 내 출입할 모든 작업자는 작업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사물함에 의 복을 보관 후 Clean Locker에서 작업복을 꺼낸다
- 6.6.3 작업장 내로 출입한 작업자는 비치된 위생모자를 머리카락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위생모자를 착용한다.
- 6.6.4 위생모자를 쓴 후 2급지 작업실의 상주 작업자는 반드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작업장에 들어간다.
- 6.6.5 제조실 작업자는 Air Shower Room에 들어가 양팔을 들면서 천천히 몸을 1-2회회전시켜 청정한 공기로 Air Shower를 한다.

6.7 작업복의 관리

- 6.7.1 작업복은 1인 2벌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6.7.2 작업복은 주2회 세탁을 원칙으로 하며, 하절기에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 6.7.3 작업복의 청결상태는 매일 작업 전 생산부서 관리자가 확인한다.

| | | 제정일자 | |
|--------|------------|------|------------|
| 제조위생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7 / 15 |

7. 작업소 위생관리

7.1 작업소의 관리기준

- 7.1.1 각 작업소는 불결한 장소로부터 분리되어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7.1.2 각 작업소는 환기가 잘 되고 청소, 소독을 철저히 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7.1.3 바닥과 벽은 먼지와 오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 건물의 개·보수 시에 도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7.1.4 작업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물품 이외의 것들은 제거하여 작업 중 상호간의 혼동 및 교차오염과 자재 상호간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7.1.5 쥐, 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7.1.6 가루가 날리는 작업소는 비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제진 시설을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7.1.7 해당 작업소는 출입관리를 통하여 인원 및 물품의 출입을 제안하고 인원, 물품의 이동통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7.1.8 각 작업소는 청정도별로 구분하여 온도, 습도 등을 관리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2 작업소의 구분

7.2.1 작업소 및 그 부속 시설은 제조의 대상과 형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7.2.2 해당 장소별 관리자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며 그 밑에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작업소 | 해당부서 | 작업내용 | |
|---------|------|-------------------------------|--|
| 칭량실 | 생산 | 원료칭량 | |
| 제조실 | 생산 | 내용물 제조 | |
| 세척실 | 생산 | 반제품 보관용기, 제조 시 사용한 용기 및 도구 세척 | |
| 충전, 포장실 | 생산 | 제조된 반제품의 충전, 포장 | |
| 반제품 보관소 | 생산 | 제조된 반제품의 보관 및 불출 | |
| 완제품 보관소 | 물류 | 완제품 보관 및 출하 | |

| | | 제정일자 | | |
|--------|------------|------|------------|--|
| 제조위생 | 개정일자 | | | |
| | | |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8 / 15 | |

| 원료창고 | 구매/자재 | 입고된 원료의 보관 및 불출 |
|-------|-------|---------------------------|
| 포장재창고 | 구매/자재 | 입고된 포장재의 보관 및 불출 |
| 기타 | 생산 | 작업소 내의 복도, 갱의실, 화장실 등의 장소 |

7.3 청소 도구 및 소독제의 구분관리

7.3.1 청소도구

- 1) 진공 청소기 : 작업소의 바닥 및 작업대, 기계 등의 먼지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다.
- 2) 걸레 : 작업소의 및 보관소의 바닥, 기타 부속시설 등의 이물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 3) 위생수건 (부직포): 작업소별 기계, 유리, 작업대, 기타 구조물에 묻어 있는 물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 4) 브러쉬 : 기계. 기구 류에 붙은 것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 5) 물끌개 : 물기,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 6) 세척솔: 바닥의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 7.3.2 청소용수 : 일반용수, 정제수
- 7.3.3 소독액: 70% 에탄올
- 7.3.4 청소 도구의 관리
 - 1) 청소도구함

청소 도구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되는 청소도구, 소독액 및 세제 등을 보관 관리하며, 작업소는 진공청소기 보관장소를 별도로 구분하며, 소독액은 필요장소에 별도 비치하여 필요 시 수시 소독이 가능 하도록 한다.

2) 청소 도구의 세척 및 소독

불결한 청소도구는 오히려 작업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청소 후 청결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조 또는 소독을 실시하여 다른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4 작업실별 청소, 소독 방법 및 주기

7.4.1 청소 및 소독 실시 시기

- 1) 모든 작업소는 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한다.
- 2) 모든 작업소 및 보관소는 작업 종류 후 청소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소독을 병

| Secretary Control of C | PS | 제정일자 | |
|--|------------|------|------------|
| 제조위생 | 개정일자 |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9 / 15 |

행하다.

3) 제조 설비의 반출입, 수리 등을 행한 후에는 수시로 청소(필요 시 소독)을 실시하여 오염을 예방한다.

7.4.2 청소 및 소독 점검 주기

- 1) 작업소별 청소 방법 및 점검 주기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속 2일 이상 휴무 시 작업 전 간단히 먼지제거 및 청소를 실시하고 확인, 점검 후 작업에 들어간다.
- 2) 작업 방법은 아래와 같이 작업소별로 실시하며 소독 시에는 '소독중' 이라는 표지판을 해당 작업실 출입구에 부착한다.

7.4.3 청소 및 소독 방법

1) 칭량실

- 가) 수시 및 작업 종료 후 작업대, 바닥, 원료용기, 칭량기기, 벽 등 이물질이나 먼지 등을 부직포, 걸레 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한다.
- 나) 해당 작업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2) 제조실

- 가) 작업 종료 후 혹은 일과 종료 후 바닥, 벽, 작업대, 창틀 등에 묻은 이물질, 내용물 및 원료 잔류물 등을 위생수건, 걸레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나) 일반용수와 세제를 바닥에 흘린 후 세척솔 등을 이용하여 닦아낸다.
- 다) 일반용수(필요 시 위생수건 등)을 이용하여 세제 성분이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세척한 후 물끌개, 걸레 등을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한다.
- 라) 작업실 내에 설치되어있는 배수로 및 배수구는 월 1회 락스 소독 후 내용물 잔류 물, 기타 이물 등을 완전 제거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환경균 측정결과 부적 합 또는 기타 필요 시 소독을 실시한다.
- 마) 청소 후에는 작업실 내의물기를 완전 제거하고 배수구 뚜껑을 꼭 닦는다.
- 바) 소독 시에는 제조기계, 기구류 등을 완전히 밀봉, 밀폐하여 먼지, 이물, 소독 액제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반제품 보관소

- 가) 저장 반제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온도를 18-28 ℃로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하며 이상 발생 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품질관리부로 통보하여 조치를 받는다.
- 나) 반제품 보관소는 수시 및 일과 종료 후 바닥, 저장용기 외부표면 등을 위생

| | 제정일자 | | |
|--------|------------|--------------|--|
| 제조위생편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페이지 10 / | |

수건 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위생 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 다) 해당 작업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라) 대청소를 제외하고는 물청소를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물청소를 실시하였을 경우 즉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 마) 내용물 저장통은 항상 완전히 밀봉하여 환경균, 먼지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4) 세척실

- 가) 저장통, 충전기계 등의 세척 후 수시로 바닥에 잔존하는 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세척수로 바닥을 세척한다.
- 나) 배수로에 내용물 및 세제 잔유물 등이 잔존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다) 청소, 배수 후에는 바닥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배수로 이물 제거 및 청소

실시한다.

- 라) 알코올70% 소독액을 이용 하여 배수로 및 세척실 내부 소독한다.
- 5) 충전, 포장실
 - 가) 바닥, 작업대 등은 수시 및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공정 중 혹은 공정 간의 오염을 방지한다.
 - 나) 작업 중 자재, 내용물 저장통, 완제품 등의 이동 시는 먼지, 이물 등을 제거 하여 설비 혹은 생산 중인 제품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6) 원료 보관소
 - 가) 입고 장소 및 각 저장통는 작업 후 걸레로 쓸어내고, 오염물 유출 시 물걸레로 제거한다.
 - 나) 바닥, 벽면, 보관용 적재대, 원료저장통 주위를 청소하고 물걸레로 오염물을 제거한다.
 - 다) 필요 시 연성세제, 또는 락스를 이용하여 오염물을 제거한다.
 - 라) 위험물 창고는 작업 후 비로 쓸어내고, 필요 시 물걸레로 오염물을 제거한다.
- 7) 원자재 보관소 : 작업 후 걸레로 청소한 후 바닥, 벽 등의 먼지를 제거한다.
- 8) 완제품 보관소 : 작업 후 걸레로 청소한 후 바닥, 벽 등의 먼지를 제거한다.
- 9) 화장실
 - 가) 바닥에 잔존하는 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제로 바닥을 세척한다.

| | 제정일자 | | |
|---|------------|------|-------------|
| 제조위생 | 개정일자 | | |
| u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11 / 15 |

- 나) 배수로에 내용물 및 세제 잔유물 등이 잔존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다) 손 세정제 및 핸드타올의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한다.
- 라) 청소, 배수 후에는 바닥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7.5 작업소 위생관리 점검 시기 및 방법

작업소 및 보관소별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청소 혹은 소독상태를 점검 확인한 후 작업소 위생관리 점검표 에 기록하고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7.5.1 점검시기

수시점검 - 작업 중 수시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점검 - 일별, 주별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6.5.2 작업소 위생관리 점검표 작성방법

각 작업소 별로 요구되는 청정도에 따라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7.6 소독제의 취급 사용관리

6.6.1 에탄올 : 가연성이므로 화기에 주의한다.

7.7 부적합 사항의 처리

6.7.1 작업소 및 보관소 위생상태가 제품 혹은 보관품목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작업을 금한다.

6.7.2 작업소 및 보관소별 관리 담당자는 점검 결과 이상 발생 시 내용, 원인, 대책 등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즉시 조치를 받는다.

7.8 청소, 소독 시 유의사항

7.8.1 청소, 소독 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하기 힘든 곳 등에 특히 유의하여 세밀 하게 진행하며, 물청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7.8.2 소독 시에는 기계, 기구류, 내용물 등에 절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7.8.3 청소 도구는 사용 후 세척하여 건조 또는 필요 시 소독하여 오염원이 되지 않 도록 한다.

7.8.4 청소 후 그 상태를 필히 재확인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7.9 작업소 내 금지사항

- 7.9.1 사물(서적, 지갑, 핸드백)등은 작업소로의 유입을 금한다.
- 7.9.2 작업소에서는 음식이 휴대, 섭취, 흡연, 화장을 금한다.
- 7.9.3 작업소의 바닥, 벽, 시설물, 쓰레기통에 침을 뱉는 행위를 금한다.
- 7.9.4 작업소는 화장품의 제조 및 포장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금한다.
- 7.9.5 작업 중 외부인의 설비 수리 시 먼지 등 이물이 발생하는 업무는 금한다.

| | | 제정일자 | |
|------|--------------|------|-------------|
| 제2 | C위생관리기준서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12 / 15 |

8.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

설비세척절차서에 따라 세척 및 평가를 실시한다.

9. 방충방서 관리

9.1 방충관리

9.1.1 살충제의 살포

- 1) 살충제의 살포는 당사의 위생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주관하여 방제 위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해충 또는 곤충의 예상 서식처에 매월 정기적으로 살포한다.
- 2) 살충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살포시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접촉되는 용기에는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필요 시에는 제조위생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작업실내에 살포할 수 있다.
- 4) 살충제의 살포는 반드시 방제 전문업체의 전담자와 위생관리담당자가 동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9.1.2 방충방법

- 1) 공장내부에 침입된 곤충,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 제조소 내에 포충등을 설치한다.
- 2) 작업소의 외부와 관련된 모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9.2 방서관리

9.2.1 살서제의 투약

- 1) 살서제의 투약은 방제 전문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작업소 외곽에 월 1회 살포하며 기후, 발생주기 등에 따라 조정된다.
- 2) 살서제의 투약은 반드시 방제 전문업체의 전담자와 위생관리담당자가 동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3) 살서제 투약 시 규정된 "쥐약/트랩"이라고 표기된 용기를 사용한다.
- 4) 트랩은 규정된 장소에 설치하며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면 안 된다.

9.2.2 방서방법

- 1) 건물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은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쥐의 침입을 막는다.
- 2) 쥐의 침입이 예상되는 장소 또는 통로에 쥐잡이용 끈끈이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 제정일자 | | |
|--------|------------|-----|-------------|
| 제조위상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13 / 15 |

9.3 방충, 방서시설의 점검 및 관리

- 9.3.1 포충등, 방충망 및 쥐잡이용 끈끈이를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한다.
- 9.3.2 포충등, 방서 관리 점검표를 월1회 기록, 관리한다.
- 9.3.3 쥐의 침입 흔적 발견 시 위생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한다.
- 9.3.4 포충등에 의해 포획된 해충들이 많을 경우 끈끈이를 교체하여 청결하게 유지한다.
- 9.3.5 쥐가 잡혔을 경우 이를 즉시 수거하여 폐기한다.
- 9.4 소독, 투약시의 주의사항
 - 9.4.1 건물 외부는 소독을 실시하고 주변의 나무, 풀 등도 소독한다.
 - 9.4.2 배수로나 하수구는 철저히 소독한다.

10. 기록보관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기록은 "문서기록관리"에 따라 기록, 보관한다.

11. 관련문서

- 11.1 문서기록관리
- 11.2 설비세척

12. 관련양식

- 12.1 작업원 위생관리 점검표
- 12.2 작업소 위생관리 점검표

| | 작성 | 검토 | 확인 |
|-------------|----|----|----|
| 개인 위생관리 점검표 | | | |
| | | | |

점검일: 년 월 일~ 월 일

| - | | | · | 섬검날 | 실 : | 년 월 | 일 ~ | 월 일 |
|-----|--------------------------------------|---|---|-----|-----|-----|-----|-----|
| No. | 점검항목 | 옏 | 화 | 수 | 목 | 古 | 토 | 일 |
| 1 | 규정 작업복장을 하고,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
| 2 | 작업모, 작업복, 작업화 등은 청결한가? | | | | | | | |
| 3 | 규정된 작업화를 단정 하게 착용하였는가? | | | | | | | |
| 4 | 규정 작업모를 착용했 는가? | | | | | | | |
| 5 | 머리카락이 모자 밑으로 나오지 않도록 착용하였는가? | | | | | | | |
| 6 | 작업시간 전에 수세와 소독을 하였는가? | | | | | | | |
| 7 | 패물 등의 착용 및 과 도한 화장하고 있지 않 은가? | | | | | | | |
| 8 |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 흡연 등을 행하지 않았는가 | | | | | | | |
| 9 | 개인사물 현장반입여부 | | | | | | | |
| 10 | 두발, 손톱 용모는 단정 한가? | | | | | | | |
| 11 | 건강 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

^{*} 범례 : 양호 - o, 불량-x 로 표기하고 불량 시 그에 대한 조치사항 기록

^{*} 특기사항 및 조치사항 :

| 확인 | |
|----|--------------|
| 거토 | |
| 참 | |
| | 작업소 위생관리 점검표 |

본 예시는 관리문서 작성을 돕고자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예시를 참고하여 기준서, 절차서(지침서), 기록양식은 각 사의 업무 여건에 맞게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circ | \circ | |
|---------|---------|---|
| ٠, | ٠, | h |
| | | |

| | 제정일자 | | |
|--------|------------|-----|------------|
| 품질관리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1 / 27 |

| ▶ 개정이 | 력 | | |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내용 | 작성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 | | | |
|------|----|----|----|
| 구분 | 작성 | 검토 | 승인 |
| 부서 | | | |
| 직책 | | | |
| 성명 | | | |
| 서명 | | M | |
| 일자 | | R | |

| ▶ 배포처 | | | | |
|----------------------|------|--|--|--|
| ull vz +l | 부서명 | | | |
| 배포처 | 사본번호 | | | |

| 프지카 | 제정일자 | | |
|---------|------------|------|------------|
| 품질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시험 | 개정번호 |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2 / 27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험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우수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시험의뢰에서부터 시험결과의 판정 및 통보 그리고 부적합품 처리 조치 업무에 적용한다.

3. 업무절차

- 3.1 시험의뢰 및 시험
 - 3.1.1 원료 및 자재 보관 담당자는 원료 및 자재에 대하여 품질부서에 시험 의뢰를 한다.
 - 3.1.2 반제품 제조 담당자는 제조된 반제품에 대하여 품질부서에 시험 의뢰를 한다.
 - 3.1.3 생산공정 담당자는 생산된 완제품에 대하여 품질부서에 시험 의뢰를 한다.
 - 3.1.4 품질부서 담당자는 의뢰된 품목에 대하여 검체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 3.2 시험지시 및 기록서의 작성
- 다음 사항이 기재 된 시험지시 및 기록서를 작성한다.
 - 3.2.1 제품명(원자재명)
 - 3.2.2 제조번호
 - 3.2.3 제조일 또는 입고일
 - 3.2.4 시험지시번호, 지시자 및 지시연월일
 - 3.2.5 시험항목 및 기준
 - 3.2.6 시험일, 검사자, 시험결과, 판정결과
 - 3.2.7 기타 필요한 사항
- 3.3 시험결과의 판정
 - 3.3.1 검사 담당자는 시험 성적서를 작성한 후, 품질보증팀장에게 보고한다.
 - 3.3.2 품질보증팀장은 시험결과를 시험기준과 대조하여 확인 후 적/부 판정을 최종 승인한다.

| ᄑᇧᇃᇉ | 제정일자 | | |
|---------|------------|------|------------|
| 품질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시험관리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3 / 27 |

- 3.4 시험 적/부 판정 적용범위
 - 3.4.1 적합 판정 : 시험 결과가 모든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합"으로 한다.
 - 3.4.2 부적합 판정 : 시험결과가 기준에 벗어나는 것으로 완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험항목인 경우는 "부적합"으로 한다.
- 3.5 시험결과의 전달
 - 3.5.1 품질부서는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시험결과를 의뢰부서에 통보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 라벨을 부착하여 식별 표시를 한다.
 - 3.5.2 라벨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제품명
 - 2) 제조번호 또는 제조일자
 - 3) 판정결과
 - 4) 판정일
- 3.6 부적합 판정에 대한 사후관리
 - 3.6.1 "부적합" 판정된 품목은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원료 및 자재는 즉시 반품 또는 폐기조치하며, 반제품 및 완제품의 경우, 기준 내로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4. 기록보관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기록은 "문서기록관리"에 따라 기록, 보관한다.

5. 관련문서

- 5.1 문서기록관리
- 5.2 원료수입검사
- 5.3 자재수입검사
- 5.4 반제품검사
- 5.5 공정검사
- 5.6 제품검사
- 5.7 부적합품 관리
- 5.8 시정 및 예방조치

| 프지고 | 제정일자 | | |
|---------|------------|------|------------|
| 품질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검체 채 | 개정번호 | | |
| 문서번호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4 / 27 |

검체 채취 및 채취된 검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법을 규정하여 우수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화장품을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포장재, 반제품, 완제품 시험에 필요한 검체 채취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3. 업무절차

- 3.1 검체 채취 담당자
 - 3.1.1 검체 채취는 품질보증팀의 각 시험 담당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생산담당자가 대행할 수 있다.
 - 3.1.2 검체 채취 시에는 원자재의 경우 제조원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인수하고 입고된 원자재에 "시험 중"라벨을 부착한다.
 - 3.1.3 시험 완료 후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고, 품질보증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품 또는 원자재에 "적합" 또는 "부적합" 라벨을 부착하여 식별 표시를 하고 해당 부서 에 결과를 통보한다.
- 3.2 검체 채취 장소
 - 3.2.1 원료 : 원료 검체 채취실에서 원료관리 담당자 입회 하에 실시한다.
 - 3.2.2 포장재 : 포장재 검수실에서 포장재관리 담당자 입회 하에 실시한다.
 - 3.2.3 반제품 : 제조실 또는 반제품 보관소에서 담당자 입회 하에 실시한다.
 - 3.2.4 완제품 : 포장실 또는 완제품 보관소에서 실시한다.
- 3.3 검체 채취시기
 - 3.3.1 원자재 : 시험의뢰 접수 후 가능한 즉시 또는 1일 이내에 검체를 채취한다.
 - 3.3.2 완제품(반제품) : 시험의뢰 접수 후 가능한 즉시 또는 1일 이내에 검체를 채취한다.
 - 3.3.3 재시험 검체 :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재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재 시험을 위한 검체를 채취한다.
 - 3.3.4 장기보관품

| ᄑᅐᆝ기 | 제정일자 | | |
|---------|------------|------|------------|
| 품질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검체 채 | 개정번호 | | |
| 문서번호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5 / 27 |

- 1) 벌크 : 벌크의 최대 보관기간은 6개월이며, 1개월 경과 후 충전 시에는 충전 전반제품 보관 담당자로부터 시험 의뢰 접수 후 검체를 채취한다.
- 3.3.5 회수 및 반품제품

담당 부서 담당자로부터 시험 의뢰 접수 후 검체를 채취한다.

- 3.4 검체 채취 보관용기 및 식별
 - 3.4.1 원료 : 100ml 용량의 플라스틱 용기(100ml 채취)
 - 3.4.2 반제품 : 500ml 플라스틱 비이커로 채취
 - 3.4.3 검체 채취 후 검체명(코드), 제조번호(제조일자), 채취일 등을 검체 채취 라벨에 기재하여 검체 채취 용기에 부착한다.
- 3.5 검체 채취 방법
 - 3.5.1 모든 시험용 검체의 채취는 제조번호의 품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랜덤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검체는 랜덤 샘플링을 실시하여 제조 단위 또는 입고 단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한다.
 - 3.5.2 원료
 - 1) 원료 보관소의 검체 채취실 및 계량실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 2) 원료가 비산되거나 먼지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검체 채취 완료 후에는 원 포장에 준하도록 재포장 후 샘플링을 하였다는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 3) 입고된 원료는 제조번호에 따라 구분하고, 각 제조번호마다 검체를 채취한다.
 - 3.5.3 포장재
 - 외관 검사용 샘플은 계수 조정형 샘플링 방식에 따라 랜덤으로 샘플링하며, 기능검 사 및 파괴검사용 샘플은 필요수량만큼 샘플링한다.
 - 3.5.4 반제품
 - 제조 단위마다 제조 믹서에서 멸균된 위생용 샘플링 컵으로 검체를 채취한다.
 - 3.5.5 완제품
 - 포장 라인에서 제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수량을 랜덤으로 채취한다.
- 3.6 검체 채취 시 주의사항
 - 3.6.1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한다.
 - 3.6.2 검체 채취 시 외부로부터 분진, 이물, 습기 및 미생물 오염에 유의하여야 한다.
 - 3.6.3 제조단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치우침이 없는 검체 채취 방법을 사용하여 야 한다.
 - 3.6.4 개봉 부분은 벌레 등의 혼입, 미생물 오염이 없도록 원 포장에 준하여 재포장

- 을 실시하여야 한다.
- 3.6.5 채취한 검체는 청결 건조한 검체 채취용 용기에 넣고, 마개를 잘 닫고 봉한다.
- 3.6.6 미생물 오염에 특히 주의를 요하며, 검체 채취 용기 및 기구는 세척 멸균,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 3.7 검체의 보관 및 관리
 - 3.7.1 완제품은 적절한 보관 조건하에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 단위별로 사용기간 경과 후 1년간 보관한다.
 - 3.7.2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 3.7.3 벌크는 보관 용기에 담아 6개월간 보관한다.
 - 3.7.4 원자재는 검사가 완료되어 합부 판정이 완료되면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기록보관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기록은 "문서기록관리"에 따라 기록, 보관한다.

5. 관련문서

- 5.1 문서기록관리
- 5.2 원료 검체채취

| 품질관리기준서 | | 제정일자 | |
|----------------|------------|------|------------|
| | | 개정일자 | |
|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 관리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7 / 27 |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점검을 통해 정밀도를 유지하여 품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행해지는 시험 및 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시험기기 관리

- 3.1 기기관리 담당자
 - 3.1.1 품질보증책임자는 기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기기관리 책임자로 선정한다.
 - 3.1.2 기기관리 책임자는 각 기기마다 관리자를 지정하고 기기의 관리가 적절히 행해 지도록 한다.
 - 3.1.3 각 기기의 관리자 및 책임자는 기기, 기구에 대한 점검기록 작성 및 확인을 하여 이상발생시 즉시 품질보증팀장에게 보고한다.
- 3.2 기기설비이력카드 관리
- 모든 기기는 기기설비이력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기기 설비이력카드에는 기기명, 모델명, 관리번호, 제조원 및 공급처, 점검일자, 점검내용 및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3.3 점검 및 보정(수리) 방법
 - 3.3.1 점검 및 보정(수리)에 대한 주기 및 방법은 규정 된 기기점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3.3.2 점검 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품질보증팀장에게 보고하고, 기기의 제조 사 또는 관련회사에 문의하여 보정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 3.4 기기 점검 기록
- 모든 기기는 점검 일지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기기 점검 일지에는 기기명, 점검항목, 주기, 점검일자, 확인자 등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 3.5 고장 시 조치사항
 - 3.5.1 고장 시 기기관리 책임자는 품질보증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기기 정상가동이

| 프지고 | 제정일자 | | |
|----------------|------------|------|------------|
| 품질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 관리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8 / 27 |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고장 또는 제한 사용 스티커를 정상가 동이 될 때까지 부착한다.

3.5.2 기기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기기관리 책임자는 전문업체에 신속히 정비를 한다.

4. 기록보관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기록은 "문서기록관리"에 따라 기록, 보관한다.

5. 관련문서

- 5.1 문서기록관리
- 5.2 시험기기 관리대장

| 프지만리기조니 | | 제정일자 | |
|------------|------------------------------|------|------------|
| 품질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검·교정(외부의뢰)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19-10 99-00- 9 10 10 10 1000 | | 페이지 9 / 27 |

당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기에 대해 교정 대상 및 주기를 설정 관리하여 품질 및 설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기의 교정 및 유지관리에 적용함

3. 책임과 권한

- 3.1 품질보증팀장
 - 3.1.1 교정 책임자를 선임한다.
 - 3.12 교정업무에 대한 절차, 교정 계획, 불량 계기등을 검토하여 정해진 규정 및 관련 근거에 의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확인 및 승인
 - 3.1.3 불량 계기로 인한 파급효과를 조사하고, 계기가 불량인 상태에서 제조 된 제품 의 상태를 판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3.2 교정 책임자
 - 3.2.1 교정 대상 및 주기 선정
 - 3.2.2 연간 교정 계획의 수립
 - 3.2.3 계획에 따른 교정업무 수행 및 교정결과의 기록 및 관리
- 3.3 관련부서

각 부서 담당자는 사용하는 계기의 교정일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교정책임자가 교정업 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4. 용어의 정의

- 4.1 계기(Instrument) : 계량(Measurement)과 계측(Instrumentation)을 목적으로 하는 장 치를 통칭함
- 4.2 교정(Calibration): 규정된 조건하에서 측정기 또는 측정시스템이 지시하는 물질량의 값 또는 물적 척도나 표준물질에 의해 대표되는 값과 표준기기로 측정한 값 사이에 관련성을 확립하는 일련의 조작을 의미함. 또한 검정업무 및 교정업무를 통칭함.

| 프지고리기즈니 | | 제정일자 | |
|------------|---------------------|------|-------------|
| 품질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검·교정(외부의뢰)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9000 90000 0 0 0000 | | 페이지 10 / 27 |

- 4.3 표준기기(Standard Equipment) : 국가 1차 측정표준과 소급성이 유지된 계측기를 의미함.
- 4.4 소급성(Traceability) : 국제 또는 국가 1차 측정표준과 연관될 수 있게 하는 측정결과 또는 표준의 특성을 의미함.

5. 업무내용

- 5.1 교정대상 및 주기 선정
 - 5.1.1 교정담당자는 「국가교정기간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기를 대상으로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한다.
 - 5.1.2 교정 대상 및 주기 선정 시 운영요령 제41조의 주기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국가 공인 기간의 교정이 가능한 계기는 가급적 공인 기간에서 교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 5.1.3 온도계 등의 소급성 교정이 가능한 계기는 내부 교정 대상에 포함한다.
 - 5.1.4 신규 계기의 추가 및 변경사항 발생시 '교정 대상 및 주기'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 5.2 연간 교정 계획 수립
- 교정 담당자는 매년 1월까지 전년도 교정 실적을 근거로 연간 교정 계획서를 작성한다. 5.3 교정실시
 - 5.3.1 외부 교정 대상 계기

교정담당자는 외부 교정 대상 계기의 경우 차기 교정일자 최소 한 달 전 교정기관에 계기를 의뢰하여 교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5.3.2 내부 교정 대상 계기

- 1) 교정담당자는 외부기간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표준기기 또는 표준품으로 내부 교정을 실시할 경우 교정을 실시하고 교정성적서 발행 및 교정필증을 부착한다.
- 2) 외부 기간 교정이 불가한 계기는 특성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5.4 사후관리

5.4.1 적합

1) 국가공인기간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발행 된 교정필증을 해당 계기에 부착하

| 품질관리기준서 | | 제정일자 | |
|------------|--------|------|-------------|
| | | 개정일자 | |
| 검·교정(외부의뢰)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94-940 | | 페이지 11 / 27 |

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2) 국가공인기간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발행 된 교정성적서는 시험설비이력카드에 함께 보관한다.

5.4.2 부적합

- 1) 수리가 가능할 경우 해당 계기를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신규 계기로 대체한다.
- 2) 대체계기가 동일 사양일 경우에는 기존 설비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 3) 대체계기가 동일 사양이 아닐 경우에는 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5.4.3 교정담당자는 계기가 불량인 상태에서 측정된 제품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조치한다.

6. 기록보관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기록은 "문서기록관리(MCS-QP-941)"에 따라 기록, 보관한다.

7. 관련문서

7.1 문서기록관리(MCS-QP-941)

8. 첨부문서

8.1 교정대상목록

<u>교정대상목록</u>

| NO | 계측기명 | 장소 | Model | 교정방법 | 교정주기 | 담당부서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ē. | 3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 </u> | | |

| 품질관리기준서 | | 제정일자 | |
|------------|------------|------|-------------|
| | | 개정일자 | |
| 검·교정(내부관리)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14 / 27 |

온·습도계, 저울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정확성 및 신뢰성을 보증하여 제품 품질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사용되는 온 습도계 및 저울의 검정 업무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 3.1 품질보증팀장
 - 3.1.1 검정 책임자를 선임한다.
 - 3.12 검정업무에 대한 절차, 교정 계획, 불량 계기등을 검토하여 정해진 규정 및 관련 근거에 의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확인 및 승인
 - 3.1.3 불량 계기로 인한 파급효과를 조사하고, 계기가 불량인 상태에서 제조 된 제품 의 상태를 판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3.1.4 온·습도계, 저울 검정 결과에 대한 승인
- 3.2 검정 책임자
 - 3.2.1 온·습도계, 저울 검정 대상 및 주기 선정
 - 3.2.3 검정 실시 및 결과 보고
 - 3.2.3 계획에 따른 검정업무 수행 및 검정결과의 기록 및 관리
- 3.3 관련부서

각 부서 담당자는 사용하는 온·습도계, 저울의 검정일자 만료 전 검정의뢰를 할 의무가 있다.

4. 업무내용

- 4.1 검정책임자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온·습도계, 저울의 대상 및 수량을 파악하여 리스트를 작성한다.
- 4.2 검정담당자는 주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검정을 실시한다.
- 4.3 표준 온·습도계 및 분동은 국가공인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검·교정을 받은 온

| 품질관리기준서 | | 제정일자 | |
|------------|----------------------------|------|-------------|
| | | 개정일자 | |
| 검·교정(내부관리)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18:00 000,000 000 000 0000 | | 페이지 15 / 27 |

- ·습도계 및 분동을 사용한다.
- 4.4 검정담당자는 사용 용도 및 특성에 근거하여 설정 된 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다.
- 4.5 검정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온·습도계의 경우 폐기 후 재 구매하여 사용하고, 저울의 경우 외부 검교정을 실시한다.

5. 기록보관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기록은 "문서기록관리"에 따라 기록, 보관한다.

6. 관련문서

6.1 문서기록관리

| 프지만리키즈니 | | 제정일자 | |
|-------------------|--|------|-------------|
| 품질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안정성 시험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관리본 □비관리본 | | 페이지 | 페이지 16 / 27 |

제품의 안정성시험 및 경시변화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제품 또는 기존제품의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함이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책임과 권한

- 3.1 품질보증팀장
 - 3.1.1 안정성 시험이 실시되도록 관리 감독하며, 안정성 시험 계획 및 시험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승인한다.
 - 3.1.2 시험 담당자를 선임한다.
- 3.2 시험담당자
 - 3.2.1 안정성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한다.
 - 3.2.2 안정성 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기록 관리한다.

4. 용어의 정의

4.1 경시변화시험

규정된 보관 조건 내에서 제품의 경시적 변화를 계획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시험

4.2 항온 안정성 시험

규정된 보관 온도 내에서 벌크(혹은 제품)의 변화를 계획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시험

4.3 장기 보존 시험

화장품의 저장조건 하에서 사용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화장품의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시험

5. 업무내용

| 프지교기자니 | | 제정일자 | |
|---------|--|------|-------------|
| 품질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안정성 시험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 | 페이지 17 / 27 |

- 5.1 시험담당자는 안정성 시험 및 경시변화 시험에 대하여 시험 계획을 작성한다.
- 5.2 대상 제품에 제품명, 시험개시일, 보관조건 등의 사항이 포함된 라벨을 부착한다.
- 5.3 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한다.
- 5.4 품목 유형별 시험 항목

5.4.1 화장수

성상(결빙, 침전 등), 향취, 색상, pH, 점(경)도, 굴절률, 이물질 등

5.4.2 로션, 에센스, 크림, 폼, 팩, 파운데이션류

성상(결빙, 응고, 분리, 젤화), 색상, 향취, pH, 점(경)도 등

5.5 시험 분류별 시험기준

| 시험항목 | 시험 | 검 체 | 시 험 방 [| | 시험 주기 | 시험 항목 |
|-------------|-----------|---------------|-----------------------------|---------------|----------------------------------|----------|
| 시엄앙즉 | 부서 | 검세 | 보관 조건 | 시험 기간 | 시합 무기 | NE ST |
| 경시변화 시험 | 품질 보증팀 | 신제품 (벌크) | 실온상태 유지 | 12 개월 | 6, 12 개월 | 성상,향취,색상 |
| 항온 안정성시험 | 연구소, | 신제품 (벌크제품) | 각 해당 온도 항온도(4,37,45,50℃) | 1 개월 | 제조후 7 일동안 ,15 일후 ,30 일후 | 성상,향취,색상 |
| 장기보존 시험 | 품질 보증팀 | 완제품 | 실온상태유지 | 해당제품의 유통기한 | 생산후 6,12,18,24, 30,36 개월* | 전 항목 |

6.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 6.1 시험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시험결과를 기록하여 품질보증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한다.
- 6.2 품질보증팀장은 부적합 사항이 소비자에 끼칠 영향을 검토하여, 후속조치 한다.

7. 기록보관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기록은 "문서기록관리"에 따라 기록, 보관한다.

8. 관련문서

8.1 문서기록관리

| 프지관리기즈니 | | 제정일자 | |
|------------|------------|------|-------------|
| 품질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표준품 및 시약관리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18 / 27 |

원료 및 제품 등의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품 및 시약의 이화학적 특성에 따라 보관기간 등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여 정확한 실험 분석을 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원료 및 제품의 이화학적 실험에 사용되는 표준품 및 시약에 적용한다.

3. 정의 및 사용기간

3.1 표준품

3.1.1 정의

일정한 순도 또는 생물학적 작용을 갖게 제조된 물질로서 원료 및 제품 등의 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실험을 할 때 사용되는 상용 표준품의 역가를 정하기 위해 표준이되는 물질을 말한다.

3.1.2 사용기간

따로 지정 된 사용 기간이 있을 때는 이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3년으로 하며, 개봉 후 1년으로 한다.

3.2 시약

3.2.1 정의

화학적 방법에 의한 물질의 검출이나 정량을 위한 반응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을 말한 다.

3.2.2 사용기간

따로 지정된 사용 기간이 있을 대는 이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3년으로 하며, 개봉 후 1년으로 한다.

3.3 조제용 시액

3.3.1 정의

분석 또는 화학적 실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실험자가 직접 제조한 것을 말한다.

3.3.2 사용기간

조제 후 6개월로 한다.

| 품질관리기준서 | | 제정일자 | |
|------------|----------------------------------|------|-------------|
| | | 개정일자 | |
| 표준품 및 시약관리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STEELER PRODUCT IN STEELE STEELE | | 페이지 19 / 27 |

4. 보관조건

표준품 및 시약의 보관은 각각의 보관조건에 따라 지정된 시약장에 보관하여 관리대장을 기록 및 운용하고 품명, 제조일(조제일), 사용기간 등이 표기된 라벨을 붙여 표시하며, 인체에 해를 주는 위험물은 특별 관리한다.

5. 기록보관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기록은 "문서기록관리"에 따라 기록, 보관한다.

6. 관련문서

6.1 문서기록관리

| ᄑᄭᆌᆁᄼᇪ | | 제정일자 | |
|---------|------------|------|-------------|
| 품질관리기준서 | | 개정일자 | |
| 위탁 시험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20 / 27 |

화장품 품질관리에 있어 시험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공인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시험의 일부를 위탁하여 정확한 시험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원료, 반제품, 완제품의 일부 시험 항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 3.1 품질보증팀장
 - 3.1.1 위탁시험의뢰 담당자를 선임한다.
 - 3.1.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공인 된 시험기관을 선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 3.2 위탁시험의뢰 담당자
 - 3.2.1 공인 된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 3.2.2 검체의 채취 및 송부
 - 3.2.3 시험 결과 기록의 보관 관리

4. 업무내용

4.1 위탁시험의뢰 기간 선정

품질보증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시험계약을 한다.

- 4.2 시험의뢰
 - 4.2.1 시험의뢰 담당자는 검체의 특성에 맞는 용기를 선정하여 오염이 없도록 채취하며, 완제품인 경우에는 완제품을 그대로 의뢰한다.
 - 4.2.2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된 용기를 완전히 밀봉하여 위탁 시험 기관에 송부한다.
 - 4.2.3 검체 발송 시 반드시 위탁 시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접수한다.
- 4.3 시험결과의 접수 및 판정
 - 4.3.1 시험결과는 수탁시험기관에서 기록하도록 하여 우편이나 메일로 접수한다.

| 품질관리 | 기즈니 | 제정일자 | |
|--------|------------|------|-------------|
| 古실한다 | 기군시 | 개정일자 | |
| 위탁 시 | 험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21 / 27 |

4.3.2 시험결과는 시험성적서에 기록하여 품질보증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험성적서 에 첨부하여 보관하거나 별도로 보관한다.

5. 기록보관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기록은 "문서기록관리"에 따라 기록, 보관한다.

6. 관련문서

6.1 문서기록관리

| 품질관리 | 기즈니 | 제정일자 | |
|--------|------------|------|-------------|
| 품걸만니 | 기군시 | 개정일자 | |
| 유통화장품 | 안전관리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22 / 27 |

1. 목적

화장품을 제조 및 유통함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신제품 개발 시 제품의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 3.1 품질보증팀
 - 3.1.1 신제품 개발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분석업무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 3.1.2 제품의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 및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업무내용

4.1 제품의 개발

제품 개발 단계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 4.2 제품 검사
 - 4.2.1 제품의 개발이 완료되면, 검사담당자에게 제품검사를 의뢰한다.
 - 4.2.2 검사항목 및 기준

| 항 목 | 판정기준 | 비고 |
|---------|----------------|-------------------|
| 납 | 20µg/g이하 | 점토원료분말제품 50μg/g |
| 비소 | 10μg/g이하 | |
| 안티몬 | 10µg/g이하 | |
| 카드뮴 | 5μg/g이하 | |
| 메탄올 | 0.2(v/v)%이하 | 물휴지 0.002(v/v)%이하 |
| | 500개/g 이하 | 영/유아용, 눈화장용 제품 |
| 총호기성생균수 | 세균/진균 각 100개/g | 물휴지 |
| | 1,000 개/g 이하 | 기타화장품 |

| 프지기 | 기즈 너 | 제정일자 | |
|--------|------------|------|-------------|
| 품질관리 | 기군시 | 개정일자 | |
| 유통화장품 | 안전관리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23 / 27 |

4.3 검사 진행

4.3.1 검사담당자는 검사항목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며, 시험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4.3.2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시험기준에 따라 판정결과를 기록하여 보고한다.

5. 기록보관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기록은 "문서기록관리"에 따라 기록, 보관한다.

6. 관련문서

6.1 문서기록관리

| 관리번호 | 시험설 | 비 이력카드 | |
|---------|---------------------|--------|--------|
| ME_0001 | | | |
| | 기계명 | | |
| | 모델 | | |
| | 용 량 | | |
| | 규 격 | | |
| | 사용전압 | | |
| | 구 입 처 | | |
| | 제작/구입일 | 4 | |
| | 설치장소 | | |
| | 과리 정 | | (인) |
| | 책임자 부 | | (인) |
| | 부속 장 | | |
| 번호 급 | 품명 수량 | 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트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이사항 | 관리 책임자 부 부속 장 | | 807000 |

pH meter 점검일지

| 작성 | 검토 | 승인 |
|----|----|-------|
| | | |
| | 작성 | 작성 검토 |

1. pH meter 정보

| 모델명 | 설비번호 | 제조처 | 사용장소 | 사용범위 |
|-------------|---------|--------|------|------------------|
| STARA21566K | ME_0011 | Thermo | 실험실 | pH -2.00 ~ 20.00 |

2. 점검기록

| 점검 일자 | pH 7.00 (25℃) | pH 7.00 (±30mV) | SLP 값 (92 ~ 102%) | 점검자 |
|-------|------------------|--------------------|----------------------|-----|
| |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울점검일지

| 화인 | |
|-------------|---|
| 亡 0 1 | |
| 7 | 교 |

| | 제조처 사용장소 사용범위 | AND 기본석실 0.0001g ~ 252g | |
|------|---------------|-------------------------|-----|
| Line | 설비번호 | ME_0026 | 501 |
| | 모델명 | HR-250A | |

| | | | - 13 | Fg 10 | | | | | | | |
|---------|------------|--------------------------|------|-------|--|--|---|--|---|------|--|
| | Ľ.18 | i. | | | | | | | | | |
| • | 저거가 | | | | | | | | | | |
| | 五百 | О | | | | | | | 5 | | |
| , | 121017 | # . | | | | | | | | | |
| | | 윤 | | | | | | | | | |
| | 결과 | 3 | | | | | × | | | | |
| | 전 건 | 2 | | | | | | | | | |
| | | 4 | | | | | | | | | |
| | 7 5/+003%) | (0/ 50: 0+) ¬ (-) | | | | | | | | | |
| | 바파 | 0 | | | | | | | | | |
| 2. 점검기록 | 정치 | 11 0 0 | | | | | | | | | |
| | | | | | | | | | | | |

본 예시는 관리문서 작성을 돕고자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예시를 참고하여 기준서, 절차서(지침서), 기록양식 은 각 사의 업무 여건에 맞게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실험실 기기 점검 일지

| (lo |
|---------|
| |
| 검토 |
| 立 立 |
| 전투 |

ōΝ

颜

점검 일: 2017년

| | | F | | 10. | | | | |
|--------------------------|--|---|--|-----|--|--|--|--|
| 正旧 | | | | | | | | |
| 점검자 | | | | | | | | |
| 청결 상태 | | | | | | | | |
| 작동 상태 /Calibration 결과 | | | | | | | | |
| Spec | | | | | | | | |
| 점검주기 | | | | | | | | |
| 면매 | | | | | | | | |
| 기기명 | | | | | | | | |

본 예시는 관리문서 작성을 돕고자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예시를 참고하여 기준서, 절차서(지침서), 기록양식 은 각 사의 업무 여건에 맞게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700 | 제정일자 | | |
|--------|------------|------|-----------|
| 제품표준 | 개정일자 |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1 / 5 |

| | | | - |
|-------|------|----|-----|
| ▶ 개정이 | 벽 | |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내용 | 작성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 | | | |
|------|----|----|----|
| 구분 | 작성 | 검토 | 승인 |
| 부서 | | | |
| 직책 | | | |
| 성명 | | | |
| 서명 | | | |
| 일자 | | | |

| ▶ 배포처 | | | | |
|--------------------|------|--|--|--|
| ul v +l | 부서명 | | | |
| 배포처 | 사본번호 | | | |

| | 제정일자 | | |
|--------|------------|-----|---------|
| 제품표준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2/5 |

1. 목적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내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작업상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항상 동일 한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지하고 생산 단계별로 적합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표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 3.1 생산팀(제조관리부서)
 - 3.1.1 생산팀은 제조작업에 공정별 상세작업내용, 공정흐름도, 작업장 주의사항, 제조에 필요한 시설현황을 작성 및 검토할 책임이 있다.
 - 3.1.2 생산팀장은 작업원 교육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제조 공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 3.2 품질보증팀(품질관리부서)
 - 3.2.1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 제조BOM, 시험규격 및 생산팀에서 작성 된 자료를 기초로 제품표준서를 작성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 3.2.2 품질개선이나 기타 변경 또는 법규의 개정, 기타 제품표준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제품표준서의 개정 및 보완 내용을 기록하고, 이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업무절차

- 4.1 제품표준서의 기재항목
 - 4.1.1 제품명

제품명은 국문으로 작성하며, 제품에 표기된 명칭과 일치하도록 한다.

- 4.1.2 작성년월일
- 4.1.3 효능·효과(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 | | 제정일자 | |
|--------|------------|------|-----------|
| 제품표 | 개정일자 | | |
| - | | 개정번호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3 / 5 |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3호와 관련한 화장품의 유형 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의거 기재한다, 효능, 효과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와 관련한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 효과 범위에 따라 기재하며, 기능성화장품은 심사 받 은 효능, 효과를 표기한다.

- 4.1.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4.1.5 보관조건
- 4.1.6 원료명, 분량 및 제조단위당 기준량
- 4.1.7 원료 기준 및 시험방법
- 원료 규격서 참조
- 4.1.8 부자재 기준 및 시험방법
- 부자재 규격서 참조
- 4.1.9 반제품 기준 및 시험방법
- 4.1.10 제품 기준 및 시험방법
- 4.1.11 제품 시험 성적서
- 4.1.12 공정별 상세 작업내용 및 제조공정흐름도
- 4.1.13 공정별 이론 생산량 및 수율관리기준
- 4.1.14 작업장 주의사항
- 4.1.15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 4.1.16 변경이력
- 4.1.17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지시 및 기록서
- 1) 제품표준서의 번호
- 2) 제품명
- 3)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또는 사용기한
- 4) 제조단위
- 5) 사용된 원료명, 분량, 시험번호 및 제조단위당 실 사용량
- 6) 제조설비명
- 7) 공정별 상세 작업내용 및 주의사항
- 8) 제조지시자 및 지시연월일
- 4.1.1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4.2 제품표준서의 제·개정
 - 4.2.1 제품표준서는 신제품의 개발 시 품질보증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여

| | 제정일자 | | |
|--------|------------|-----|-----------|
| 제품표 | 개정일자 | | |
| | 개정번호 | | |
| 문서번호 : | ■관리본 □비관리본 | 페이지 | 페이지 4 / 5 |

제정한다.

4.2.2 제정 시 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4.2.3 변경사항 발생 시 품질보증부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즉시 개정하여 개정 전 제조 또는 시험방법으로 품질관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한다.

4.3 제품표준서의 비치 및 관리

제품표준서 원본은 품질보증부서에서 비치 관리하며 관련부서는 제품표준서 필요부분 의 사본을 비치 관리한다.

5. 기록 및 보관

제품표준서관리에 관련된 모든 기록 및 보관관리는 문서기록관리(MCS-QP-941)에 따 라 관리한다.

6. 관련절차서

6.1 문서기록관리

7. 관련양식

- 7.1 제품표준서 관리대장
- 7.2 제품표준서 양식(별도첨부)

제품표준서 관리대장

| NO | 제품표준서번호 | 제품명 | 제·개정일자 | 작성자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21 | | | | |
| 22 | | | | |
| 23 | | | | |
| 24 | | | | |
| 25 | | | | |
| 26 | | | | |
| 27 | | | | |
| 28 | | | | |

대 외 비

| 결 | 작성 | 검토 | 승인 |
|--------|----|----|----|
| 2 | | | |
| 재 | | | |
| ar and | 1 | 1 | 1 |

제 품 표 준 서

제품명:

| 일련번호 | 제·개정년월일 | 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일반 사항

| 표준서 번호 | 제 품 명 | |
|--------------|----------------|--|
| W 5 555 | 00-00000 0 | |
| 성상 | 보관 조건 | |
| 제조 단위 | 포장 단위 | |
| 용법, 용량 | | |
| 효능, 효과 | | |
| 사용상 주의사항 | | |
| 표시성분 (국문) | | |
| 표시성분 (영문) | | |
| 사용기한 | | |
| 이론 수율 | | |

2. 원료 성분 및 분량

| 표준서 번호 | 제품명 | |
|-----------|-----|--|
| | | |

| No. | 코드 | 배합목적 | 상품명 | 원료명 | 규격 | 함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0.0000 | 0.0000 |

3. 칭량 및 제조 공정

| 표준서 번호 | | 제 품 명 | |
|-----------|----------------------------------|-------|--|
| 작업 지시 | | | |
| 작업 | | | |
| 기록 | | | |
| 수율 | | | |
| 유첨 | 붙임3-1 칭량지시및기록서 붙임3-2 제조지시및기록서 | | |

붙임3-1

칭량 지시 및 기록서

| 표준서 번호 | | 제 품 명 | |
|-----------|-----|-------|-----|
| 피니버송 | | 게도비송 | |
| 지시번호 | | 제조번호 | |
| 지시일자 | | 칭량일자 | |
| 지시자 | | 제조량 | kg |
| 칭량자 | (인) | 확인자 | (인) |

| No. | 원료 품번 | 원료명 | 시험번호 | 지시량 | 칭량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ļ | | | | |
| | <u> </u> | | | | |
| | - | | | | |
| | <u> </u> | | | | |
| | <u> </u> | | | | |
| | <u> </u> | | | - | |
| | - | | | | |
| | ļ | | | | |
| | - | | | | |
| | - | | | | |
| | <u> </u> | | | | |
| | | ㅎ. 게 | | | |
| | | 합 계 | | | |

붙임3-2

제조 지시 및 기록서

| | kg | kg | % | | | | | | | | | | | | | |
|--------|--------|---------|-----|-------------|---|--|--|--|--|--|--|--|--|------|--|--------|
| | 지시량 | 제조량 | 수 | 기록 사항 | | | | | | | | | | | | |
| | 제조연월일 | 총 작업 시간 | | 제조 공정 | | | | | | | | | | 주의사항 | | |
| 제품명 | | - 1 | (인) | A | | | | | | | | | | ĸ⊢ | | |
| | 지시 연월일 | 제조 설비 | 확인자 | 투입량 | | | | | | | | | | | | 0.0000 |
| | K | × | (단) | 지시량 | | | | | | | | | | | | 0.0000 |
| 넌 | | 95,500 | ,) | 음 달 용 | | | | | | | | | | | | 합계 |
| 표준서 번호 | 지시자 | 제조 번호 | 제조자 | % No. | _ | | | | | | | | | | | |

본 예시는 관리문서 작성을 돕고자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예시를 참고하여 기준서, 절차서(지참서), 기록양식은 각 사의 업무 여건에 맞게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4. 포장 공정

| 표준서 번호 | | 제 품 명 | |
|-----------|---------------------------------|-------|--|
| 용량 | | | |
| 작업 지시 | | | |
| 작업 | | | |
| 기록 | | | |
| 수율 | | | |
| 유첨 | 붙임4-1 포장작업기준서 붙임4-2 포장지시및기록서 | | |

붙임4-1

포장 작업 기준서

| 결 | 작성 | 검토 | 승인 |
|------|----|----|----|
| 2 | | | |
| 재 | | | |
| /*II | 1 | 1 | 1 |

| | | | | | ^11 | 1 | 1 | 1 |
|----------|----|----|-------------|------|------|-------------|---|---|
| 제품 품번 | 2 | | 제품명 (국문) | | | 제품명 (영문) | | |
| | | 제품 | | | 주의사형 | • | | |
| 구분 | 품번 | | 품명 | |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 정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4-2

포장 지시 및 기록서

| | | | | | | | T | | 1 | |
|--------|--|-----------|----|---------|---|--------|----------------|---|---|----|
| | - | -11 TO FO | | | ſ | -11 77 | nu î | | | |
| 제품 | | 제품명 | | | 3 | 제품 | | | | |
| 품번 | | (국문) | | | | (영년 |]) | | | |
| | 6 | | | | | | | | | |
| 지시번호 | | | | Lot No. | | | | | | |
| 지시일자 | | | | 포장일자 | | | | | | |
| 지시자 | | | | 지시수량 | | | | | | |
| 충전설비 | | | | 포장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 생산 기록 | | | | | | |
| 시작/종료 | | | | 양품/불량 | | | | , | | |
| 시간 | | / | | 수량 | | | | 1 | | |
| 샘플링 수량 | | | ea | 수율 | | | | | | % |
| na . | | | | | | | | | | |
| | | | 부 | 적합 관리 | | | | | | |
| 이물질 | | | ea | 중량 | | | | | | ea |
| 로트코딩 | | | ea | 기타 | | | | | | ea |
| | | | | | | | | | | |
| | and the second s | | | ㅐ 사용기록 | | | | | | |
| 구분 | 투입량 | 사용형 | 량 | 불량 | | | 잔량 | | | 비고 |
| 용기 | | | | | | | | | | |
| 캡 | | | | | | | | | | |
| 박킹 | | | | | | | | | | |
| 단상자 | | | | | | | | | | |
| 인박스 | | | | | | | | | | |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원료/포장재 기준 및 시험방법

| 표준서 번호 | 제품명 |
|-----------|-----|
|-----------|-----|

| 시험 항목 | 시험 기준 | 시험 방법 | 비고 |
|-------|------------|------------|----|
| 원 료 | 원료 규격서 참조 | 원료 규격서 참고 | |
| 포장재 | 포장재 규격서 참조 | 포장재 규격서 참조 | |

6. 벌크 기준 및 시험방법

| 표준서 번호 | | 제품명 |
|-----------|-------|----------|
| | | |
| 시험 항목 | 시험 기준 | 시험 방법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품 기준 및 시험방법

| 표준서 번호 | 제 품 명 | |
|-----------|-------|--|
|-----------|-------|--|

| 시험 항목 | 시험 기준 | 시험 방법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첨 - 붙임7-1 완제품 성적서

완제품 성적서

| 제 품 명 | ! | | | | 품목코드 | | |
|---------|---|-------|----------|------|------|-------|-----|
| 제조 번호 | 호 | | 생산 수량 | | ea | 용량 | |
| 제 조 일 | | | 충 전 일 | | | 시험번호 | Σ |
| 검체 채취일 | | | 검체 채취량 | | ea | 시험 의로 | 일 |
| 시험 항목 | | 시험 기준 | <u> </u> | 시험결과 | 검사자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 종 판 정 | 8 | 판 정 일 | | 담 당 | 검토 | Ē | 승 인 |
| | | | | | | | |

8. 시험 시설 및 기구

| 표준서 번호 | 제 품 명 | |
|-----------|-------|--|
|-----------|-------|--|

| No. | 등록 번호 | 설비명 | 규격 및 모델 | Mak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

9. 제조 및 충전 설비

| 표준서 번호 | | 제 품 명 | |
|-----------|--|-------|--|
|-----------|--|-------|--|

1) 제조설비

| No. | 등록 번호 | 설비명 | 규격 및 모델 | Mak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충전 설비

| No. | 등록 번호 | 설비명 | 규격 및 모델 | Maker |
|-----|-------|-----|---------|-------|
| | | | | |
| | | | | |
| | | | | |

10. 작업장 주의사항

| 표준서 번호 | 제 품 명 | |
|-------------|-------|--|
| 칭량시 주의사항 | | |
| 제조시 주의사항 | | |
| 충전시 주의사항 | | |
| 포장시 주의사항 | | |

[부록3]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① CGMP 총칙 및 인적자원

0 CGMP란 무엇인가요?

A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 장이 정하여 고시한「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축약어입니다.

Q CGMP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여 소비자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입니다.

0 반제품과 벌크제품의 차이점가 무엇인가요?

A "반제품" 이란 제조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필요한 제조공정을 더 거쳐야 벌크 제품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벌크 제품" 이란 충전(1차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을 말합니다.

0 일탈과 기준일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일탈 "이란 제조 또는 품질관리 활동 등의 미리 정하여진 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를 말하며, "기준일탈 (out-of-specification)" 이란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검사, 측정 또는 시험결과를 말합니다.

0 CGMP 적합업소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조에서는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 부서와 품질부서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조소에는 제조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와 제품의 다양성에 맞추어 적절히 인원을 배치하되, 제조부서와 품질부서 인원은 겸직하지 않도록 배치하시길 바랍니다.

Q CGMP 조직도에 대표이사도 포함하여야 하나요?

A CGMP 조직도에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제조소 운영 상황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최소한 실시해야 하는 교육훈련 범위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 A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각자의 직무와 책임에 적합한 교육 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기의 기준은 회사 상황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교육 훈련의 내용 및 평가가 포함된 교육훈련 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새로 채용된 직원이 있는 경우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훈련 외에 필요시 추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 Q 품질시험을 전부 외부에 맡길 경우에는 품질관리 인원 없이 제조부서에서 일부의 공정검사만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 A 품질시험을 외부에 맡기더라도 외부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제조부서에 내용을 피드백하며 품질 관련 협의를 하는 품질 인력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 Q 품질 책임자가 외국인으로 영어만 가능하여 관리 문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관리해도 되는지?
- A CGMP의 목적, 3대 요소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영어로 문서를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CGMP 제조소 내 관리되는 모든 것(시설, 문서 등)은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작업자가 영어보다 모국어(한글)가 익숙하므로 영어로 작성된 문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제조 및 시설

- Q CGMP 적합업소 지정 시 요구되는 제조소의 최소 면적 기준이 있나요?
- A 실태조사 시 제조소에서 다루고 있는 품목수, 실시하는 품질검사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며 별도 최소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 Q 2급지에는 지류 반입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세실(2급지)에서 종이 타올 사용이 가능한지?
- A 2급지 내 지류 반입 불가한 것은 외부에서 원자재 입고 시 담는 더럽혀진 지류를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 이외 정해진 규정은 없으므로 환경모니터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 Q 충진·포장 작업을 하려면 종이박스 반입이 불가피한데 충진실과 포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A 제품의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는 충진실은 2급지, 내용물의 직접 노출이 없는 포장실은 3급지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이박스는 먼지 등으로 오염의 우려가 있어 급지에 따른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Q 보관 공간이 협소하여 관리품, 벌크, 원료 보관용 검체를 동일한 보관소에서 보관하고자 하는데 CGMP 규정에서 문제되지 않는지?
- A 각각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Q 원료보관소가 3급지, 칭량실은 2급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실이 따로 필요한지 그리고 급지 변화에 따른 작업원의 이동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 A 전실이 있다면 청정도 유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소 공간이 협소하여 전실 마련이 어렵다면 차압 등의 방법으로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급지 간 작업원 이동(예시: 2급지→3급지)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동에 따른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 Q 벌크통, 기구 등을 세척 하기 위해 세척실을 가려면 제조실(2급지)를 통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동선이 CGMP 운영 시 문제 되나요?
- A 작업소를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작업 중인 제품의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동선을 마련(예시: 바닥 마킹)하거나 작업이 없을 때에만 이동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Q 포장재가 입고되면 로트 단위로 적합판정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포장재 (로트 단위로 적합 라벨링을 부착하고 사용하고 남은 포장재에는 아무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부자재 보관소에서 보관하여 식별 불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 A 동일한 형태로 재포장하고 '환입라벨' 등을 이용하여 남은 수량만큼 표시 하여 식별·관리할 수 있습니다.
- Q 화장품 이외의 제품(의약외품, 애완용품 등)을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해도 CGMP 인증에 문제가 없나요?
- A 「화장품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서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상호 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GMP와 여부와 관계없이 화장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타 물품 제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타 물품과의 교차오염에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물품에 대한 소관 법령도 별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CGMP 실사 당일, 예정된 생산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심사 당일 별도로 심사를 위한 제품생산 계획을 세워 제조과정을 보여줘야 하는지, 있는 그대로 심사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생산 일정이 있는 날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실태 조사 일정은 식약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정제수실은 꼭 있어야 하는지? 정제수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 A 제조소의 규모와 생산하는 화장품 유형에 따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Q 물 공급 설비 관련하여 정제수 보관탱크와 배관이 PVC 재질로 되어 있는데, CGMP 인증에는 문제가 없나요?
- A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4조(물의 품질)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는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에 대해 사용 목적에 맞는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합한 공급 설비를 갖추고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기로부터 유해물질 방출 등 용기로 인한물의 품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제수 보관용기의 재질을 스테인레스(Stainless) 재질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등의용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용기로 인해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는지를 충분히검토하여야 합니다.

- Q 식약처에서 배포한 CGMP 해설서 내용을 보면 '입고된 원자재는 "적합", "부적합", "검사중" 등으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수준의 보증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시하는 동일 수준의 보증이 가능한 시스템은 어떠한 시스템인지?
- A 기본적으로 CGMP는 인위적인 과오 방지를 목적으로 원자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작업자가 작업을 하더라도 현 작업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자 시스템의 경우, 설정한 작업 내용과 실제 작업 내용(예시: 잘못 칭량되거나 수량 불일치 등)이 다르면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인위적인 과오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Q 원자재 입고 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 바로 반품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원료 및 자재 보관소에 부적합 구역을 마련하여야 하나요?
- A 적합 판정된 원자재와 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입고검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정에 투입되어 사용되면서 자재, 원료의 부적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적합품 보관구역은 필요합니다.
- Q 전 제조소를 2급으로 관리하는 것과 칭량실/제조실/벌크보관소/충진실은 2급지, 나머지는 3급지로 관리하는 것 중 더 효율적인 관리는?
- A 제조소의 구조, 공기 조화 시설 설치 상황, 인동선, 물동선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법(작업자의 업무 효율, 유지비용 등)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전 제조실을 2급지로 관리한다면 기준서에 따라 환경모니터링 및 차압 등을 통해 청정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Q 차압계는 청정도가 다른 공간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 A 청정도가 변경되는 구간에는 차압을 설정하여 교차오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압계 등을 통해 차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 보관소(원료, 자재, 완제품 등)는 반드시 같은 제조동에 위치하여야 하나요? 제조소가 협소하여 2개동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A 모든 보관소가 반드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동에 따른 오염, 적절하지 않은 보관으로 제품의 품질 저하와 같은 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Q 자사 공장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료, 자재, 완제품 등을 다른 층으로 이동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데 엘리베이터 급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엘리베이터로 인해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청소·소독 등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입·출구 장소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등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 O CGMP 적합업소로 지정 받으려면 에어샤워 설치는 필수사항인가요?
- A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에서는 에어샤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조소 특성에 따라 필요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Q CGMP 적합업소로 지정 받으려면 공기 조화 시설 설치가 필수사항인가요?
- A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8조에서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소 특성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 온·습도 등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해설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연구소와 품질부서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GMP 규정상 문제가 되나요?
- A 연구소와 품질부서가 시험실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연구소와 품질부서에서 사용하는 검체나 원료, 시약들은 라벨링을 통해 정확히 구분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Q 동일한 급지(3급지 또는 2급지)로 설정하여 수세실 옆에 작업자 휴게실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해당 공간에는 책상과 의자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 A 작업자 휴게실을 수세실 옆으로 마련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나 작업자가 식·음료 인입 및 섭취, 급지에 맞지 않은 복장 등 제조소 내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질 위험 요소가 높으니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Q 남자갱의실, 여자갱의실 각 1개씩 있어 2급지와 3급지 작업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 A 급지에 맞게 작업자 갱의실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나 부득이한 경우 2·3급지 작업자를 복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가급적 복도 이동 시동선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 **품질관리**

- Q 기능성 원료(ex.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면,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원료 시험 항목에 있는 모든 항목을 자사 혹은 위탁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 기능성화장품 원료의 경우는 고시에 정해진 규격에 맞는 원료를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 0 재평가를 통해 원료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원료공급사의 사용기한을 준수하여 보관 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원료의 사용기한이라는 것은 원료공급사가 원료 공급 시에 설정해 놓은 것으로, 완제품 제조소인 CGMP 업체에서 임의로 사용기한을 연장할수 없으며, 최초 사용기한 이내에 원료공급사가 사용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만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Q 화장품은 물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제수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A 고시 제14조(물의 품질)에 따라 물의 품질 적합기준을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물 공급 설비는 물의 정체와 오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살균 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배관은 순환구조로 고이지 않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제수 계통도 준비와 계통도에 따른 물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제수는 시험용 샘플링 장소 표시를 하는데 검체 채취하는 모든 사용 지점마다 표시 하고 자체적인 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0 밸리데이션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 A CGMP에서는 화장품 밸리데이션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자사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Q 미생물 실험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고, 품질관리 담당자가 각 공정별로 검사한 샘플을 미생물실, 실험실로 이동하여 본인이 직접 검사해서 작업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식약처 규정상 문제가 되는지?
- A 검체 채취자와 실험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생물 시험 담당자는 업무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검체채취자가 검체를 들고 미생물실에 직접 출입 시 해당 검체 또는 작업원으로 인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Q 품질관리 부문에 표준품과 주요시약의 용기 기재사항(명칭, 개봉일, 보관조건, 사용기한, 역가 등), 시험용 검체 용기 기재사항(명칭, 제조번호, 채취일자 등), 포장지시서 기재사항(제품명, 설비명, 리스트, 공정, 수량 등) 등이 있는데 필수 기재사항인가요?
- A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사에 맞게 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0 내부감사 운영 방법은?

- A 내부감사의 목적은 품질보증체계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감사자와 감사 대상은 독립적이어야 함으로 동일 부서 내의 감사는 적절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부서는 제조부서를, 제조부서는 품질부서를 감사하는 크로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면담, 운영 및 설비의 관찰, 문서 조사(정책, 절차서, 데이터, 시험기록 등) 등을 형태로 실시합니다.
- Q CGMP를 준비하는 업체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의 예시가 있나요?
- A 해설서의 [부록4]에 첨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예시는 관리문서 작성을 돕고자 제공하는 것으로 부록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의 업무 여건에 맞게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Q CGMP 컨설팅을 통해 CGMP 기준서 및 기록서 등의 잘못 관리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관련된 모든 서류를 모두 정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확인된 날 이후로 해당 부분만 정정하여 관리해야 하나요?
- A CGMP와 맞지 않은 기준 또는 기록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발견된 시점 이후로 해당 내용에 대한 개정 사유와 개정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 확인, 조사, 승인의 작업을 거쳐 개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4 CGMP 신청 및 평가

- O CGMP 인증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1)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표,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조직, 3) 제조소의 시설내역, 4) 제조 관리현황, 5) 품질관리현황 입니다. 상세 준비 관련 서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별지 1호 서식을 보면 신청서 뒷면에 〈구비서류〉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GMP 적합판정 평가 시, 어떠한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하는지?
- A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별표 2를 보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표'가 있는데 실제 인증심사 시 해당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당 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재 관리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Q 화장품 위수탁하여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데, 일부공정 제조업체도 CGMP를 지정 받을 수 있나요?
- A 일부 공정(벌크 제조 또는 충전·포장(1차포장))을 수행하는 화장품제조업체도 CGMP 지정 평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 시 CGMP 지정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일부 공정만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Q CGMP 적합업소 지정이 전 공정과 일부공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일부공정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 A 화장품의 충전·포장(1차 포장)만 하는 화장품제조업자, 벌크제조만 하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한하여 일부공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Q CGMP 적합업소입니다. 고시에서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3년마다 업체가 다시 신청하여 갱신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3년에 1회 이상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Q CGMP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A 「화장품법 시행규칙」제5조(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소재지의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 제조업 변경 등록'을 완료 후 제조업체의 공문, CGMP 적합업소 인증서 원본, 변경 등록이 완료된 소재지 관할 지방청 공문, 변경 등록이 완료된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앞・뒷면 사본을 함께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하여 CGMP 적합업소 인증서 변경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기타

- Q 국내에서 CGMP 지정업소는 몇 개이며, 목록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A CGMP 적합업소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화장품 정책정보 >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화장품 GMP의 경우에도 GMP 인증 마크가 있는지, 포장에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CGMP 인증 마크가 있다면 어디서 다운로드 가능한가요?
- A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는 별표 3에 따른 로고를 해당 제조업소와 그 업소에서 제조한 화장품에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 식약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법령/자료<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Q ISO22716을 인증 받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CGMP 추진 시 ISO22716 문서와 통합 관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A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재15조에서는 기준서의 종류 및 각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한 기준서라면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록4]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 시 보완 사례집

- I. 인적자원에서의 보완사례
- 1. 조직의 구성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조(조직의 구성)

- ①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를 두어야 한다.
- ② 조직구조는 조직과 직원의 업무가 원활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회사의 규모와 제품의 다양성에 맞추어 적절하여야 한다.
- ③ 제조소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보완사례 3-1

보완사항

제조소별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를 둘 것

보완사유

기존에 CGMP 지정된 1공장과 CGMP 지정을 신규 신청하는 2공장의 품질부서 및 품질 책임자가 같아 제조소별로 독립적이지 않음

보완제출자료

1공장 및 2공장 각 제조소별로 독립된 품질부서 및 품질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기준서 'CGMP 조직 및 직원의 책임' 제출

2. 직원의 책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4조(직원의 책임)

- ① 모든 작업원은 다음 각호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 1. 조직 내에서 맡은 지위 및 역할을 인지해야 할 의무
 - 2. 문서접근 제한 및 개인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
 - 3.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 기준을 벗어난 행위나 부적합 발생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
 - 4. 정해진 책임과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의무
- ② 품질책임자는 화장품의 품질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
 - 1. 품질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절차의 검토 및 승인
 - 2. 품질 검사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의 확인
 - 3. 일탈이 있는 경우 이의 조사 및 기록
 - 4. 적합 판정한 원자재 및 제품의 출고 여부 결정
 - 5. 부적합품이 규정된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는지의 확인
 - 6. 불만 처리와 제품 회수에 관한 사항의 주관

보완사례 4-1

보완사항

품질책임자가 불만 처리와 제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할 것

보완사유

불만 처리 규정 및 회수관리 규정에서 품질책임자가 불만 처리 및 제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있지 않음

보완제출자료

품질책임자가 불만 처리 및 제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도록 개정한 '불만처리 규정 및 회수관리 규정'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4-2

보완사항

품질책임자가 부적합품이 규정된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할 것

보완사유

'부적합품관리' 기준서 등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 후 품질책임자가 이를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개정한 '부적합품관리' 기준서 제출

3. 교육훈련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5조(교육훈련)

- ①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각자의 직무와 책임에 적합한 교육 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의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의 내용 및 평가가 포함된 교육훈련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교육 종료 후에는 교육 결과를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교육받아야 한다.
- ④ 새로 채용된 직원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훈련 외에 추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완사례 5-1

보완사항

교육 종료 후에는 교육 결과를 평가할 것

보완사유

교육 종료 후 교육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보완제출자료

CGMP 교육 기준서에 정기 교육 및 수시 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한 기준서 및 교육 결과 평가 자료 제출

보완사례 5-2

보완사항

교육훈련 관련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교육을 실시할 것

보완사유

연간교육훈련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정기교육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연간교육훈련계획서 제출

4. 직원의 위생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6조(직원의 위생)

- ①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② 작업소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등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 ④ 제조 구역별 접근권한이 없는 작업원 및 방문객은 가급적 제조, 관리 및 보관 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직원 위생에 대한 교육 및 복장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보완사례 6-1

보완사항

화장품의 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원 복장을 규정할 것

보완사유

청정도 2급지와 3급지 작업복이 동일하여 작업자 간 혼선으로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음

보완제출자료

청정도 2급지, 3급지에 따른 작업복 기준을 구별하여 개정한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6-2

보완사항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보완사유

제조위생관리 담당자가 작업원의 복장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원 복장관리 기록서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의 조치사항 등 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복장상태 점검 결과 부적합한 사항 발생 시 작업소 출입을 금하고 복장상태를 적합 하게 조치한 후 출입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개정한 기준서 제출

Ⅱ. 제조에서의 보완사례

1. 건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7조(건물)

- ① 건물은 다음과 같이 위치, 설계, 건축 및 이용되어야 한다.
 - 1. 제품이 보호되도록 할 것
 - 2.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 3. 제품, 원료 및 포장재 등의 혼동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 할 것
- ② 건물은 제품의 제형, 현재 상황 및 청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보완사례 7-1

보완사항

제품이 해충, 곤충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보완사유

외부와 부자재 및 완제품 보관소 사이 출입문 하단에 틈이 있어 해충 등이 유입될 우려가 있음

보완제출자료

출입문 밑에 스커트를 부착하여 틈을 막아 개선한 사진 제출

보완사례 7-2

보완사항

제조구역에 대한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보완사유

완제품 부적합보관소(청정도 4급지)와 포장실(청정도 3급지)을 구분하는 벽에 틈이 있어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음

보완제출자료

해당 벽의 틈을 밀폐 시공하여 개선한 사진 제출

2. 시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8조(시설)

- ① 작업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제형에 따라 적절히 구획·구분되어 있어 교차오염 우려가 없을 것
 - 2.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청소 또는 위생관리를 하기 쉽게 매끄러운 표면을 지니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을 것
 - 3.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할 것
 - 4.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할 것. 창문이 외부 환경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할 것
 - 5. 작업소 내의 외관 표면은 가능한 매끄럽게 설계하고, 청소, 소독제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을 것
 - 6. 적절하고 깨끗한 수세실과 화장실을 마련하고 수세실과 화장실은 접근이 쉬어야 하나 생산구역과 분리되어 있을 것
 - 7. 작업소 전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처리절차를 마련할 것
 - 8.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
 - 9. 각 제조구역별 청소 및 위생관리 절차에 따라 효능이 입증된 세척제 및 소독제를 사용할 것 10.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모품을 사용할 것
- ②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유지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자동화스템을 도입한 경우도 또한 같다.
 - 2. 사용하지 않는 연결 호스와 부속품은 청소 등 위생관리를 하며,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것
 - 3. 설비 등은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설치하며,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 4. 설비 등의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5. 벌크 제품의 용기는 먼지나 수분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을 것
 - 6. 제품과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 및 배수관을 설치하며, 배수관은 역류되지 않아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것
 - 7. 천정 주위의 대들보, 파이프, 덕트 등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노출된 파이프는 받침대 등으로 고정하고 벽에 닿지 않게 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할 것
 - 8.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보완사례 8-1

보완사항

작업원 동선으로 인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보완사유

청정도 2급 작업원과 3급 작업원이 동일하게 탈의(4급)→갱의(3급)→수세(3급)→전실 (3급)→복도(3급)→제조실(2급)/벌크보관실(2급)/칭량실(2급) 등으로 입실하고 있어 작업원으로 인한 교차 오염 우려가 있음

보완제출자료

청정도 2급 작업원과 3급 작업원의 갱의실을 분리하고, 해당 갱의실에서 갱의한 작업원은 동일한 청정도의 작업장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청정도를 변경한 갱의실 사진 및 변경 관리 기록서 제출

보완사례 8-2

보완사항

설비 등은 위생·유지 관리가 가능할 것

보완사유

세척한 설비는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건조 후 밀폐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세척완료 상태의 가마 내부에 물기가 남아있었으며 세척자, 세척일 등의 정 보를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세척 및 소독 종료 후에는 가마가 완전히 건조되었음을 확인한 후 뚜껑을 닫도록 개정한 설비 세척 절차서 및 작업자 교육 기록서 제출. 세척자, 세척일, 이전 제조 제품명의 정보를 기록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설비에 부착된 세척 현황판을 개정한 사진 자료와 제조작업 절차서에 개정한 세척 현황판 양식을 등록한 자료 제출

보완사례 8-3

보완사항

낙하균 시험규정에 따라 낙하균 시험을 실시할 것

보완사유

낙하균 시험결과 보고서를 확인했으나, 일부 2급지 작업실(세척실, 습윤실-1/2, 등)에서 낙하균 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보완제출자료

해당 작업실에서도 낙하균 시험을 하도록 낙하균 측정위치를 추가하여 개정한 '낙하균 시험규정' 및 낙하균 시험을 실시한 후 작성한 보고서 제출

3. 작업소의 위생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9조(작업소의 위생)

- ①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조, 관리 및 보관 구역 내의 바닥, 벽, 천장 및 창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③ 제조시설이나 설비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 또는 소독제는 효능이 입증된 것을 사용하고 잔류하거나 적용하는 표면에 이상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제조시설이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보완사례 9-1

보완사항

방충·방서 점검의 외부 의뢰 관련하여 세부 절차를 마련할 것

보완사유

방충·방서 점검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나, 기준서에 의뢰 절차 및 결과 검토·판정 등의 세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보완제출자료

방서·방충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뢰 절차 및 결과 검토·판정 등 세부 절차를 추가하여 개정한 '해충관리'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9-2

보완사항

소독에 사용하는 70% 에탄올에 사용기한을 부여하여 사용할 것

보완사유

소독에 사용하는 70% 에탄올의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소독제 사용기한 부여 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한 '작업원 수세·소독 관리에 관한 세칙' 제출

4. 유지관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0조(유지관리)

- ① 건물, 시설 및 주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기록하여야 한다.
- ② 결함 발생 및 정비 중인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고장 등 사용이 불가할 경우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세척한 설비는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제조 관련 설비는 승인된 자만이 접근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측정·시험장비 및 자동화장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검교정 및 성능점검을 하고 기록해야 한다.
- ⑥ 유지관리 작업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보완사례 10-1

보완사항

결함 발생 및 정비 중인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고, 고장 등 사용이 불가할 경우 표시할 것

보완사유

운휴 설비 식별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보완제출자료

운휴 설비 식별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사용불가' 식별표를 부착한 사진 제출

보완사례 10-2

보완사항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정·시험 장비는 정기적으로 성능 점검을 하고 기록·관리할 것

보완사유

전자 저울에 대한 외부 검교정은 실시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성능 점검을 하지 않음

보완제출자료

저울 일일점검 관리 방법을 추가하여 개정한 '저울 작동 및 관리 방법'과 저울의 청결 상태, 영점확인, 수평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한 '저울 일일점검 기록서' 제출

보완사례 10-3

보완사항

유지관리 작업이 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할 것

보완사유

디지털 온·습도계는 표준계측기(기기번호 : A001)를 이용하여 사내 검교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검교정 방법, 절차, 기록서 등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디지털 온·습도계 사내 검교정 방법 및 절차 등을 추가하여 개정한 '검사, 측정 및 시험기기 관리 규정' 및 내부 검정 기록서 제출

5. 입고관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1조(입고관리)

- ① 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여 입고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원자재의 입고 시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운송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③ 원자재 용기에 제조번호를 표시하고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원자재 입고절차 중 육안 확인 시 물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입고를 보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입고된 원자재는 "적합", "부적합", "검사 중" 등으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수준의 보증이 가능한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다.
- ⑥ 원자재 용기 및 시험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 2. 원자재 공급자명
 - 3. 수령일자
 - 4.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보완사례 11-1

보완사항

원자재 입고 시 입고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보완사유

원자재 입고 시 입고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원자재의 입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마련하여 개정한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11-2

보완사항

자재 입고 시 입고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보완사유

자재 보관라벨에서 공급자 명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자재 검수 성적서에서 입고일 등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자재 보관라벨 양식에 공급자 명칭을, 자재 검수 성적서 양식에 입고일을 추가하여 해당 양식을 등록한 후 개정한 '시험관리' 기준서 및 성적서 제출

6. 출고관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2조(출고관리)

원자재는 시험결과 적합판정된 것만을 선입선출방식으로 출고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보완사례 12-1

보완사항

원자재는 적합판정된 것만을 출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것

보완사유

원료/자재 보관관리 기준서 등에서 원료 및 자재의 품질검사 적합여부를 확인 후 출고하는 절차를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원료, 자재의 출고시 품질검사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개정한 '취급· 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기준서 제출

7. 보관관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3조(보관관리)

- ①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가능한 선입선출에 의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설정된 보관기간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통해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보완사례 13-1

보완사항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할 것

보완사유

적합 원료 및 시험 중 원료와 부적합 원료가 혼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음

보완제출자료

적합 원료, 시험 중 원료, 부적합 원료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각각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련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자료 및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원료 관리'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13-2

보완사항

원료, 자재의 보관기간 설정 및 재평가시스템을 마련할 것

보완사유

원료 보관관리 및 자재 보관관리에 원료, 자재 보관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재평가시스템 및 해당 기간 경과 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보완제출자료

원료, 자재 보관기간 및 재평가시스템을 추가하여 개정한 '원료 보관관리 및 자재 보관관리' 기준서 제출

8. 물의 품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4조(물의 품질)

- ① 물의 품질 적합기준은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
- ② 물의 품질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고 필요시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물 공급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물의 정체와 오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 2.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을 것
 - 3. 살균처리가 가능할 것

보완사례 14-1

보완사항

물의 품질 적합기준을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할 것

보완사유

정제수 시험항목 및 기준을 종전의 화장품 원료 규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해당 시험기준에 따른 암모늄 및 증발잔류물 확인시험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

보완제출자료

정제수 시험기준에 맞게 시험 항목(암모늄, 증발잔류물)을 추가하여 실시한 정제수 시험성적서 제출

보완사례 14-2

보완사항

물의 품질 적합기준을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할 것

보완사유

정제수 관리 기준서에서 정제수 시험검체 채취방법 및 채취 시 주의사항과 채취 시 오염방지 대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정제수 시험검체 채취방법 및 채취 시 주의사항과 채취 시 오염방지 대책을 추가하여 개정한 '정제수 관리'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14-3

보완사항

물의 품질 적합기준을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할 것

보완사유

정제수 검체채취 포인트가 총 4개 있으나, Sampling Point 1에서만 채취하여 미생물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보완제출자료

정제수 검체채취 포인트 위치를 추가하여 개정한 '정제수관리규정' 기준서 및 모든 포인트(총 4개)에서 진행한 정제수 시험성적서 제출

9. 기준서 등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5조(기준서 등)

- ① 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합성을 보장하는 기본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따른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및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품표준서는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품명
 - 2. 작성연월일
 - 3. 효능·효과(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4. 원료명, 분량 및 제조단위당 기준량
 - 5. 공정별 상세 작업내용 및 제조공정흐름도
 - 6. <삭 제>
 - 7. 작업 중 주의사항
 - 8. 원자재·반제품·벌크제품·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 9.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 10. 보관조건
 - 11.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12. 변경이력
 - 13. <삭 제>
 -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5조(기준서 등)

- ③ 제조관리기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작업소의 출입제한
 - 나) 공정검사의 방법
 - 다) 사용하려는 원자재의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라) 재작업절차
 - 2. 시설 및 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시설 및 주요설비의 정기적인 점검방법
 - 나) <삭 제>
 - 다) 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 방법
 - 3. 원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입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및 포장의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과 훼손되었을 경우 그 처리방법
 - 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 다)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
 - 라) 취급 시의 선입선출 및 칭량된 용기의 표시사항
 - 마) 재고관리
 - 4.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입·출하 시 승인판정의 확인방법
 - 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 다) 출하 시의 선입선출방법
 - 5. 위탁제조에 관한 사항
 - 가) 원자재의 공급, 반제품, 벌크제품 또는 완제품의 운송 및 보관 방법
 - 나) 수탁자 제조기록의 평가방법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5조(기준서 등)

- ④ 품질관리기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삭 제>
 - 2. 시험검체 채취방법 및 채취 시의 주의사항과 채취 시의 오염방지대책
 - 3.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의 점검(장비의 교정 및 성능점검 방법)
 - 4. 안정성시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5. 완제품 등 보관용 검체의 관리
 - 6. 표준품 및 시약의 관리
 - 7. 위탁시험 또는 위탁 제조하는 경우 검체의 송부방법 및 시험결과의 판정방법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 제조위생관리기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작업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의 파악·조치방법
 - 2. 작업원의 수세, 소독방법 등 위생에 관한 사항
 - 3. 작업복장의 규격, 세탁방법 및 착용규정
 - 4. 작업실 등의 청소(필요한 경우 소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법 및 청소주기
 - 5. 청소상태의 평가방법
 - 6.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
 - 7.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는 방법 및 점검주기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완사례 15-1

보완사항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5조에 따라 제품표준서를 작성할 것

보완사유

제품표준서에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5조'에 따른 사항(원료 분량 및 제조단위당 기준량, 공정별 이론생산량 및 수율관리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등)을 기재하고 있지 않음

보완제출자료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5조에 따라 개정한 제품표준서 제출

보완사례 15-2

보완사항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5조에 따라 제품표준서를 작성할 것

보완사유

제품표준서에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를 작성하여야 하나, 해당 제조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시설 및 기기가 포함되어 있음

보완제출자료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를 작성하여 개정한 제품표준서 제출

10. 칭량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6조(칭량)

- ① 원료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기나 설비에 정확하게 칭량되어야 한다.
- ② 원료가 칭량되는 도중 교차오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완사례 16-1

보완사항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칭량할 것

보완사유

제조관리 기준서 내 칭량 작업 시 집진기 가동 및 종료 시점, 칭량 작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음압이 유지됨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보완제출자료

제조관리 기준서 내 칭량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가 집진기를 가동하고 음압이 유지됨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집진기 가동시간 및 음압 유지 여부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집진기 점검기록서 양식을 추가하여 개정한 기준서 및 기록서 제출

보완사례 16-2

보완사항

칭량 중에 교차오염이 없도록 관리할 것

보완사유

청량 중에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하여야 하나, 작업자의 이동이나 세척 중에 발생하는 먼지, 이물 등으로 인한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세척실에서 제조에 사용하는 정제수를 칭량하고 있음

보완제출자료

제조실에서 정제수를 칭량할 수 있도록 배관을 추가로 설치한 사진자료 및 변경관리보고서, 해당 제조실의 정제수 일상점검표와 주간시험기록서 제출

11. 공정관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7조(공정관리)

- ① 제조공정 단계별로 적절한 관리기준이 규정되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결과는 보고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벌크제품은 품질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용기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며 용기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1. 명칭 또는 확인코드
 - 2. 제조번호
 - 3. 완료된 공정명
 - 4.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조건
- ③ 벌크제품의 최대 보관기간은 설정하여야 하며, 최대 보관기간이 가까워진 벌크제품은 완제품 제조하기 전에 재평가해야 한다.

보완사례 17-1

보완사항

제품표준서에서 정한 제조공정 기준대로 작업하여 기록할 것

보완사유

제품표준서에서 정한 제조공정과 제조지시 및 기록서 상의 공정이 상이함

보완제출자료

작업자가 제품표준서의 제조공정에 맞게 해당 제조공정대로 작업 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조지시 및 기록서 개정

보완사례 17-2

보완사항

최대 보관기간이 가까워진 반제품 또는 벌크제품은 완제품 제조하기 전에 품질 이상,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보완사유

반제품 또는 벌크제품의 최대 보관기간 설정과 관련한 내용 및 이에 따른 완제품 제조하기 전 품질이상, 변질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보완제출자료

반제품 또는 벌크제품의 최대 보관기간 설정과 관련한 내용 및 이에 따른 완제품 제조하기 전 품질 이상,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개정한 기준서 제출

12. 포장작업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8조(포장작업)

- ① 포장작업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포장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지시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1. 제품명
 - 2. 포장 설비명
 - 3. 포장재 리스트
 - 4. 상세한 포장공정
 - 5. 포장지시수량
- ③ 포장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작업 관련 문서의 완비여부, 포장설비의 청결 및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보완사례 18-1

보완사항

포장지시서에 고시 제18조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보완사유

충전 및 포장공정관리 지시서에서 포장 설비명 및 포장재 리스트를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포장 설비명 및 포장재 리스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하여 개정한 충전 및 포장공정관리 지시서 제출

보완사례 18-2

보완사항

포장작업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할 것

보완사유

충전 및 포장관리 규정 내 작업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할 것

보완제출자료

충전 및 포장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작업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생산팀장에게 보고하며 생산팀장은 원인 파악 후 공장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개정

13. 보관 및 출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9조(보관 및 출고)

- ①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 하의 정해진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고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② 완제품은 시험결과 적합으로 판정되고 품질부서 책임자가 출고 승인한 것만을 출고하여야 하다
- ③ 출고는 선입선출방식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출고할 제품은 원자재,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과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완사례 19-1

보완사항

주기적으로 완제품 재고 점검을 수행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록·관리할 것

보완사유

완제품 관리에 재고관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월 1회 전산 재고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파악·비교하는 재고 실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기록 방법, 이상 발생 시 조치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재고 실사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완제품 관리에 재고 실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기록 방법, 이상 발생 시 조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재고 실사를 수행한 결과자료 제출

보완사례 19-2

보완사항

품질책임자가 적합 판정된 완제품에 대한 출고 여부를 결정할 것

보완사유

긴급 출하를 요하는 경우 품질책임자의 출고 승인 없이 완제품 시험의뢰 및 성적서로 출고하도록 하고 있음

보완제출자료

완제품 관리 절차서에 긴급 출하 시에도 품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고하도록 절차 개정

보완사례 19-3

보완사항

완제품은 자재와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할 것

보완사유

원자재와 완제품을 같은 보관소에 함께 혼재하여 보관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음

보완제출자료

원자재와 완제품을 다른 보관소에 보관하고, 이를 증빙하는 사진 등의 자료 제출

Ⅲ. 품질에서의 보완사례

1. 시험관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0조(시험관리)

- ①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업무에 대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원자재·반제품·벌크제품·완제품에 대한 적합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번호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③ 시험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인지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원자재·반제품·벌크제품·완제품은 적합 판정이 된 것만을 사용하거나 출고하여야 한다.
- ⑤ 정해진 보관 기간이 경과된 원자재·반제품·벌크제품은 재평가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 ⑥ 모든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시험기록은 검토한 후 적합, 부적합, 보류를 판정하여야 한다.
- ⑦ 기준일탈이 된 경우는 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는 책임자에 의해 일탈, 부적합, 보류를 명확히 판정하여야 한다.
- ⑧ 표준품과 주요시약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개봉일
 - 3. 보관조건
 - 4. 사용기한
 - 5. 역가, 제조자의 성명 또는 서명(직접 제조한 경우에 한함)

보완사례 20-1

보완사항

시약의 용기에 역가를 기재할 것

보완사유

시약(Acetic Acid)의 용기에서 역가를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시약의 용기에 역가를 기재할 수 있도록 라벨 양식을 변경한 '시약 관리 기준서' 및 역가 정보를 알 수 있는 라벨이 부착된 시약(Acetic Acid) 사진 제출

보완사례 20-2

보완사항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보관하도록 온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보완사유

미생물 전실 내 배지(보관 조건 2~25℃)를 보관하고 있으나, 온도 모니터링을 실시 하지 않음

보완제출자료

미생물 전실 온도 기준을 2~25℃로 설정하고 온·습도계를 구비한 사진 및 온·습도 점검기록서 제출

보완사례 20-3

보완사항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적합 기준을 마련할 것

보완사유

시험 기록이 정확하고 설정된 기준에 부합함을 검토·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보완제출자료

시험 기록이 정확하고 설정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성적서 하단에 검토자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란을 추가한 양식 제출

2. 검체의 채취 및 보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1조(검체의 채취 및 보관)

- ①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채취하고, 채취한 후에는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하며,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명칭 또는 확인코드
 - 2. 제조번호
 - 3. 검체채취 일자
- ③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조건 하에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단위별로 사용기한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완사례 21-1

보완사항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 명칭, 제조번호, 검체채취 일자를 기재할 것

보완사유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서 명칭, 제조번호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검체채취 일자를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검체채취 일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검체채취 용기 부착 라벨 양식과 해당 양식을 등록하여 개정한 '검체채취'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21-2

보완사항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채취량 및 보관기한 등을 설정할 것

보완사유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채취량 및 보관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채취량 및 보관기한 등을 추가하여 개정한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21-3

보완사항

원자재, 벌크, 완제품 등에서 시험용 검체를 채취한 후 해당 제품에 검체가 채취되 었음을 표시할 것

보완사유

원자재에서 시험용 검체를 채취한 후 해당 원자재에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지 않음

보완제출자료

원자재에서 시험용 검체를 채취한 후 해당 원자재에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도록 라벨 양식을 변경한 '검체채취에 관한 지침'과 입고된 원자재에 해당 라벨을 부착한 사진 제출

3. 폐기처리 등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2조(폐기처리 등)

- ①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품질책임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작업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③ 재작업을 할 수 없거나 폐기해야 하는 제품의 폐기처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 대 상은 따로 보관하고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보완사례 22-1

보완사항

품질책임자가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보완사유

품질책임자가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품질책임자가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개정한 '부적합품관리, 회수처리, 반품처리'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22-2

보완사항

재작업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

보완사유

재작업품 대상에 대한 재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재작업과 관련한 기록·관리 양식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재작업품 대상에 대한 재평가 기준과 '재가공 및 재처리 관리대장' 양식을 추가하여 개정한 '재가공 및 재처리' 기준서 제출

4. 위탁계약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3조(위탁계약)

- ①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있어 공정 또는 시험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에 위탁 제조하는 것을 권장한다.
- ③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의 계약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④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확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업체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⑤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에 대해 계약에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탁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⑥ 수탁업체에서 생성한 위·수탁 관련 자료는 유지되어 위탁업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보완사례 23-1

보완사항

제조공정 또는 시험 관련 위탁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할 것

보완사유

제조공정 또는 시험 관련 위탁에 관한 절차를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제조 및 시험 위탁 관련 기준서 '위·수탁생산관리'를 제정하여 제출

보완사례 23-2

보완사항

수탁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포함한 계약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주기를 설정할 것

보완사유

수탁업체의 계약 수행 능력 평가 기준 및 주기를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수탁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포함한 계약 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주기를 추가하여 개정한 기준서 제출

5. 일탈관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4조(일탈관리)

제조 또는 품질관리 중의 일탈에 대해 조사를 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일탈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완사례 24-1

보완사항

일탈에 대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보완사유

충·포장 수율기준 미달인 로트가 있었으나, 일탈 관련 원인조사, 조치 등 실시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충·포장 수율 미달에 대한 일탈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일탈 조사 보고서 제출(기존 품목 작업 종료 후 작업을 변경하면서 세팅의 오류가 있었으며,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세팅 시 OC확인을 하도록 개선)

보완사례 24-2

보완사항

일탈에 대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보완사유

원료 및 부자재, 완제품보관소는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온·습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일탈 발생 시 최종적으로 품질부서에 일탈 관련 사항이 공유되고 있지 않아 해당 팀의 검토· 승인 등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일탈 발생 시 품질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각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검토 및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한 '워료·부자재·완제품관리' 기준서 제출

6. 불만처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5조(불만처리)

- ① 불만처리담당자는 제품에 대한 모든 불만을 취합하고, 제기된 불만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1. 불만 접수연월일
 - 2. 불만 제기자의 이름과 연락처(가능한 경우)
 - 3. 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포함한 불만내용
 - 4. 불만조사 및 추적조사 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 대책
 - 5. 다른 제조번호의 제품에도 영향이 없는지 점검
- ② 불만은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보완사례 25-1

보완사항

제기된 불만에 대하여 다른 제조번호의 제품에도 영향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보완사유

불만처리보고서에 불만접수일, 제기자, 불만의 내용, 불만 조사와 추적조사 내용, 재발방지 대책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다른 제조번호의 제품에도 영향이 없는지 점검하는 절차는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불만처리 시 동일제품의 타 로트번호 재확인, 비교 등 다른 제조번호의 제품에 영향이 없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개정한 '불만처리'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25-2

보완사항

제기된 불만은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완사유

불만처리 시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불만처리 시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검토서를 연 1회 '불만처리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불만처리규정' 기준서 제출

7. 제품회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6조(제품회수)

- ① 제조업자는 제조한 화장품에서 「화장품법」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회수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1. 전체 회수과정에 대한 제조판매업자와의 조정역할
 - 2. 결함 제품의 회수 및 관련 기록 보존
 - 3.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회수의 경우 회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수행
 - 4. 회수된 제품은 확인 후 제조소 내 격리보관 조치(필요시에 한함)
 - 5. 회수과정의 주기적인 평가(필요시에 한함)

보완사례 26-1

보완사항

회수 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수처리 절차를 마련할 것

보완사유

회수 책임자 지정 및 회수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품질책임자를 회수 책임자로 지정하고 회수처리 절차를 추가하여 개정한 기준서 제출

8. 변경관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7조(변경관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제조공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하고 품질 책임자에 의해 승인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보완사례 27-1

보완사항

변경관리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서화할 것

보완사유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등의 변경에 대한 변경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시설 등 변경 시에도 변경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한 '변경관리'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27-2

보완사항

변경관리절차 관련 승인권한을 명확히 할 것

보완사유

품질책임자 이외에도 변경관리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보완제출자료

품질책임자의 승인 후 수행될 수 있도록 개정한 '변경관리' 기준서 제출

9. 내부감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8조(내부감사)

- ① 품질보증체계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내부감사 계획 및 실행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감사자는 감사대상과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사 결과는 기록되어 경영책임자 및 피감사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감사 중에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④ 감사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후속 감사활동을 행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보완사례 28-1

보완사항

내부감사 계획 및 실행에 관한 감사결과를 기록할 것

보완사유

내부감사 계획 및 실행과 관련된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내부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내부감사 실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제출

보완사례 28-2

보완사항

감사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

보완사유

내부감사 보고서 확인 시 감사팀이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사가 수행되지 않음

보완제출자료

감사대상과 독립적으로 운영한 내부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와 내부감사에 따른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10. 문서관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9조(문서관리)

- ① 제조업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보증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포함한 관리방침을 문서화하며 전 작업원들이 실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문서의 작성 및 개정·승인·배포·회수 또는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문서는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문서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서명과 승인연월일이 있어야 한다.
- ④ 문서의 작성자·검토자 및 승인자는 서명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문서를 개정할 때는 개정사유 및 개정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권한을 가진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 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 ⑥ 원본 문서는 품질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사본은 작업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 ⑦ 문서의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⑧ 작업자는 작업과 동시에 문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⑨ 기록문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하려는 글자 또는 문장 위에 선을 그어 수정 전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수정된 문서에는 수정사유, 수정연월일 및 수정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⑩ 모든 기록문서는 적절한 보존기간이 규정되어야 한다.
- ① 기록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기 위해 백업파일 등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보완사례 29-1

보완사항

문서의 배포와 관련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할 것

보완사유

문서번호 부여와 관리 기준서에서 문서번호 부여 방법, 문서의 제정·개정, 승인, 회수, 폐기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배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문서 원본의 보관 및 사본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문서번호 부여와 관리'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29-2

보완사항

개정된 문서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마련할 것

보완사유

개정된 문서에 개정사유, 개정연월일, 권한을 가진 사람의 승인 및 개정번호를 작성하여야 하나, 문서관리 기준서 등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문서의 개정 시 개정내용(사유), 개정연월일, 개정번호, 개정자 및 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개정한 '문서관리'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29-3

보완사항

기록문서를 수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보완사유

문서의 기록은 작업자가 작업과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작성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문서의 기록, 수정, 삭제와 관련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한 '문서 및 자료관리' 기준서 제출

보완사례 29-4

보완사항

기록문서의 적절한 보존기간을 규정할 것

보완사유

기록문서의 보존기간을 확인할 수 없음

보완제출자료

기록문서의 보존 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한 '기록관리' 기준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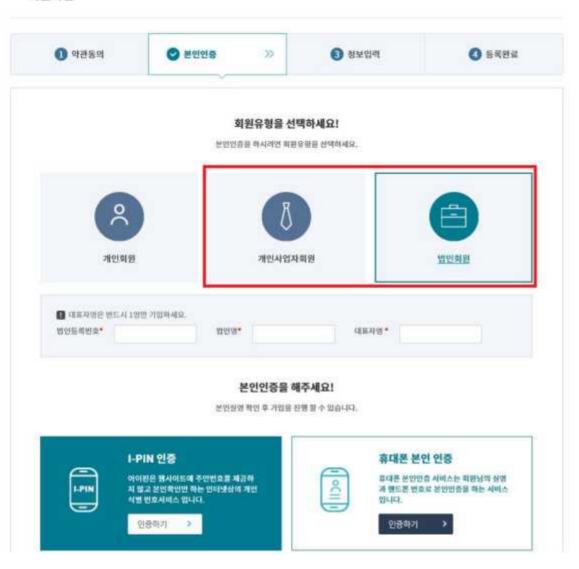
본 민원인 안내서는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규정은 계속 제·개정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의 규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록5] 전자민원 신청방법 및 평가절차

1 전자민원 회원가입

-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회원가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회원으로 가입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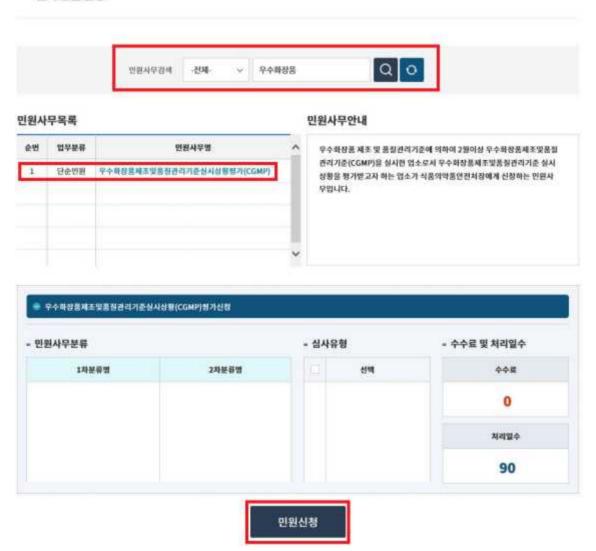
2 전자민원신청 절차

1)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rightarrow 전자민원/보고 \rightarrow 전자민원 \rightarrow 전자민원신청 선택



2) 민원사무검색 → '우수화장품' 검색 후 민원사무목록에서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 준실시상황평가(CGMP) 선택 후 민원신청 버튼 클릭

전자민원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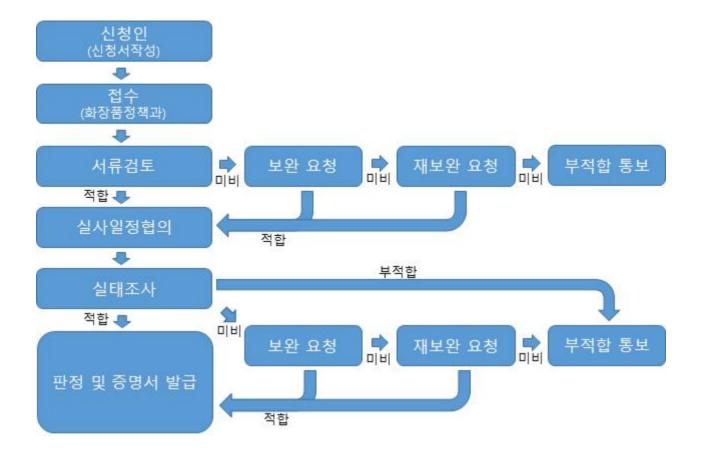


3) 신청인, 업소현황, 신청분류, 민원정보(수령방법), 담당자 정보 기입 및 구비서류 버튼 클릭하여 서류 업로드 후 민원신청 버튼 클릭

전자민원신청



③ 평가 절차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민원인안내서) 제4개정

·발행연월 : 2024년 12월

·발 행 인: 신준수

·편 집 인: 고지훈

·편 집 위 원: 강원구 김대기 김민우 천세경 백은희 신재섭 양석원 이선미 이용준 구소현 유경화 임소라 이민지

·도움 주신 분(전문가협의체 위원): 강철원 이대일 이상훈 이정화 이혜영 장준기 정다영 정명희 정영기

·발 행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